

2004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2005. 8

본 자료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작성한 것입니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차 례 —

제 1 장 금융정보화의 개요 ..... 1

제 1 절 금융정보화의 개념 ..... 3

제 2 절 금융정보화 추진 추이 ..... 5

제 3 절 금융정보화 추진방향 ..... 15

제 2 장 금융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 19

제 1 절 은행 ..... 21

제 2 절 증권 ..... 25

제 3 절 보험 ..... 28

제 4 절 관련기관 ..... 31

제 3 장 금융정보망의 운영·관리 ..... 35

제 1 절 금융공동망 ..... 37

제 2 절 대고객정보망 ..... 65

제 3 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정보망의 연계 ..... 80

제 4 장 주요 금융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 ..... 85

제 1 절 금융IC카드 ..... 87

제 2 절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90

제 3 절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 ..... 96

제 4 절 전자정보교환시스템 ..... 100

제 5 절 기타 금융정보화 사업 ..... 103

제 5 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과제 ..... 113

제 1 절 금융서비스제공 채널의 안전성 제고 ..... 115

제 2 절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123

제 3 절 표준화의 지속적 추진 ..... 132

제 4 절 신BIS협약 도입에 대응한 금융정보시스템의 구축 ..... 134

< 부 록 > ..... 137

1.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 ..... 139

2. 금융정보화 연혁 ..... 179

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안목록 ..... 183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 205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 213

6.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 219

제 1 장 금융정보화의 개요

#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제 1 장 금융정보화의 개요

## 제 1 절 금융정보화의 개념

금융정보화는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융정보를 수집, 처리, 창출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컴퓨터 및 고도의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정보를 처리·활용·창출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크게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구분된다.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은 경제주체들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거리간 또는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금융산업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일찍부터 정보화가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이 정보의 전달만으로 완료될 수 있고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거의 동질적(homogeneous)이라는 산업특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금융정보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 1 단계는 기기를 이용한 사무자동화와 각 금융기관 내부의 온라인망 등 내부전산망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금융기관 내부전산망을 다른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결해서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금융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은행의 금융공동망을 들 수 있다. 은행공동망은 각 은행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결제면에서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을 1일 금융권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 3 단계는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직접적인 대면(對面)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이다.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리적인 점포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가상금융기관(Virtual Financial Institution)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 4 단계로는 금융산업을 정보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금융기관은 고객들에 관한 정보관리를 통해 특정고객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업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고객에 대하여는 그 기업 제품의 시장환경, 원자재 조달여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자산·부채 종합관리에 필요한 헷지수단, 기업인수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금융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의 거래활동에 수반되는 많은 정보가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이러한 정보가 시너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금융산업의 정보산업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전반적으로 금융네트워크 구축단계를 거의 끝내고 무선통신, 인터넷,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금융서비스의 전달채널을 다양화해 나가는 금융정보화 과정의 제 3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는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금융정보화 제 4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금융정보화는 각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대고객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며 금융기관별 고객 서비스 전달채널의 확충과 관련한 공동망 추진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2 절 금융정보화 추진 추이

### 1. 금융정보화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는 1960년대 후반 각 은행이 급여계산업무를 일괄 처리(batch)방식으로 전산화하면서 출발하였으며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은행들이 사무자동화 및 본지점간 온라인망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금융전산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융전산망을 행정, 교육·연구, 국방, 공안 전산망과 함께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하나로써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정부의 「전산망 조정위원회」 산하에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전산위원회」가 1984년 9월 발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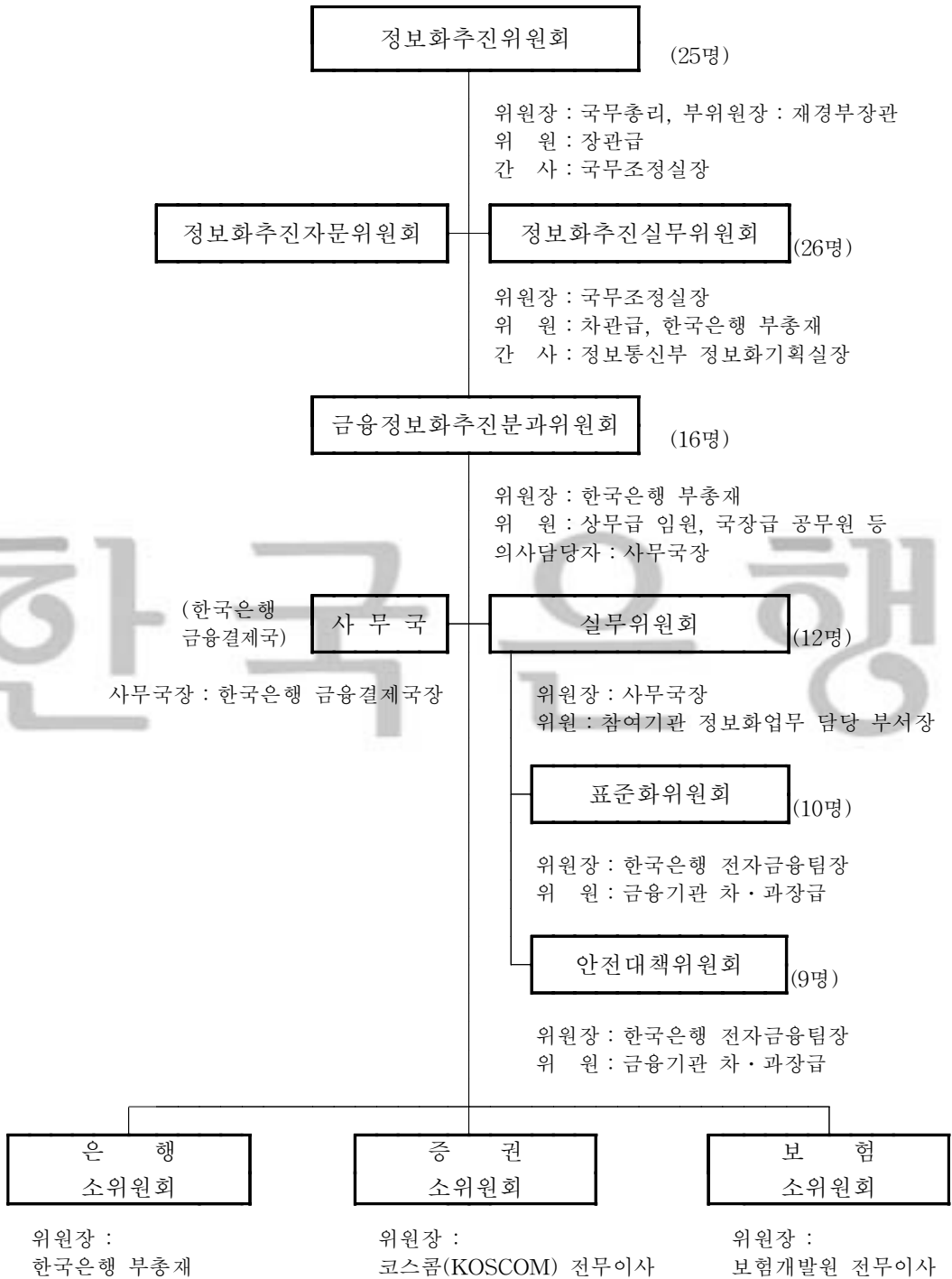
그 후 1987년 1월에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전산위원회는 1987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칭되었고 대상 금융기관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정보화추진기구가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1996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해 11월에는 동 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로 변경되었다.

현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사무국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는 금융정보화추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및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에 관한 사항 등 금융기관의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동 위원회 산하에는 은행·증권·보험소위원회가 있다.

# 금융정보화 추진 조직 체계도

(2005년 7월말 현재)



## 2. 금융부문별 추진 추이

### 가. 은행

우리나라 은행들은 1970년대 후반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본지점간 전산망을 구축하여 계정과목별로 영업점간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경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든 계정과목에 대한 온라인화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홈뱅킹·멤뱅킹 등 대고객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별 종합거래현황 분석 및 고객기여도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고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콜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입금전표의 폐지 등을 통해 영업점 수작업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량 확대 등으로 문서관리를 자동화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점 단말기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해외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Global Network를 구축하였으며 원화·신탁·외화ALM, 일일자금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국제금융 딜링 시스템, 전산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감사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정보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정보시스템(MIS)과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한편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각 은행 본점과 전 영업점간에 근거리통신망(LAN) 및 광역통신망(WAN)을 구축하였으며 최종사용자컴퓨팅(End-User Computing: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 관리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객들에게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은행들을 연결하는 공동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후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현금자동인출기(CD/ATM)공동망(1988. 7. 구축), 타행환공동망(1989. 12), 직불카드공동망(EFT/POS)(1996. 2),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1996. 8), 신용정보공동

이용망(1997. 1), 지방은행공동정보망(1997. 6), 전자정보교환시스템(Check Truncation, 2000. 5), 기업·개인(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2000. 12), 전자화폐공동망(2001. 1), 전자금융공동망(2001. 4),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2002. 3),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2004. 12),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2005. 5) 등의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e-L/C 관리시스템 및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은행공동망은 금융결제원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참가기관 수는 최초 은행공동망 가동시에 10여개 은행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전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5년에는 우체국과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2002년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함으로써 농·어촌, 산간벽지 등 은행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공동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취급업무를 다양화하고 이용시간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공동망을 경찰전산망(1993. 2), 점외 CD/ATM망(1993. 10), 종합무역자동화망(1994. 1) 등 외부정보망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 은행부문의 정보화 추이

시 기	단 계	주 요 추 진 내 용
'60년대 후반 ~ '75년	사무자동화	— 급여계산업무 등의 일괄처리
'76년 ~ '85년	계정과목별 온라인화	— 계정과목별로 영업점간 온라인 실시
'86년 ~ '90년	종합온라인화 및 은행공동망 구축	— 고객별 여수신 합산 등 종합온라인 시스템 구축 —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은행공동망 구축
'91년 ~ 현재	대고객정보망 등의 구축 및 외부정보망과의 접속	— 종합온라인시스템 및 은행공동망(CMS, 신용정보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Payment Gateway, 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 등) 확충 — 펌뱅킹, 홈뱅킹, EFT/POS 등의 금융서비스제공 — 경찰전산망, 종합무역자동화망 등 외부전산망과 접속 —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제공 — 콜센타 구축 —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은행 부문의 금융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자방식 결제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중 장표방식 결제규모가 전년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10.7%, 금액기준으로는 29.4% 감소한 반면 전자방식 결제규모는 전년대비 건수는 5.4%, 금액은 1.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지급결제중 전자방식 지급결제금액의 비중은 47.8%로 전년대비 8.9%p 상승하였으며 건수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3%p 증가한 73.4%로 나타났다.

소액지급수단별 결제규모(일평균) 추이

(천건, 십억원, %)

결제 수단	2003년중		2004년중		증감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장표방식	5,843	21,314	5,219	15,047	△10.7	△29.4
어음·수표	3,939	21,063	3,489	14,801	△11.4	△29.7
지로 일반계좌이체	1,905	252	1,730	246	△9.2	△2.3
전자방식	13,037	13,597	14,432	13,765	5.4 <sup>3)</sup>	1.2 <sup>3)</sup>
자금이체 <sup>1)</sup>	7,018	12,278	7,533	12,793	7.3	4.2
카드 등 <sup>2)</sup>	6,020	1,319	6,899	972	3.2 <sup>3)</sup>	△27.0 <sup>3)</sup>
합 계	18,880	34,912	19,651	28,811	0.4 <sup>3)</sup>	△17.5 <sup>3)</sup>

주: 1) 지로 일반계좌이체 제외

2)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3)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경우 2004년부터 통계를 편제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감률은 이를 제외하고 산출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서비스채널이 급성장하고 고객관계관리(CRM), 프라이빗뱅킹(PB), 방카슈랑스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산시스템의 용량 부족 및 처리속도 저하와 함께 각 서비스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은행들은 기존 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이 새로 도입하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 운영체제를 일반적으로 ‘차세대전산시스템’이라 부르고 있다. 차세대전산시스템 정보처리 속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향후 은행영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6월말 현재 주요 은행들의 추진 현황을 보면 산업, 우리, 기업 및 외환 은행이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민, 신한·조흥, 제일 은행 및 농협 등도 2006~2008년중에 구축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차세대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중이다.

은행들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시스템의 종류는 주전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 따라 메인프레임시스템과 유닉스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인프레임시스템은 소수의 대형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폐쇄형 통신을 사용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별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므로 보안 및 안전성이 탁월한 장점이 있다. 유닉스 시스템은 다수의 중형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공개된 운영체제인 유닉스(UNIX)를 사용함에 따라 기술인력수급, 관련 업무의 외부위탁 등이 용이하며 초기 설치비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 주요 은행의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현황

은행명	시스템도입 계획수립시점	시스템개통 (예정)시점	시스템종류	도입방법 <sup>1)</sup>
산 업	1998년	2001.3월	유닉스	빅뱅식
우 리	2000.11월	2004.9월	메인프레임	빅뱅식
기 업	2002. 5월	2004.9월	메인프레임	빅뱅식
외 환	2003. 1월	2005.2월	유닉스	빅뱅식
신한·조흥	2004.10월	2006.10월	유닉스	빅뱅식
제 일	2000.12월	2006년중	메인프레임	점진적 방식
국 민	2003. 7월	2007년중	유닉스	점진적 방식
농 협	2004.11월	2008년말	미정	점진적 방식(예정)
하 나	2005. 1월	미정	미정	미정

주: 1) 전산시스템 도입방식은 전체 전산시스템을 2년 이내의 단기간에 교체하는 빅뱅(Big Bang)식과 2년이상 중기간에 걸쳐 교체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

## 나. 증 권

증권·투자신탁 회사의 금융정보화는 1970년대 중반 증권거래소와 일부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정보화는 1977년 9월에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이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의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증권매매시스템(1979. 7), 증권정보문의시스템(1980. 8), 증권공동온라인시스템(1983. 2) 및 증권자동매매 체결시스템(1988. 3)이 차례로 가동되는 등 증권부문의 전산화 틀이 확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증권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1992. 1) 및 채권투자(1994. 7) 한도관리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주가지수선물거래시스템(1996. 5), 장외주식매매체결시스템(1996. 7) 등을 가동하였다. 특히 1996년 11월에는 공동온라인시스템과 매매체결시스템 등을 「시스템2000」으로 통합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증권회사 본·지점과 증권거래소 시장(주식 및 소액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장외시장(장외 주식 및 채권)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증권매매 주문의 접수 및 전달, 매매체결 및 결과 통보, 고객계좌원장의 정리, 증권 투자정보의 제공 등 증권거래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하였다. 1997년 7월부터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위한 매매체결 결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000년 들어서는 사이버증권 거래의 대중화, 선진 매매제도의 도입 등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및 증권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었다. 장외주식거래를 제도화하고 퇴출기업의 주식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2000. 3)을 구축하였다. 또한 공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소(2001. 4) 및 코스닥(2000. 11)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물·옵션(2000. 1) 및 코스닥(2000. 12) 감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상매매 적출 및 실시간 감시체제를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야간주식시장(ECN) 매매체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2년에는 증권 현물·선물계좌통합시스템(BASE21), 상장지수펀드(ETF)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2003년에는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유관기관간 Back-office 통합인프라의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재산예탁·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 4월 가동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별 증권회사들은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

거래, 조회,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 실적을 보면 전체 증권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부터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체 증권<sup>1)</sup>약정 및 온라인증권약정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온라인증권 <sup>2)</sup>		전체증권		온라인 비중	증감률(%p)
	약정 <sup>3)</sup>	증가율	약정 <sup>3)</sup>	증가율		
1998년	22.5	-	1,205.2	-	1.9	-
1999년	684.3	2941.3	3,607.5	199.3	19.0	17.1
2000년	1,939.7	183.4	4,163.9	15.4	46.6	27.6
2001년	2,189.5	12.9	4,185.0	0.5	52.3	5.7
2002년	3,293.5	50.4	6,321.8	51.1	52.1	△0.2
2003년	3,732.8	13.3	7,303.1	15.5	51.1	△1.0
2004년	736.6	-	1,422.9	-	51.8	-

주 : 1) 주식, 선물, 옵션(2004년부터는 주식거래분만 포함) 2) 외국증권사 제외  
3)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합

자료 : 증권업협회

증권부문의 정보화 추이

시 기	주 요 추 진 내 용
'70년대 중반	— 일부 증권회사의 자체 사무자동화
'77년 ~ '83년	— 한국증권전산(주)을 중심으로 한 공동온라인시스템 구축
'84년 ~	— 개별기관의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86년 ~ '94년	— 매매체결시스템, ARS 공동이용시스템, SUCCESS시스템 가동
'95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시장시스템 가동</li> <li>— 신공동온라인시스템, 신매매체결시스템 가동</li> <li>— 주가지수선물시스템, 채권업무시스템, 주가지수옵션시스템 가동</li> <li>—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 구축</li> <li>—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 구축</li> <li>— 전자공시시스템 구축</li> <li>— 선물·옵션 감리시스템, 코스닥 종합감리시스템 구축</li> <li>— 야간주식시장(ECN) 매매체결시스템 구축</li> <li>— 증권 현물·선물계좌 통합시스템(BASE21) 구축</li> <li>—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시스템 구축</li> <li>— 상장지수펀드(ETF) 시스템 구축</li> <li>—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 가동</li> </ul>

## 다. 보 험

보험회사의 금융정보화는 197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신규 계약, 요금, 보전, 업적관리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급여, 경리 등 일반 관리시스템과 자산운용관련 시스템도 차례로 개발되었다. 각 시스템들은 초기에는 일괄처리방식(Batch)으로 개발·운영되었으나 시스템이 대형화된 1980년대부터는 주전산기(Main Frame)중심의 본지점 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9월에는 기존 주전산기기의 용량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대내외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Client/Server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관련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보험업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이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가 보험정보화 추진 전담사업자로 지정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11월에 손해보험회사간 네트워크를 연결한 최초의 공동이용시스템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었고 1995년 5월에는 생명보험 거절체(拒絶體) 정보교환시스템(개인의 생명보험가입 불량사유를 보험사간 공유하는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

이후에도 각종 보험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노력이 지속되어 적하·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시스템(1997. 1), 자동차보험 보유자코드 전산망조회시스템(1997. 2), 자동차보험 통합조회시스템(1998. 7), 인보험 통합조회시스템(1999. 4),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시스템(1999. 12),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시스템(2000. 8), 보험사고정보시스템(2001. 6), 자동차종합민원정보망과의 연계시스템(2002. 1), 웹기반의 자동차이력 정보시스템(2003. 4), 생명보험 경험통계 관리시스템(2004. 6) 및 웹기반의 보험통계제공시스템(2004. 12) 등이 차례로 구축되었다.

한편 보험부문에서는 보험계약의 장기성, 보장내용 및 보험료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와 같은 인터넷기반 영업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품설계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개별 보험회사들이 온라인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요금 산출, 보험가입,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험부문의 정보화 추이

시 기	주 요 추 진 내 용
'70년대 초반 ~ '80년	— 개별 보험사의 자체 사무자동화
'81년 ~ '91년	— 본지점 온라인망 구축
'92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 가동</li> <li>—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가동</li> <li>—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시스템 가동</li> <li>—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물건 배정시스템 가동</li> <li>—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 시스템 가동</li> <li>— 생명보험 거절체 자료교환 시스템 가동</li> <li>— 자동차보험 보유자코드 전산망 조회서비스 및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전산망 조회서비스 구축</li> <li>— 자동차보험 통합조회시스템, 인보험 통합조회시스템 가동</li> <li>—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시스템 가동</li> <li>— 주민등록전산망, 자동차종합민원정보망과의 연계시스템 가동</li> <li>— 보험사고정보 집적시스템 가동</li> <li>— 온라인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li> <li>— 웹 기반의 자동차이력 정보시스템 가동</li> <li>— 생명보험 경험통계 관리시스템 구축</li> <li>— 웹 기반의 보험통계제공시스템 구축</li> </ul>

### 제 3 절 금융정보화 추진방향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기간중(2002~2006년) 금융부문 정보화 정책의 목표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적합한 선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고객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국민의 금융편의를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편의성 및 범용성이 높은 금융서비스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다. 즉 기존의 인터넷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접근이 용이한 휴대전화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모바일기기 등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채널을 확대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투자성향 등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및 개인간(P2P)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과 전자시스템을 확충하고 유가증권의 발행·관리업무를 전자화하는 등 금융거래수단의 전자화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신기술의 수용 등을 통해 24시간/365일 무정지·무장애 운영이 가능한 금융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환경의 변화나 고객접점의 다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고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5년중 추진할 주요 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금융기관의 원/외화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고 원화의 국제화에 대비한 결제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2004년 12월 가동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과 외환동시결제 대상거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 대상을 어음·수표의 경우 현행 정액권 자기앞수표에서 비정액권 자기앞수표와 인감대조 확인이 필수적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정보교환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로장표의 경우 기존 표준OCR 외에 일반OCR, MICR, A장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에 대응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과 거래의 신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Identrus<sup>1)</sup> 국제인증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중에는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Identrus 국제인증서비스의 도입환경 분석 및 국내 여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추진에 부응하여 전자적 수출입대금결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등록, 통지, 보관, 매입한도 관리, 매입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e-L/C 관리시스템」을 하반기중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3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자어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어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중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화폐(K-Cash),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전자결제수단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전자고지 및 납부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제세공과금의 범위 및 징수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정보망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

1) 1999년 4월 BOA, ABN AMRO, CitiGroup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최상위 국제인증기관(Root CA)으로 2000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전세계 61개 금융기관(국내는 조흥·외환은행)이 가입하고 있다.

강구하고 각종 재해나 장애 및 외부침해 등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증권부문에서는 거래약정에서 결제에 이르기까지 증권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된 메시지에 의해 시스템간에 자동적으로 연동시키는 증권업무의 일관 처리화(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를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증권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BASE 21 등 기존 시스템의 고객확대, 지속적 개선 및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2005년 1월 출범한 통합증권거래소의 IT 통합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험부문에서는 고객정보 통합관리체제 구축, 청약·심사업무 자동화 지속, 손해보험 요율검증 통계시스템 개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추출시스템 및 IT 투자 프로세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제 2 장 금융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제 2 장 금융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 제 1 절 은 행<sup>1)</sup>

#### 1. 정보화 인력 및 예산

##### 가. 인 력

은행의 전체직원과 전산분야 직원수는 2003년 일부 기관의 합병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전체직원중 전산분야 직원의 비중은 3.8%로 전년(3.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은행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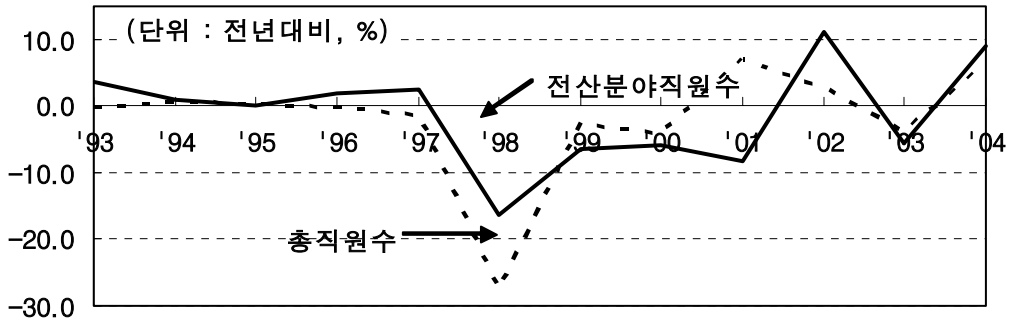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말	총직원 (A)	전산직원 (B)	전 산 직 원 비 중(B/A)(%)			외부용역 전산직원수	
			시 중	지 방	특 수		
2000	102,053 (△4.2)	4,138 (△5.9)	4.1	3.9	5.9	3.7	2,147
2001	109,186 (7.0)	3,799 (△8.2)	3.5	3.4	5.1	3.2	2,484
2002	112,083 (2.7)	4,217 (11.0)	3.8	3.7	5.1	3.5	2,919
2003	107,681 (△3.9)	3,985 (△5.5)	3.7	3.8	3.9	3.3	3,214
2004	114,306 (6.2)	4,342 (9.0)	3.8	4.1	4.1	3.0	3,254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1) 19개 국내은행(8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5개 특수은행) 기준, 외은지점 제외

은행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증감률 추이



한편 2004년말 현재 은행의 전산관련 외부용역인원은 3,254명으로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체 외부용역 인력의 49.1%를 차지하여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전산관련 외부용역 인원수 추이

(단위 : 명)

연 말	합 계	S/W개발	S/W보수	연구 /기획	전산실 운영	전산기기 유지보수	기 타
2000	2,147 (15.7)	1,384 <64.5>	184 <8.6>	19 <0.9>	208 <9.7>	146 <6.8>	206 <9.6>
2001	2,484 (15.7)	1,423 <57.3>	486 <19.6>	68 <2.7>	163 <6.6>	125 <5.0>	219 <8.8>
2002	2,919 (17.5)	1,810 <62.0>	584 <20.0>	88 <3.0>	166 <5.7>	102 <3.5>	169 <5.8>
2003	3,214 (10.1)	1,666 <51.8>	873 <27.2>	97 <3.0>	162 <5.0>	166 <5.2>	250 <7.8>
2004	3,254 (1.2)	1,597 <49.1>	999 <30.7>	36 <1.1>	195 <6.0>	172 <5.3>	255 <7.8>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합계인원에 대한 비중(%)

나. 예 산

은행의 2004년중 전산분야예산은 1조 8,249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지난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 결과다. 총예산에서 전산분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6%p 감소한 12.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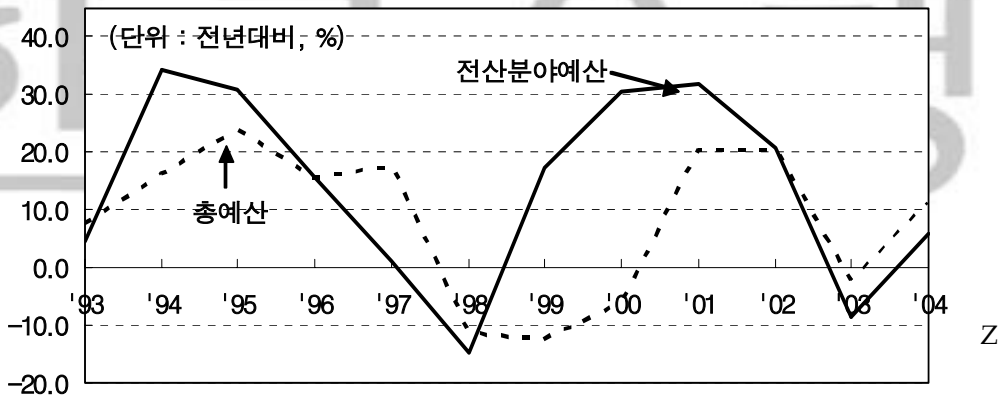
은행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 중	총예산 (A)	전 산 분 야 예 산(B)				전산예산 비중(%) (B/A)
		자본예산	인건비	기 타		
2000	92,076 (△6.0)	11,834 (30.5)	6,583 <55.6>	1,869 <15.8>	3,382 <28.6>	12.9
2001	110,772 (20.3)	15,582 (31.7)	9,516 <61.1>	2,032 <13.0>	4,034 <25.9>	14.1
2002	133,334 (20.4)	18,824 (20.8)	11,412 <60.6>	2,832 <15.1>	4,580 <24.3>	14.1
2003	130,353 (△2.2)	17,211 (△8.6)	7,611 <44.2>	3,820 <22.2>	5,780 <33.6>	13.2
2004	144,945 (11.2)	18,249 (6.0)	6,965 <38.2>	3,339 <18.3>	7,945 <43.5>	12.6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산분야예산에 대한 항목별 비중(%)

은행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증감률 추이



## 2.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

2004년말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노트북 및 PDA는 168,492대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단말기수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해 52,008대로 다소 증가하였고 PC 역시 103,926대로 전년말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휴대용노트북 및 PDA 보유대수는 각각 12,456대 및 102대로 대폭 감소했다.

은행의 사무자동화기기수 추이

(단위 : 대, 명)

연 말	단말기	P C	휴대용 노트북	PDA	계	직원수
2000	50,074 (△15.4)	100,487 (9.9)	—	—	150,561 (△0.1)	102,053
2001	45,808 (△8.5)	99,858 (△0.6)	—	—	145,666 (△3.3)	109,186
2002	51,258 (11.9)	96,960 (△2.9)	13,650	68	161,936 (11.2)	112,083
2003	45,249 (△11.7)	102,265 (5.5)	18,095 (32.6)	973 (1,330.9)	166,582 (2.9)	107,681
2004	52,008 (14.9)	103,926 (1.6)	12,456 (△31.2)	102 (△89.5)	168,492 (1.1)	114,306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 제 2 절 증 권 2)

### 1. 정보화 인력 및 예산

#### 가. 인 력

2004년말 증권회사의 전산분야직원수는 전체직원(30,109명)의 5.5%를 차지하는 1,651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9.4%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증권사들의 통합, IT업무의 아웃소싱 증대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04년말 전산분야 외부용역 인원수는 914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증권회사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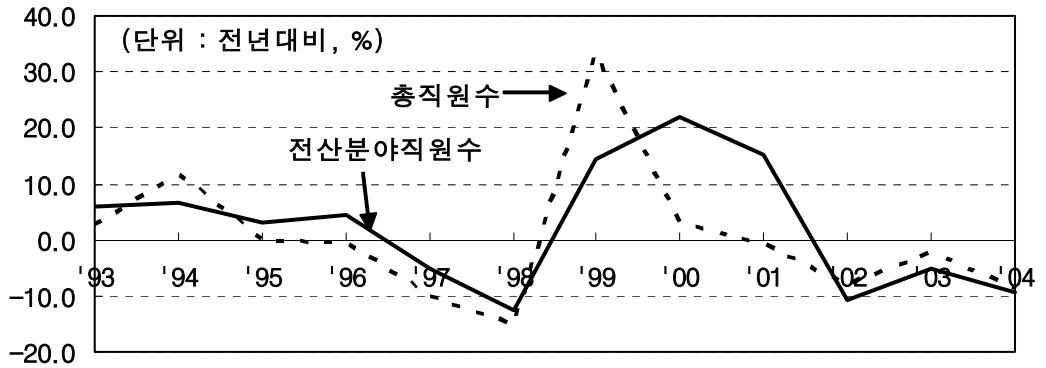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말	총직원 (A)	전산직원 (B)	전산직원 비중(%) (B/A)	외 부 용 역 인 원			
				S/W개발	S/W보수	기타	계
2000	37,026 (3.1)	1,869 (21.8)	5.0	705	309	364	1,378
2001	36,763 (△0.7)	2,152 (15.1)	5.9	911	324	419	1,654
2002	33,880 (△7.8)	1,922 (△10.7)	5.7	508	254	378	1,140
2003	33,023 (△2.5)	1,822 (△5.2)	5.5	324	184	341	849
2004	30,109 (△8.8)	1,651 (△9.4)	5.5	366	227	321	914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34개 국내증권회사 및 23개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증감률 추이



나. 예 산

2004년중 증권회사의 총예산과 전산분야예산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IT부문 투자감소에 따른 자본예산의 감소가 두드러져 전체 전산분야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낮아졌다. 또한 총예산중 전산분야예산 비중은 전년보다 2.6%p 낮은 12.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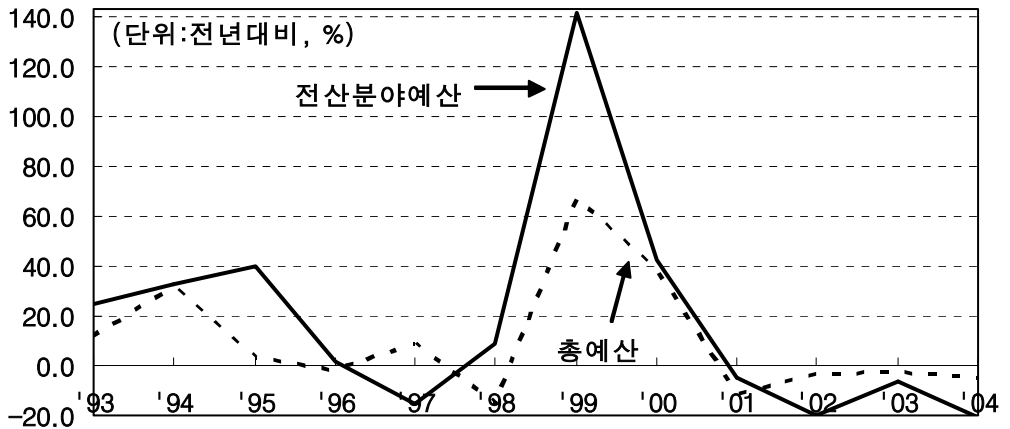
증권회사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 중	총예산 (A)	전 산 분 야 예 산(B)					전산예산 비중(%) (B/A)
		자본예산	인건비	기기비	기 타		
2000	53,767 (38.0)	9,394 (42.2)	5,116 <54.5>	1,220 <13.0>	875 <9.3>	2,183 <23.2>	17.5
2001	47,675 (△11.3)	8,969 (△4.5)	3,737 <41.7>	1,240 <13.8>	1,233 <13.7>	2,759 <30.8>	18.8
2002	46,100 (△3.3)	7,188 (△19.9)	2,149 <29.9>	1,360 <18.9>	1,015 <14.1>	2,664 <37.1>	15.6
2003	44,824 (△2.8)	6,707 (△6.7)	1,665 <24.8>	1,185 <17.7>	880 <13.1>	2,977 <44.4>	15.0
2004	42,711 (△4.7)	5,302 (△20.9)	981 <18.5>	1,197 <22.6>	534 <10.1>	2,590 <48.8>	12.4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산분야예산에 대한 항목별 비중(%)

## 증권회사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증감률 추이



## 2.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

2004년말 현재 증권회사의 단말기수는 291대로 전년말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PC수는 76,131대로서 8.6% 감소하였는데 이는 간접투자재산 예탁 결제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단말기 수요 증대와 기존의 PC를 휴대용 노트북 및 PDA로 일부 대체한데 기인한다. 증권회사의 휴대용노트북과 PDA 수는 각각 3,622대 및 3,366대이다.

### 증권회사의 사무자동화기기수 추이

(단위 : 대, 명)

연 말	단말기	P C	휴대용노트북	PDA	계	직원수
2000	1,095 (57.1)	91,197 (50.7)	..	..	92,292 (50.7)	37,026
2001	500 (△54.3)	90,947 (△0.3)	..	..	91,447 (△0.9)	36,763
2002	398 (△20.4)	80,217 (△11.8)	3,257	1,514	85,386 (△6.6)	33,880
2003	137 (△65.6)	83,307 (3.8)	2,930 (△10.0)	216 (△85.7)	86,590 (1.4)	33,023
2004	291 (112.4)	76,131 (△8.6)	3,622 (23.6)	3,366 (1,458.3)	83,410 (△3.7)	30,109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제 3 절 보 험3)

#### 1. 정보화 인력 및 예산

##### 가. 인 력

2004년말 보험회사의 전산분야 직원수는 1,354명으로 전체직원(45,694명)의 3.0%를 차지한다. 2004년말 외부용역 인원수는 2,23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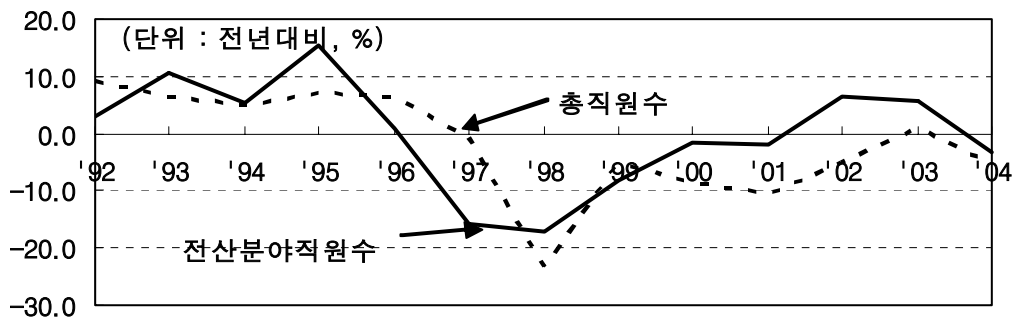
보험회사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추이

(단위 : 명)

연 말	총직원 (A)	전산직원 (B)	전산직원 비중(%) (B/A)	외 부 용 역 인 원			
				S/W보수	S/W개발	기타	계
2000	56,427 (△8.4)	1,269 (△1.4)	2.2	675	684	817	2,176
2001	50,509 (△10.5)	1,245 (△1.9)	2.5	974	636	805	2,415
2002	47,969 (△5.0)	1,325 (6.4)	2.8	863	635	908	2,406
2003	48,392 (0.9)	1,400 (5.7)	2.9	1,048	424	846	2,318
2004	45,694 (△5.6)	1,354 (△3.3)	3.0	1,304	213	720	2,237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보험회사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증감률 추이



3) 21개 생명보험회사 및 15개 손해보험회사

## 나. 예 산

2004년중 보험회사의 전산분야예산은 8,143억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 하였으나 총예산중 전산분야예산 비중은 5.0%로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전산분야예산중 자본예산의 비중은 41.1%로 전년에 비해 7.9%p 하락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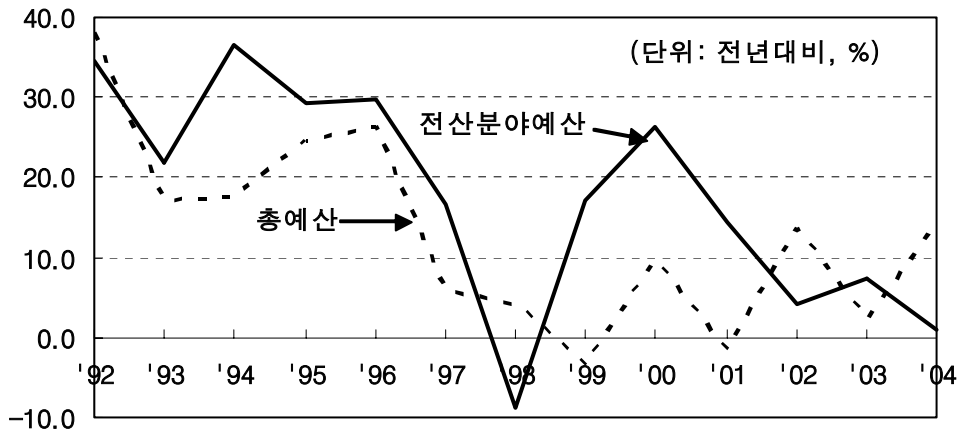
보험회사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 중	총예산 (A)	전 산 분 야 예 산(B)				전산예산 비중(%) (B/A)
		자본예산	인건비	기 타		
2000	125,161 (9.6)	6,299 (26.3)	3,135 <49.8>	1,237 <19.6>	1,927 <30.6>	5.0
2001	123,102 (△1.6)	7,201 (14.3)	3,581 <49.7>	1,296 <18.0>	2,324 <32.3>	5.8
2002	139,957 (13.7)	7,507 (4.2)	3,865 <51.5>	1,384 <18.4>	2,258 <30.1>	5.4
2003	143,019 (2.2)	8,067 (7.4)	3,952 <49.0>	1,775 <22.0>	2,340 <29.0>	5.6
2004	163,812 (14.5)	8,143 (0.9)	3,347 <41.1>	2,335 <28.7>	2,461 <30.2>	5.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산분야예산에 대한 항목별 비중(%)

보험회사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증감률 추이



## 2.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

2004년말 현재 보험회사의 단말기수는 129대, PC수는 148,434대로서 전년 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노트북은 15,922대로 약간 감소하였고 PDA 역시 20% 정도 감소하였다.

보험회사의 사무자동화기기수 추이

(단위 : 대, 명)

연 말	단말기	P C	휴대용노트북	PDA	계	직원수
2000	675 (△43.2)	138,956 (11.2)	..	..	139,631 (10.7)	56,427
2001	57 (△91.6)	153,047 (10.2)	..	..	153,204 (9.7)	50,509
2002	12 (△78.9)	126,570 (△17.4)	11,501	1,226	139,309 (△9.1)	47,969
2003	13 (8.3)	145,369 (14.9)	16,458 (43.1)	1,276 (4.1)	163,116 (17.1)	48,392
2004	129 (892.3)	148,434 (2.1)	15,922 (△3.3)	1,022 (△19.9)	165,507 (1.5)	45,694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제 4 절 관련기관4)

### 1. 정보화 인력 및 예산

#### 가. 인 력

2004년말 관련기관의 전산분야 직원수는 1,762명으로 전체직원(18,840명)의 9.4%를 차지한다. 한편 2004년말 외부용역 인원수는 869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외환카드, 우리카드 등이 은행과 합병된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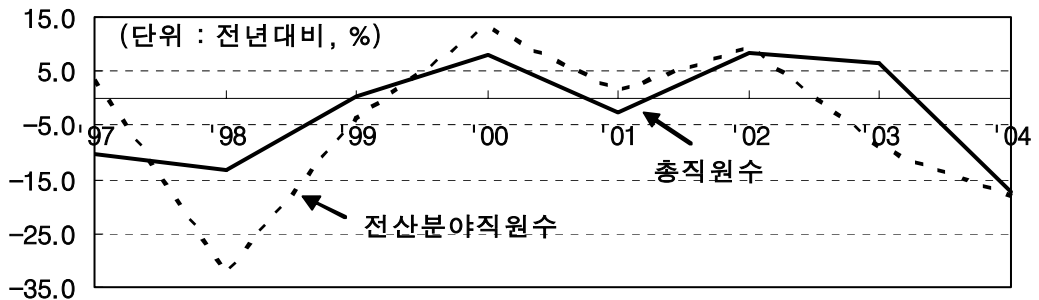
관련기관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추이

(단위 : 명)

연 말	총직원 (A)	전산직원 (B)	전산직원 비중(%) (B/A)	외 부 용 역 인 원			
				S/W개발	S/W보수	기타	계
2000	22,872 (13.1)	1,900 (8.1)	8.3	317	162	358	837
2001	23,201 (1.4)	1,850 ( $\Delta 2.6$ )	8.0	363	276	661	1,300
2002	25,404 (9.5)	2,004 (8.3)	7.9	818	502	1,163	2,483
2003	23,030 ( $\Delta 9.3$ )	2,133 (6.4)	9.3	780	413	396	1,589
2004	18,840 ( $\Delta 18.2$ )	1,762 ( $\Delta 17.4$ )	9.4	239	349	281	869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관련기관의 총직원수 및 전산분야직원수 증감률 추이



- 4) 은행계카드사(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우체국금융,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관련(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증권관련(KOSCOM, 증권선물거래소 등) 및 보험관련(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등) 기관

## 나. 예 산

2004년중 관련기관의 전산분야예산은 4,708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고 총예산중 전산분야예산 비중은 13.1%로 전년에 비해 0.7%p 하락하였다. 전산분야예산중 자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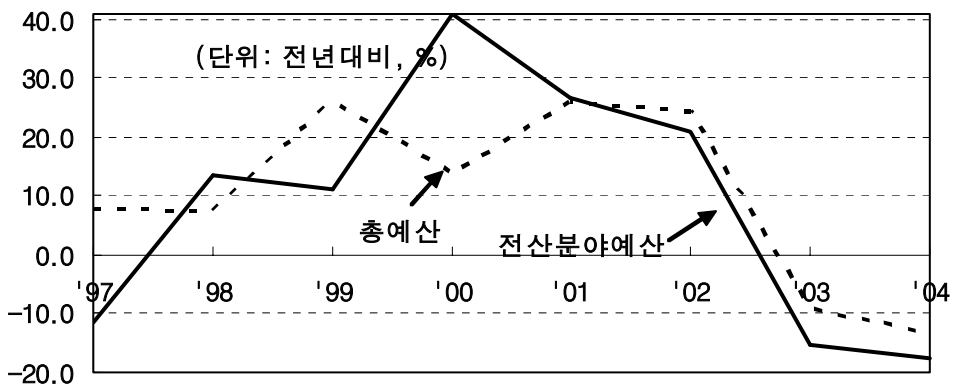
관련기관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 중	총예산 (A)	전 산 분 야 예 산(B)			전산예산 비중(%) (B/A)	
		자본예산	인건비	기 타		
2000	28,890 (13.9)	4,389 (40.9)	1,992 <45.4>	819 <18.7>	1,578 <35.9>	15.2
2001	36,432 (26.1)	5,566 (26.8)	1,872 <33.6>	979 <17.6>	2,715 <48.8>	15.3
2002	45,325 (24.4)	6,732 (20.9)	2,830 <42.0>	1,448 <21.5>	2,454 <36.5>	14.9
2003	41,248 (△9.0)	5,712 (△15.2)	1,678 <29.4>	1,579 <27.6>	2,455 <43.0>	13.8
2004	35,825 (△13.1)	4,708 (△17.6)	1,029 <21.8>	1,707 <36.3>	1,972 <41.9>	13.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산분야예산에 대한 항목별 비중(%)

관련기관의 총예산 및 전산분야예산 증감률 추이



## 2.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

2004년말 현재 관련기관의 단말기수는 3,406대로 전년말대비 16.7% 감소하였으며 PC수는 24,926대로서 44.8% 감소하였다. 휴대용노트북수는 1,788대, PDA수는 58대이다.

### 관련기관의 사무자동화기기수 추이

(단위 : 대, 명)

연 말	단말기	P C	휴대용노트북	PDA	계	직원수
2000	3,590 (4.6)	31,283 (21.0)	..	..	34,873 (19.1)	22,872
2001	3,598 (0.2)	34,425 (10.0)	..	..	38,023 (9.0)	23,201
2002	4,065 (13.0)	44,089 (28.1)	2,285	33	50,468 (32.7)	25,404
2003	4,091 (0.6)	45,184 (2.5)	2,244 (△1.8)	59 (78.8)	51,578 (2.2)	23,030
2004	3,406 (△16.7)	24,926 (△44.8)	1,788 (△20.3)	58 (△1.7)	30,178 (△41.5)	18,84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한국은행

### 제 3 장 금융정보망의 운영·관리

#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제 3 장 금융정보망의 운영 · 관리

### 제 1 절 금융공동망

금융공동망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참여 기관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금융정보망으로 각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간 각종 금융거래 및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금융공동망은 크게 은행공동망과 비은행공동망으로 나뉘어진다.

은행공동망은 개별 은행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은행간 각종 거래 및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공동망을 통한 은행간 거래의 정산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은행공동망에는 증권 및 보험부문의 공동망이 있다. 증권부문에서는 KOSCOM(주)을 중심으로 개별 증권사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공동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매주문 및 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식매매시스템이나 BASE2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부문에서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1992년 11월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여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신용정보공동망 및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도 있다.

한편 금융공동망은 비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계되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금융공동망과 연결된 외부전산망은 점외 CD/ATM공동망, SWIFT 망, 경찰전산망, 종합무역 자동화망 등이 있다.

## 1. 은 행

### 가.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약칭 "CD공동망")은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공동망 참가 금융기관들을 상호 연결하여 이용 고객이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 : Cash Dispenser)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으로 1988년 7월부터 가동되었다.

#### (1) 참가기관

2004년말 현재 CD공동망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홍콩상하이은행 국내지점 등이 참가하고 있다.

#### (2) 대상업무

CD공동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현금 입·출금, 예금잔액조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이 있다.

현금인출업무는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현금(또는 수표)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1회 인출한도(70만원이내), 1일 인출가능횟수 등은 예금계좌 개설은행이 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외국인 여행자가 국내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 은행에서는 외국발행 직불카드에 대한 현금인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업무는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993년 9월부터 새로운 공동망업무로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현금서비스 업무가 고객 거래은행의 CD/ATM에서만 가능하였으나, CD공동망에 동 업무가 추가된 이후부터는 고객은 거래은행 이외의 CD/ATM을 이용해서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계좌이체업무는 고객이 거래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이체를 하거나, 타행 CD/ATM을 이용하여 거래은행내 계좌간 또는 CD/ATM 제공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1994년 2월부터 실시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그간 평일 및 토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계좌이체업무를 자동화코너를 통하여 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 6월부터는 입출금계좌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은행 CD/ATM을 통해서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CD공동망 3자간 계좌이체서비스가 도입되어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1회 이체가능금액(1,000만원 이내) 및 1일 이체가능횟수 등은 각 은행이 정하고 있다.

###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2004년말 현재 고객들이 CD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지로납부의 경우 오후 10시)이다. 한편 은행 내부의 자체 업무처리 등을 위해 CD공동망의 운용종료시각은 고객의 이용시간이 끝난 후 1시간 뒤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고객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를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은행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단일 체계로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는 은행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현금인출의 경우 고객이 CD/ATM의 화면지시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따른 거래전문이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계좌개설은행 앞으로 송신된다. 계좌개설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취급은행 지급요청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취급은행 앞으로 지급승낙 메시지를 통보하고 메시지를 수신한 취급은행이 CD/ATM을 통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CD공동망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은행간 자금결제는 거래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30분 한은금융망(BOK-Wire)를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지급금액에서 수취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액결제된다.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다. 한편 은행간 송금에 따른 지급은행의 자금부담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결제차액에 대하여 자금이득을 얻은 은행이 콜금리 기준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sup>1)</sup>

## (5) 이용실적

### (가) CD/ATM 설치현황<sup>2)</sup>

2004년말 현재 CD/ATM수는 81,123대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전체 CD/ATM 기기중 CD의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ATM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창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수납전용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설치된 동 기기수는 3,991대이다.

#### CD/ATM 설치현황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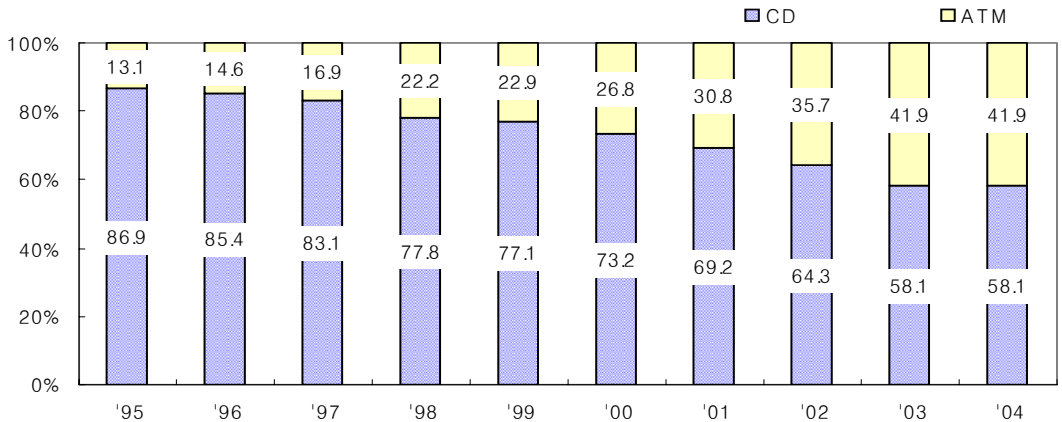
연말	CD	ATM	계	공과금 수납전용기
2000	34,971(6.8) <73.2>	12,793(31.4) <26.8>	47,764(12.5) <100.0>	-
2001	36,619(4.7) <69.2>	16,335(27.7) <30.8>	52,954(10.9) <100.0>	-
2002	42,492(16.0) <64.3>	23,567(44.3) <35.7>	66,059(24.7) <100.0>	-
2003	46,556(9.6) <58.1>	33,597(42.6) <41.9>	80,153(21.3) <100.0>	2,300
2004	45,135(-3.0) <55.6>	35,988(7.1) <44.4>	81,123(7.3) <100.0>	3,99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비중(%)

1) 그동안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등의 이용에 따른 은행간 차액결제시 교환부(負)은행(지급액이 수취액보다 큰 은행)이 교환승(勝)은행(수취액이 지급액보다 큰 은행)에게 청산차액 외에 청산차액에 자금부담일수를 곱한 금액(자금적수)만큼 무이자 대출로 보전하고 다음날에 동 보전금액을 회수해 오던 자금적수조정방식을 2001년 3월부터는 자금적수에 대한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국내은행, 외은지점, 우체국금융, 저축기관, 자동화기기업체 설치 기준

## CD/ATM 비중변화 추이



### (나) CD공동망 이용실적

2004년중 CD공동망 총 이용건수는 5억 3,977만건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으며 총 이용금액도 184조원으로 전년대비 13.4%가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비현금거래의 증가로 현금인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sup>3)</sup>, 제약이 없는 이용시간<sup>4)</sup> 등의 이점이 있는 인터넷뱅킹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CD공동망을 통한 송금을 대체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 CD공동망 이용실적

(단위 : 천건, 10억원)

연 중	총이용		현금인출 <sup>1)</sup>		계좌이체		잔액조회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586,583 (19.4)	204,595 (25.6)	329,655 (20.5)	78,693 (31.2)	119,715 (15.7)	125,902 (22.3)	137,213 (20.1)
2002	656,931 (12.0)	246,284 (20.4)	369,603 (12.1)	94,170 (19.7)	128,384 (7.2)	152,114 (20.8)	158,944 (15.9)
2003	571,052 (△13.1)	212,255 (△13.8)	301,410 (△18.5)	66,602 (△29.3)	132,145 (2.9)	145,653 (△4.2)	137,497 (△13.5)
2004	539,773 (△5.5)	183,753 (△13.4)	283,344 (△6.0)	58,254 (△12.5)	123,325 (△6.7)	125,499 (△13.8)	133,104 (△3.2)

주 : 1)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인출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 10만원을 타행앞 이체할 경우 창구취급 수수료는 600~3,000원, CD/ATM취급 수수료는 600~2,000원이지만 인터넷뱅킹 이용시 수수료는 300~600원이다.

4) 2004년말 현재 10개 은행이 24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대체로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나.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은행들의 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국내의 은행간 소액송금업무를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으로서 1989년 12월에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과거 지로, 송금환을 이용할 경우 2~3일이 소요되던 타행자금이체가 당일중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급결제업무가 빨라져 대고객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 (1) 참가기관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그리고 홍콩상하이은행, 도이치은행, ABN암로은행, UFJ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뱅크 오브아메리카,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등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하고 있다.

### (2) 대상업무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현금송금(자기앞수표 포함),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조회 등이 있다.

현금송금은 고객의 송금의뢰에 따라 의뢰은행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송금대전을 지급은행(수취인 거래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 앞으로 즉시 입금해주는 업무이다. 1997년 10월중 타행발행 일반자기앞수표가 타행환 송금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금과 자기앞수표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추심대전송금은 은행간에 처리되고 있는 추심업무 중 추심결제대금을 의뢰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즉시 입금처리해주는 업무이다.

자기앞수표 조회는 고객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조회를 의뢰받은 은행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동 수표 발행은행의 수표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조회해 주는 업무이다.

###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고객의 타행환공동망 이용가능시간은 은행영업시간과 동일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한편 은행 내부의 자체업무처리 등을 위해 타행환공동망의 운용종료시각은 고객의 이용시간이 끝난 후 1시간 30분 뒤로 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단일체계를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 은행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을 기초로 의뢰은행에 서면으로 타은행 수취인 계좌로 입금의뢰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의뢰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 앞으로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 앞으로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은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즉시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타행환 송금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30분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지급금액에서 수취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액결제된다.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다.

### (5) 이용실적

2004년중 타행환공동망의 총 이용실적은 2억 2,404만건, 80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2001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인터넷뱅킹 이용이 낮은 수수료, 제약이 없는 이용시간 등의 이점 때문에 빠르게 확대되면서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타행환공동망의 대상업무중에서는 현금송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타행환공동망시스템 이용실적

(단위 : 천건, 10억원)

연중	현금 송금		추심대전 송금		자기앞수표 조 회	합 계	
	건 수	금 액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 수	금 액
2000	392,112	1,922,115	5	14	424	392,536 (22.2)	1,922,115 (20.9)
2001	380,462	1,487,244	5	7	490	380,952 (△3.0)	1,487,244 (△22.6)
2002	315,092	1,097,725	15	37	547	315,639 (△17.1)	1,097,725 (△26.2)
2003	259,682	895,919	-	-	622	260,304 (△17.5)	895,919 (△18.4)
2004	223,434	801,925	-	-	601	224,035 (△13.9)	801,919 (△10.5)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다. 직불카드공동망(EFT/POS)

직불카드공동망(EFT/POS :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은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구매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 예금계좌에서 판매자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1996년 2월부터 가동되었다.

직불카드공동망의 구축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매점은 판매대금의 조기입금과 매출증대가 가능해 지고 발급기관은 수수료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1) 참가기관

2003년말 현재 직불카드공동망에는 산업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 (2) 대상업무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국내의 모든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살 수 있으며 CD/ATM을 통하여 예금의 입출금 및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을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외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도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결제성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카드와 겸용으로 발급된다. 직불카드는 예금잔액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직불카드공동망 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별도의 이용고객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물품판매점에서 직불카드 소지자가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고객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 다음날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용을 집계하여 은행별로 지급·수취해야 할 차액을 계산한다. 동 차액결제대금은 오전 11시 30분 한국은행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결제된다.

### (5) 이용실적

2004년말 현재 직불카드 발급매수는 6,317만매로 전년대비 4.0% 감소한 반면 가맹점수는 30만개로 전년에 비해 7.9% 증가하였다. 2004년중 이용실적은 111만건, 704억원(일평균 약 3,029건, 1억 9,28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2.3%, 13.5% 증가하였다. 이는 2004년 4·4분기 이후 대형할인점 체인업체인 이마트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여 고객의 은행계직불 카드 이용을 유도한 데 주로 기인한다.

## 직불카드공동망 이용실적

(단위 : 천매, 개, 건, 백만원)

연 말	카드발급매수	가맹점수	이 용 실 적(연중)	
			건 수	금 액
2000	53,758	246,012	1,786,068	106,360
2001	63,078	284,113	1,622,420	97,600
2002	65,362	282,496	1,170,998	75,510
2003	65,818	281,183	904,374	61,985
2004	63,173	303,348	1,105,741	70,381

### 라.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약칭 “CMS 공동망”)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등이 모든 거래은행과 접속할 필요 없이 CMS센터인 금융결제원이나 한 은행과의 접속만으로 전체 거래은행의 펌핑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6년 8월 가동되었다.

#### (1) 참가기관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홍콩상하이은행 및 UFJ은행 국내지점 등이 CMS공동망에 참여하고 있다.

#### (2) 대상업무

CMS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량자금의 입금·출금이체 업무, 각급 학교의 교육비 수납, 실시간 계좌실명조회 등이 있다.

대량자금의 입금이체는 물품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가진 다수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이다. 출금이체는 각종 물품

판매대금, 보험료, 카드이용대금, 회비 등 납부인이 지정되어 있는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시키는 업무이다.

###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CMS공동망은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지만 이용기관은 업무별로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고객수수료는 거래은행(계좌보유은행)과 이용기관이 별도의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계좌보유은행이 상대 은행에 지급하는 은행간 수수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납부하는 이용요금은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는 대가로 서비스 가입시 납입하는 요금과 CMS공동이용업무 및 시스템의 사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인 중계수수료가 있다. 동 요금의 체계 및 수준은 금융결제원 전자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출금이체 서비스의 경우 출금이체 전일 오후 5시까지 금융결제원에 의뢰내역을 전송해야 하며, 출금이체 다음날 10시부터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입금이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입금이체 전일 2시까지 입금의뢰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해야하며 입금이체 당일 오후 4시부터 결과내역을 볼 수 있다.

은행간 자금결제일은 출금이체의 경우 자금결제일이 출금이체일 다음날이며, 입금이체는 입금이체일 당일이다. 참가은행간 자금결제는 자금결제일 및 입금이체일 다음날 11시 30분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 당좌계정을 통한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5) 이용실적

2004년중 CMS공동망 이용실적은 6억 3,077만건, 73조원(일평균 173만건, 1,992억원)이며 이중 출금이체가 건수의 89.6%, 금액의 69.9%를 각각 차지하였다. 건당 이체금액은 입금이체가 약 33만원이고 출금이체의 경우 약 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CMS공동망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천건, 억원)

연 도	합 계		입금이체		출금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289,735	323,790	25,540	83,677	264,195	240,113
2001	438,787	629,433	48,724	164,191	390,063	465,242
2002	593,753	1,050,085	65,380	251,179	528,373	799,906
2003	576,247	863,868	60,745	228,933	515,502	634,935
2004	630,765	727,114	65,776	218,747	564,989	508,367

### 마. 지방은행공동정보망(BANKLINE)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은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뱅크라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가 지방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간을 상호연결하는 공동정보망으로 1997년 6월부터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고객이 지방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입·출금 및 송금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출금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1) 참가기관 및 대상업무

2004년말 현재 6개 지방은행이 모두 지방은행공동정보망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는 입금거래 및 출금거래, 통장

정리 및 재발행, 각종 조회, 사고신고, 예금잔액증명 발급 등이 있다.

## (2) 운영시간 및 수수료

고객이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은행영업시간과 동일하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뱅크라인 통장을 지참하여 입출금하는 경우와 400만원 이내의 학자금 송금인 경우에는 면제되며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참가 지방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3)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고객은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뱅크라인통장용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지방은행 공동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뱅크라인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계좌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4종이 있으며, 동 계좌를 통하여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 등 3종의 저축성 예금계좌와의 연결처리도 가능하다.

고객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의뢰은행에 서면 또는 대고객 전산망을 통해 입금지시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지시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 앞으로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 앞으로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 본점은 이에 따라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즉시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진 고객간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액결제된다.

## (4) 이용실적

2004년중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이용건수 및 금액은 41만건, 2조 4천억원

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4.5%, 29.1% 감소하였다. 이는 인터넷뱅킹이 확산되면서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로 대체한 데 주로 기인한다.

###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총이용건수		출 금		입 금		조 회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0	1,217	40,152	341	5,471	875	34,681	11
2001	1,283 (5.4)	42,819 (6.6)	335 (△1.8)	4,911 (△10.2)	948 (8.3)	37,908 (9.3)	13 (18.2)
2002	952 (△25.8)	44,307 (3.5)	230 (△31.3)	4,085 (△16.8)	727 (△23.3)	40,222 (6.1)	6 (△53.8)
2003	484 (△49.2)	33,896 (△23.5)	171 (△25.7)	3,204 (△21.6)	313 (△56.9)	30,692 (△23.7)	4 (△33.3)
2004	414 (△14.5)	24,036 (△29.1)	143 (△16.4)	3,177 (△0.8)	271 (△13.4)	20,859 (△32.0)	3 (△25.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바.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기존의 자동응답서비스(ARS : Automatic Response Service)공동망(약칭 “ARS공동망”)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ARS 업무 뿐만 아니라 그간 타행환공동망 또는 CD공동망을 통해 제공되던 텔레뱅킹 및 PC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B2B 지급결제서비스 등 새로 제공되기 시작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 (1) 참가기관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홍콩상하이은행 및 도이치은행 국내지점 등이 참여하고 있다.

## (2) 대상업무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계좌이체, 수표사고신고 및 접수, 거래내역 및 잔액조회, 자기앞수표조회, 신용카드조회, 환율조회 등의 업무가 있다. 계좌이체 업무는 고객이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공동망에 가입한 은행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체한도는 건당 10억원 이내에서 참가은행이 정하고 있다.

## (3) 운영시간 및 수수료

전자금융공동망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참가은행은 의무적으로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분 참가은행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해서만 대고객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수수료 수준은 각 은행이 정하고 있다.

##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전자금융공동망의 대고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PC,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금융공동망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에 접속한 후 계좌, 수표, 신용카드 등에 관한 조회요청을 한다. 금융결제원은 동 조회요청을 계좌개설 은행에 송신하고 그 수신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계좌이체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액결제된다.

## (5) 이용실적

2004년중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인터넷뱅킹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제약이 없는 이용시간 등을 바탕으로 타행환과 CD/ATM 이용고객을 흡수하면서 총 이용건수는 전년에 비해 18.0% 증가한 7억 5,658만건, 이체금액은 13.2% 증가한 3,175조원을 기록하였다. 이 중 타행간 계좌이체가 이용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총이용 건수 및 금액 대비 각각 83.0%와 99.8%를 차지하였다.

###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실적

(단위 : 천건, 10억원)

연 중	총이용건수 (A+B+C)	계좌이체		조 회 <sup>1)</sup> (B)	기 타 <sup>2)</sup>	
		건수(A)	금액		건수(C)	금액
2001	258,130	155,228	712,488	102,896	6	3
2002	513,764 (99.0)	406,012 (161.6)	2,023,306 (184.0)	102,137 (△0.7)	5,615	1,566
2003	641,368 (24.8)	519,407 (27.9)	2,804,868 (38.6)	108,990 (6.7)	12,971 (131.0)	4,422 (182.4)
2004	756,579 (18.0)	628,097 (20.9)	3,174,993 (13.2)	114,811 (5.3)	13,671 (5.4)	4,818 (9.0)

주 : 1) 잔액조회, 무통장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조회 등

2) 물품대금무선결제서비스로 2001년 9월부터 개시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2. 증 권

증권회사들은 1970년대 중반 업무전산화를 시작하면서 KOSCOM(주)을 중심으로 한 공동망체제로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였다. 현재 KOSCOM(주)이 구축·운영중인 대표적 공동시스템으로는 증권회사를 위한 원장관리·주문전달·기타 증권업무지원 공동시스템인 BASE 21 시스템, 거래소 주식매매시스템과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 주가지수선물·옵션매매시스템 등이 있다.

## 주요 증권공동망 이용실적<sup>1)</sup>

(단위 : 천건)

연중 시스템	공동온라인 시스템 <sup>2)</sup>	BASE 21	거래소 주식매매 시스템	코스닥 주식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선물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옵션매매 시스템
2000	683,818	-	471,651	372,463	23,902	23,848
2001	904,434	-	321,250	204,774	23,697	73,358
2002	99,122	291,211	192,594	148,156	12,285	56,657
2003	-	124,404	139,600	265,074	14,338	68,597
2004	-	144,741	294,393	210,779	34,262	183,712

주 : 1) 체결(약정)건수 기준

2) 공동온라인시스템을 대체하는 BASE21이 가동됨에 따라 2002년 12월에 서비스 종료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과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사이버 증권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으며, 무선단말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증권거래 및 정보제공 서비스도 보편화되었다.

### 가. BASE 21

BASE 21은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각종 고객계좌 정리 등의 기본업무를 표준화하여 1983년 2월부터 가동해 오던 공동온라인시스템을 확대하여 주식·선물·옵션 등 각종 증권 거래체결업무와 투자정보 및 각종 지원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시스템으로 2002년 2월부터 가동되었다.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도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 나. 거래소 주식매매시스템

거래소 주식매매시스템은 증권회사로부터 접수된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을 자동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문호가의 접수 및 집계, 시장 운영, 매매체결, 심리,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동 시스템은 1988년 3월 최초 가동당시 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0%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쳤으나 1996년 11월에는 전체 거래량의 98%를 처리하는 신시스템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상장종목의 100%를 자동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중에는 시스템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시스템에의 무단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운용을 도모하고 토요일 휴장, 거래중단제도 및 프로그램 호가지연처리(SIDE CAR)제도 등 신규업무를 수용하였다. 또 2000년 6월에는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을 분리한 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리용량도 확대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각종 재난과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체제를 갖추었다.

#### **다.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은 코스닥시장의 주식매매를 자동 매매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1996년 7월에 가동되었다.

2000년 중에는 거래소 주식매매시스템으로부터 코스닥 주식매매시스템을 분리하였으며 비상장·비등록·장외주식 거래의 제도화를 위해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시스템 처리용량을 호가건수 기준으로 일 최대 20만건까지 확대하였다. 동년 10월에는 각종 재난과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체제를 구축하였다.

#### **라. 주가지수 선물매매시스템**

주가지수 선물매매시스템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의 주문접수, 매매 체결 및 결제 등을 자동처리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1996년 5월에 가동하였다.

1998년 중에는 선물시스템 기기를 추가로 도입하여 동 시스템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켰다. 또 2002년 9월에는 시스템 처리능력을 일 최대 15만건이던 것을 50만건까지 확대하였다.

## 마. 주가지수 옵션매매시스템

주가지수 옵션매매시스템은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매매체결 및 결제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관련 시장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1997년 7월에 가동되었다.

1998년에는 동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옵션결제일 종목수 축소나 가격제한폭 변경 등 각종 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투자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였다. 또 2002년 12월에는 시스템 처리능력을 일 최대 50만건에서 150만건으로 확대하여 지연처리 현상을 해소하였다.

## 바. 기 타

그 외에도 야간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전자거래(ECN :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up>5)</sup>시스템과 거래소 및 장외 채권매매시스템 등이 있다. 거래소 채권매매시스템은 상장채권의 주문전달, 매매체결, 결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1996년 11월에 신매매시스템과 동시에 가동하였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국고채권 매매의 활성화 및 채권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채 및 일반채권 매매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2년 2월에는 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다.

한편 증권정보시스템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결과로 발생한 시세정보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분석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증권회사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80년 8월에 가동하였다. 1998년중에는 시스템 증설 및 회선 이중화 작업을 통하여 정보조회속도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정보제공 매체도 인터넷,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

5) 인터넷을 기반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대체증권시장 또는 사이버(온라인) 증권시장으로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정규 증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3. 보 험

보험회사의 공동시스템은 중계센터인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관련기관 등의 컴퓨터를 상호 접속하여 보험관련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1992년 5월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1992년 11월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공동망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요 공동시스템으로는 대상업무에 따라 첫째, 자동차보험 분야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조회,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물건 배정,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관리, 보유자코드 및 정비공장코드 조회,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산출 및 조회, 자동차보험 통합조회 등이 있고, 둘째,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적하보험 EDI, 적하 및 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 근재보험 할인할증을 조회 등이 있으며 셋째, 기타분야로 인보험통합조회, 보험사고정보 제공, 자동차 이력정보제공, 기초통계 자료교환 등이 있다.

보험회사 공동시스템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	자동차종합보험 할인·할증 조회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
2000	11,240 (△42.3)	220,550 (42.0)	1,560 (66.0)	340 (77.1)
2001	591 (△94.7)	372,664 (69.0)	1,662 (6.5)	373 (9.7)
2002	1,352 (128.8)	569,905 (52.9)	1,795 (8.0)	271 (△27.3)
2003	380 (△71.9)	558,014 (△2.1)	2,248 (25.2)	278 (2.6)
2004	122 (△67.9)	488,584 (△12.4)	3,073 (36.7)	307 (10.4)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가. 자동차보험

### (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

1992년 11월 보험업계 최초의 공동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사고발생시 종합보험 가입회사에서 사고처리 후 책임보험 가입회사로 보험금을 구상하기 위해 해당 책임보험 가입회사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회사에 대한 유선 확인 등 중복업무를 제거하였다.

### (2) 자동차보험 개별 및 단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서비스는 종합보험의 계약, 사고, 배서, 적용율, 갱신을 등을 조회하여 온라인으로 타사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3년 6월에 구축되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타사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자동차보험 단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의 단체업체별 실적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99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 (3)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시스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해당운전자의 중복여부와 과거 사고기록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적절한 주운전자를 선정하는 등 보험계약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995년 5월에 구축되었다.

### (4)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물건 배정시스템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의 일반물건 또는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하기를 거절한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을 보험회사간 합의된 배분비율 및 순번 등 일정기준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 배정하고, 동 보험회사는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불량보험계약자의 무보험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5년 5월에 구축되었다.

## (5)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1995년 12월에 도입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통보업무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정보 종합망과의 연계를 통해 2002년 1월 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 전산망 구축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대인배상Ⅱ 미가입자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5년 2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물보험 가입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다.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 3개 온라인전용보험사, 5개 공제조합, 250여개 시·군·구청,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 (6) 보유자코드 및 정비공장코드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가입업체별 코드 및 정비공장별 코드를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계약 및 보상업무와 할인·할증 실적평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1997년 2월 가동되었다.

## (7)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산출·조회시스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보험정보망을 통해 피보험자별 보험가입경력을 조회해주는 시스템으로 1997년 5월에 구축되었다.

## (8) 자동차보험 통합조회시스템

개별 보험사가 보험정보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고·적용률 등 개별조회시스템을 통합하여 1998년 7월부터 가동되었다.

## 나. 일반손해보험

### (1) 적하보험 EDI시스템(청약 및 증권발급, 배서)

보험개발원의 EDI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EDI형식으로 보험사와 무역업체 간 적하보험 청약서, 증권발급통지서를 수수, 배서처리하는 시스템이다. 1995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수출입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인력·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2) 적하·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시스템

각 손보사가 인수한 적하·선박보험 공동인수 자료를 매월 보험개발원에 전송하고 보험개발원은 이를 취합하여 참여사별로 공동인수 보험을 분류하여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전송함으로써 손보사의 마감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1997년 1월에 가동되었다.

### (3) 근재보험 할인할증을 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근재보험 계약자별 할인할증율 자료를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고 관련 실적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1997년 8월에 가동되었다.

## 다. 기 타

### (1) 인보험통합 조회시스템

기존의 계약자조회시스템을 확장하여 장기보험의 계약·사고자료, 상해보험의 계약 및 사고자료, 자동차보험의 계약 및 피해자자료 등 인보험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1999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 (2) 보험사고 정보시스템

손·생보사의 보험종목별 사고관련 정보(Claim 정보)를 보험개발원의 교환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일일 집적하고, 보험회사에 해당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OLTP(Online Transfer Processing) 시스템으로 2001년 6월부터 정식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은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공동대처, 보험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조사전담팀(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자료출력 및 차량검색 기능,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3월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한 SIU용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plus)를 확충하였다.

## (3) 자동차 이력정보시스템

자동차 이력정보시스템은 중고자동차 품질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를 중고차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2003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중고차 거래시 이전 소유자의 법률적, 행정적 문제점은 등록 원부 공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기계적, 물리적 손상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차보험사고자료 이외에 자동차등록정보와 차량기준가액관련 자료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4) 기초통계 자료교환시스템

손·생보사와 보험개발원간 비정형화된 보험관련 기초통계 자료교환 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집적 기간 단축 등 업무효율성 제고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손보사용 자료교환시스템을, 동년 9월에는 생보사용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4. 기 타

### 가.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대금결제를 실시간으로 중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 주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확충하고 금융기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이 중계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2000년 12월부터 가동되었다.

#### (1) 참가기관

2004년말 현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조달청, 행정자치부, 대법원 등 공공기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참여하고 있다.

#### (2) 대상업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는 은행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를 통한 판매대금결제서비스 및 이체내역조회서비스이며 신용카드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계좌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등이 있다.

#### (3) 이용시간 및 수수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은행마다 정해진 시간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결제중계수수료는 거래금액별 정액제로서 건당 최저 100원, 최고 3,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전액 쇼핑몰 이용고객계좌 보유은행인 출금은행의 수익으로서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이 쇼핑몰 앞으로 입금된다.

#### (4)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고객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쇼핑몰에 접속한 후 상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문정보 및 결제정보를 쇼핑몰로 전송하면 쇼핑몰은 결제정보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동 중계시스템에서는 고객의 거래은행 앞으로 출금지시 전문을 발송하고 고객의 거래은행은 실시간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한 후 출금결과를 동 중계시스템에 전송한다.

동 중계시스템은 출금결과를 쇼핑몰로 전송하는데 이때 고객은 실시간으로 출금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중계시스템은 구매거래 다음날 은행 영업개시시간 이전에 쇼핑몰 거래계좌로 결제대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쇼핑몰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지시전문을 전송한다. 쇼핑몰 거래은행은 구매거래 다음날 영업개시이전에 결제대금을 쇼핑몰 계좌로 입금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고객의 결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나 쇼핑몰만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정보를 암호화한 후 전송함으로써 쇼핑몰이 고객의 결제정보를 직접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거래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액결제된다.

#### (5) 이용실적

2004년중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이용실적은 1,072만건, 1,0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7.2% 및 45.1%가 증가하였다.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천건, 억원)

	건 수	금 액
2001	697	40
2002	6,105 (775.9)	519 (1,197.5)
2003	10,636 (74.2)	751 (44.7)
2004	16,718 (57.2)	1,090 (45.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나. 신용정보공동망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과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갱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974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다가 1997년 1월 온라인망이 가동되었다. 2004년말 현재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용정보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특수기록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으로 구분한다.

집중관리 대상정보  
(2005년 6월말 기준)

정 보 내 용	대 상 거 래 처	집 중 시 기
<b>&lt;개인신용거래정보&gt;</b>		
1. 대출거래 사실	당해 개인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이내)
2. 채무보증 사실		
3.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4.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거래 사실		- 매월 1일, 11일, 21일(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b>&lt;기업신용거래정보&gt;</b>		
1. 가계당좌·당좌 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개인기업 및 법인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1. 가계당좌·당좌 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 개인기업 및 법인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 일일집중(신용공여) :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 월집중(신용공여, 담보현황, 한도거래상황) : 다음월 6일 이내
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b>&lt;신용능력정보&gt;</b>		
1. 회사의 개황, 경영방식, 기업 규모 등 일반정보	외부감사 실시 기업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정보		
3. 상장유무, 공인회계사 감사 의견 등 비재무정보		

## 제 2 절 대고객정보망

대고객정보망은 고객이 컴퓨터, 전화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네트워크이다.

대고객정보망의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업무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객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자금관리, 송금, 증권매매, 보험계약, 금융경제정보 입수 등 금융기관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1. 은행<sup>6)</sup>

#### 가. 텔레뱅킹 서비스

텔레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창구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식 전화기를 통하여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직원과 통화함으로써 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 및 Fax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각종 조회, 분실신고 등은 거래은행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가능하지만 자금이체, Fax통지 서비스 등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텔레뱅킹은 이용수수료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보다 저렴하게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 우체국 및 홍콩상하이은행 국내지점 등이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중 이용실적은 14억 2,137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19.0% 증가하였다. 내역별로는 각종 조회가 9억 2,130만건으로 64.8%, 자금이체가 4억 2,528만건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다.

---

6) 우체국금융 및 외은지점 포함

## 텔레뱅킹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구분		
					각종조회	자금이체	기 타
2000	22	..	..	904,285 (38.8)	599,453 <66.3>	201,763 <22.3>	103,069 <11.4>
2001	21	..	..	1,440,918 (59.3)	884,644 <61.4>	347,296 <24.1>	208,978 <14.6>
2002	21	21,064	12,187	1,219,469 (△15.4)	803,534 <65.9>	320,454 <26.3>	95,481 <7.8>
2003	21	26,426 (25.5)	11,092 (△9.0)	1,194,338 (△2.1)	761,371 <63.7>	334,057 <28.0>	98,910 <8.3>
2004	20	28,088 (6.3)	15,311 (38.0)	1,421,372 (18.1)	921,302 <64.8>	425,278 <29.9>	74,792 <5.3>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텔레뱅킹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조회	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 출금, 입출금명세 조회</li> <li>· 예금잔액조회</li> <li>·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의 통장번호 조회</li> <li>· 계좌이체 및 예약이체 결과확인 조회</li> </ul>
	신용카드	· 결제대금, 사용한도,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거래명세, 결제통장번호 등 조회
	기타	· 자기앞수표, 환율, 대출금이자 및 원리금 조회
자금이체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행 및 타행 계좌이체, 대출금이자 납부, 지로대금 납부 등</li> <li>· 예약이체 및 취소</li> </ul>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체	
분실신고	· 통장 및 인감,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전화 및 팩스통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명세 전화통지 및 전화통지서비스 취소</li> <li>· 입출금명세, 신용카드 이용명세, 환율 Fax통지</li> </ul>	
텔레뱅킹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안내, 비밀번호, 초기등록, 비밀번호 변경, 텔레뱅킹서비스 해지 등	
텔레뱅킹 론		

한편 최근에는 텔레뱅킹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콜센터를 구축하여 전화를 매체로 고객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은행의 콜센터 구축 현황  
(2004년말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수(개)			근 무 인 원(명)			
고객DB 구축	고객통화 녹취	통합안내	합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리직
19	20	15	6,260	4,155	1,727	378

### 나. PC뱅킹 서비스

PC뱅킹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컴퓨터와 가정(Home Banking) 및 기업(Firm Banking)의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점포에 가지 않고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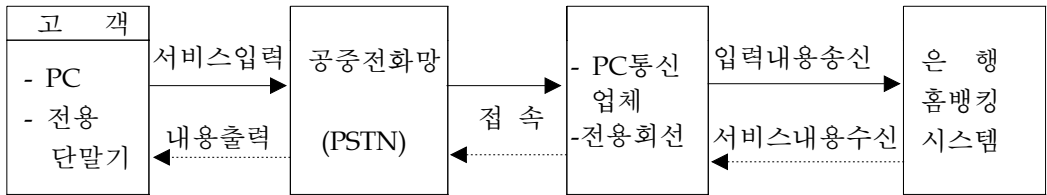
PC뱅킹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PC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으로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행이 1987년부터 펴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의 일이다. 펴뱅킹은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원하는 기업층의 요구에 따라 자금이체서비스(예금계좌간 이체, 급여이체 등), 입출금통지서비스, 회계정보서비스(잔액조회 등), 금융경제정보서비스(시황전망 등) 등으로 서비스내용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와 함께 대량지급·수납·거래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펴뱅킹서비스인 자금관리서비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가 개발되어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1) 홈뱅킹 서비스

홈뱅킹 서비스는 개인고객이 PC통신업체를 통해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잔액조회,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정보망으로서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하여 서비스 개시 이후 계속 이용이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인터넷뱅킹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됨에 따라 PC통신을 이용한 홈뱅킹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도



2004년말 현재 7개 국내은행에서 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 고객수는 467만명,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53만명을 기록하였다. 이용실적은 4,926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4.6% 감소하였다. 내역별로는 정보조회가 3,561만건으로 전체의 72.3%, 계좌이체가 1,279만건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홈뱅킹 이용현황

(단위 : 개, 천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계좌정보 조회		
					계좌정보 조회	계좌이체 <sup>1)</sup>	기 타
2000	22	8,639 (31.7)	..	464,209 (14.7)	307,479 <66.2>	111,997 <24.1>	44,733 <9.7>
2001	20	11,665 (35.0)	..	150,216 (△67.6)	89,063 <59.3>	37,009 <24.6>	24,144 <16.1>
2002	16	9,725 (△16.6)	1,800	80,340 (△46.5)	57,329 <71.4>	16,265 <20.2>	6,746 <8.4>
2003	12	11,562 (18.9)	1,830 (1.7)	51,644 (△35.7)	34,961 <67.7>	12,661 <24.5>	4,022 <7.8>
2004	7	4,668 (△59.6)	528 (△71.1)	49,256 (△4.6)	35,606 <72.3>	12,790 <26.0>	86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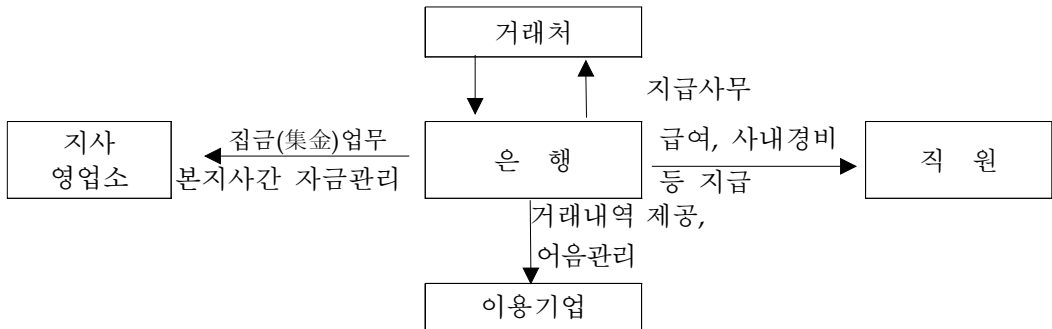
주 : 1) 현금서비스이체실적을 포함,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2) 펌뱅킹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는 기업의 컴퓨터를 은행의 호스트컴퓨터와 연결하여 자금 수납 및 지급업무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스템 구성도



2004년말 현재 14개 국내은행 및 3개 외국계은행에서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기업수는 210,952개사이다. 2004년중 이용실적은 3억 7,170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하였다. 내역별로는 자금이체가 2억 9,021만건으로 전체의 78.1%, 정보조회가 4,688만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펌뱅킹 이용 현황

(단위 : 개,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이용실적			
					자금이체	거래내역전송	정보조회	기 타
2000	21	116,019 (29.8)	..	1,238,630 (24.7)	976,448 <78.8>	58,239 <4.7>	125,477 <10.1>	78,466 <6.3>
2001	20	99,477 (△14.3)	..	1,421,097 (14.7)	1,053,166 <74.1>	73,923 <5.2>	191,894 <13.5>	102,113 <7.2>
2002	24	223,801 (125.0)	89,071	479,359 (△66.3)	312,231 <65.1>	29,323 <6.1>	100,273 <20.9>	37,532 <7.8>
2003	19	316,343 (41.4)	51,966 (△41.7)	348,863 (△27.2)	223,577 <64.1>	27,083 <7.8>	67,571 <19.4>	30,632 <8.8>
2004	17	210,952 (△33.3)	35,397 (△31.9)	371,698 (6.5)	290,207 <78.1>	34,468 <9.3>	46,883 <12.6>	140 <0.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다. 인터넷뱅킹 서비스

인터넷뱅킹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은행업무를 원격지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인터넷뱅킹은 새로운 종류의 지급결제수단은 아니며 기존의 지점, CD/ATM, 전화기, PC통신 등과 같이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로(delivery channel)중의 하나이다. 휴대전화나 PDA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도 인터넷뱅킹서비스의 일종이다.

1995년 10월 세계 최초로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이래 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각종 금융상품정보의 제공, 홍보 등에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는 1999년 7월 신한, 한미, 주택은행 등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홍콩상하이 및 도이치은행 국내지점 등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2,427만명이다. 2004년중 실이용고객수는 1,138만명, 이용건수는 32억 9,256만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8.3%, 24.9% 증가하면서 인터넷뱅킹이 주요한 금융서비스 경로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 인터넷뱅킹 이용현황

(단위 : 개, 천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정보조회	자금이체	대출
2000	20	4,090	..	184,559	155,477 <84.2>	28,273 <15.3>	809 <0.4>
2001	21	11,310 (176.5)	..	910,769 (393.5)	755,983 <83.0>	151,589 <16.6>	3,197 <0.4>
2002	22	17,710 (56.6)	8,614	1,782,570 (95.7)	1,449,485 <81.3>	329,914 <18.5>	3,171 <0.2>
2003	23	22,754 (28.5)	10,507 (22.0)	2,635,339 (48.0)	2,248,217 <85.2>	384,999 <14.6>	2,123 <0.1>
2004	22	24,271 (6.7)	11,376 (8.3)	3,292,563 (24.9)	2,745,332 <83.4>	546,202 <16.6>	1,029 <0.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라. 모바일뱅킹 서비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나 PDA 등 이동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동 서비스는 통신회사가 은행에 무선결제플랫폼(휴대전화를 금융서비스 전달경로로 활용)을 제공하고 은행이 고객정보와 대금결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무선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일종이나 공간적 제약과 이동성 면에서 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보다 월등하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1992년 핀란드의 Finland Nordea 은행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에 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효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9년 Nokia와 공동으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에 기반을 둔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국내의 경우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1999년 11월 농협이 국내 최초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초기에 메뉴검색방식에 의한 다단계의 복잡한 이용절차, 통신요금 부담 등으로 이용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3년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IC칩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에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894천명이다. 2004년중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186.4% 증가한 5,131만건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은행계좌번호 대신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할 수 있는 「은행공동 모바일결제시스템(UBi : Ubiquitous Banking Interface)」을 은행공동으로 구축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천건)

연말	등록고객수 <sup>1)</sup> (연말)	이용실적 (연중)	이용현황	
			각종조회	자금이체
2003	189,221	17,919	16,441 <91.8>	1,478 <8.2>
2004	893,592 (372.2)	51,312 (186.4)	41,674 <81.2>	9,638 <18.8>

주 : 1) IC칩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 기준. 이동통신사별 중복가입자 포함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마.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통합관리(account aggregation)서비스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고객의 금융계좌정보(은행, 증권, 신용카드 등)를 하나의 접점(single point of access)에서 수집하여 계좌조회, 자금이체 및 개인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등 금융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1년 4월 제일은행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이후 2004년말 현재 11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등록고객수는 128만명이며 2004년중 실이용고객수는 41만명, 이용실적은 671만건으로 나타났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이용현황		
					각종조회	자금이체	기 타
2002	13	1,000,642	133,482	934 <100.0>	911 <97.5>	22 <2.4>	1 <0.1>
2003	12	510,631 (△49.0)	312,492 (134.1)	1,704 (82.4)	1,604 <94.1>	90 <5.3>	10 <0.6>
2004	12	1,284,733 (151.6)	408,981 (30.9)	6,708 (293.7)	4,106 <61.2>	1,308 <19.5>	1,366 <20.3>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2. 증 권

### 가. 폰 트레이딩

폰 트레이딩은 전자식 전화기를 이용하여 증권의 매매, 주식시황 등의 정보획득 및 기타 증권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화를 이용한 증권 거래 시스템은 KOSCOM(주)이 운영하는 공동 ARS시스템과 증권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폰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으며 시세정보 등 정보조회, 주식매매 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중에는 주식시장 활황과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폰 트레이딩 이용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증권회사 폰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개, 천건)

연중	개별시스템	
	실시기관수	거래건수
2000	25	133,316
2001	21	71,940
2002	27	316,244 <sup>1)</sup>
2003	28	230,982
2004	29	324,436

주 : 1) LG투자증권의 개선된 조회실적 집계방식에 의해 산출된 2억 3,500만건 포함

### 나. 인터넷 트레이딩

인터넷 트레이딩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시세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매매, 청약 등을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트레이딩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는 홈트레이딩(HTS: Home Trading Service)방식과 인터넷 웹브라우저(MS 익스플로러 등)를 이용해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는 웹트레이딩

(WTS: Web Trading Service)방식이 있다.

홈트레이딩 방식은 2004년말 현재 33개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528만명,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129만명 정도이다. 2004년중 이용실적은 55억 7,066만건이며 그중 주식매매주문은 5억 2,744만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다.

홈트레이딩방식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2	30	3,436,519	1,522,171	5,073,756	4,701,039 <92.7>	3,898 <0.1>	339,502 <6.7>	29,317 <0.6>
2003	33	4,661,548 (35.6)	1,666,381 (9.5)	5,242,146 (3.3)	4,668,190 <89.1>	4,519 <0.1>	521,506 <9.9>	47,931 <0.9>
2004	33	5,283,511 (13.3)	1,289,258 (△22.6)	5,570,660 (6.3)	5,035,674 <90.4>	5,983 <0.1>	527,444 <9.5>	1,559 <0.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웹트레이딩 방식은 2004년말 현재 23개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407만명,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35만명, 이용건수는 6,359만건으로 나타났다.

웹트레이딩방식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 타
2002	28	4,041,198	1,112,037	441,703	392,896 <89.0>	406 <0.1>	48,081 <10.9>	320 <0.1>
2003	25	4,223,012 (4.5)	939,113 (△15.6)	106,334 (△75.9)	90,045 <84.7>	390 <0.4>	15,894 <14.9>	5 <0.0>
2004	23	4,069,944 (△3.6)	354,719 (△62.2)	63,590 (△40.2)	51,701 <81.3>	478 <0.8>	11,408 <17.9>	3 <0.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다. 모바일 트레이딩

모바일 트레이딩(mobile trading)은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및 PDA 등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증권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말 현재 증권거래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는 23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및 PDA를 이용한 서비스는 각각 20개 및 18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16만명, 이용실적은 1억 4,771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용단말기 보다 휴대전화, PDA를 통한 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 증권회사 모바일 트레이딩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기기종류	실시 기관수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기타			
					각종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타
2002	전용단말기	22	154,730	63,538	47,589 <74.9>	3 <0.0>	9,377 <14.8>	6,569 <10.3>
	휴대전화	16	13,918	5,880	4,209 <71.6>	0 <0.0>	1,350 <23.0>	321 <5.4>
	PDA	9	10,492	7,044	6,063 <86.1>	6 <0.1>	941 <13.3>	34 <0.5>
	계	-	179,140	76,462	57,861 <75.7>	9 <0.0>	11,668 <15.3>	6,924 <9.1>
2003	전용단말기	26	154,044 (△0.4)	57,676 (△9.2)	42,659 <74.0>	268 <0.5>	9,118 <15.8>	5,631 <9.8>
	휴대전화	19	40,726 (192.6)	20,933 (256.0)	19,118 <91.3>	1 <0.0>	1,520 <7.3>	294 <1.4>
	PDA	14	17,954 (71.1)	24,764 (251.6)	22,866 <92.3>	8 <0.0>	1,856 <7.5>	34 <0.1>
	계	-	212,724 (18.7)	103,373 (35.2)	84,643 <81.9>	277 <0.3>	12,494 <12.1>	5,959 <5.8>
2004	전용단말기	23	99,369 (△35.5)	59,030 (2.3)	47,611 <80.7>	19 <0.0>	9,041 <15.3>	2,359 <4.0>
	휴대전화	20	40,445 (△0.7)	56,276 (168.8)	55,085 <97.9>	16 <0.0>	1,175 <2.1>	-
	PDA	18	15,864 (△11.6)	32,405 (30.9)	30,853 <95.2>	9 <0.0>	1,543 <4.8>	-
	계	-	155,678 (△26.8)	147,711 (42.9)	133,549 <90.4>	44 <0.0>	11,759 <8.0>	2,359 <1.6>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3. 보 험

#### 가.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구축한 텔레마케팅시스템은 별도로 없으며 개별 보험회사가 구축한 콜센터를 중심으로 마케팅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말 현재 30개 기관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중 이용실적은 6,507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계약 및 대출 체결 건수는 333만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5.1%를 차지하였다.

#### 보험회사 텔레마케팅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연 중	합 계	조 회			체 결			상품안내	기 타 <sup>1)</sup>
		소 계	보험계약	대 출	소 계	보험계약	대 출		
2000	12,028 (126.4)	9,112 (160.6)	6,614	2,498	-	-	-	1,124 (37.4)	1,792 (79.6)
2001	20,296 (68.7)	17,274 (89.6)	14,287	2,987	-	-	-	860 (△23.5)	2,163 (20.7)
2002	54,191 (167.0)	36,154 (109.3)	19,372	16,782	2,708	1,324	1,384	5,017 (483.4)	10,313 (376.8)
2003	85,567 (57.9)	56,177 (55.4)	48,577	7,600	4,409 (62.8)	1,678	2,731	14,529 (189.6)	10,452 (1.3)
2004	65,065 (△24.0)	24,383 (△56.6)	18,992	5,391	3,331 (△24.4)	2,051	1,280	18,535 (27.6)	18,816 (80.0)

주 : 1) 일반 안내서비스, 마감후 거래 등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보험영업 특성상 보험회사들이 콜센터의 개발 및 확충에 주력함에 따라 텔레마케팅 실시기관수 및 이용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보험회사의 콜센터 구축 현황

서비스 제공 기관수(개)			근 무 인 원(명)			
고객DB 구축	고객통화 녹취	통합안내	합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리직
25	30	15	4,867	3,044	1,439	384

### 나. 인터넷보험마케팅

인터넷보험마케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마케팅,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전송,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말 현재 15개 생명보험회사 및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인터넷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912만명에 이르고 있다. 2004년중 실이용고객수는 489만명, 이용실적은 6,658만건이며 이 중 보험 및 대출 체결 건수는 169만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2.5%를 차지하였다.

### 보험회사 인터넷마케팅 이용현황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 기관수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이용실적 (연중)					
					각종조회	자금이체	보험체결	대출체결	기 타
2002	27	7,252,620	2,886,991	37,037	34,980 <94.4>	267 <0.7>	571 <1.5>	567 <1.5>	651 <1.8>
2003	28	13,535,532 (86.6)	3,534,481 (22.4)	67,963 (83.5)	64,570 <95.0>	503 <0.7>	1,165 <1.7>	804 <1.2>	921 <1.4>
2004	26	9,123,381 (△32.6)	4,894,242 (38.5)	66,579 (△2.0)	63,943 <96.1>	479 <0.7>	745 <1.1>	948 <1.4>	464 <0.7>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이용건수에 대한 비중(%)

#### 4.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계에 의한 대고객 정보망

증권회사·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의 펌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증권거래대금·예탁금·부금 등을 실시간으로 자금이체하거나 CD/ATM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고객의 증권거래대금·예탁금 등 각종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자금이체 서비스와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납, 영업자금 송금, 보험금 및 대출금 지급, 대출원리금 상환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펌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실적은 8억 740만 건, 1,698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3.5% 및 19.0% 감소하였다.

##### 비은행 금융기관의 펌뱅킹 자금이체 및 조회 실적

(단위 : 천건, 10억원)

연 도	자금이체		조회
	건수	금액	건수
2000	821,513	1,935,538	60,596
2001	1,175,577 (43.1)	1,693,966 (△12.6)	69,432 (14.6)
2002	1,042,509 (△11.3)	1,461,335 (△13.7)	87,223 (25.6)
2003	1,430,035 (37.2)	2,096,310 (43.5)	130,461 (49.6)
2004	807,404 (△43.5)	1,698,138 (△19.0)	77,668 (△40.5)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편 2004년중 자금이체실적을 내용별로 보면 일괄자금이체가 1억 8,190만 건, 96조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실시간자금이체가 5,760만건, 1,112조원, 대금수납이 5억 6,300만건, 487조원, CD/ATM을 통한 입출금은 491만건, 2.7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펌뱅킹 자금이체 내용별 이용실적

(단위 : 천건, 10억원)

연 도	구 분	대금수납	일괄 자금이체	실시각 자금이체	CD/ATM을 통한 입출금	계
2000	건 수	413,659	285,503	80,814	41,537	821,513
	금 액	99,209	917,939	902,362	18,028	1,935,538
2001	건 수	807,591	170,930	107,516	89,540	1,175,577
	금 액	297,286	359,731	996,301	40,648	1,693,966
2002	건 수	244,994	615,939	103,585	77,991	1,042,509
	금 액	98,579	430,909	915,149	16,698	1,461,335
2003	건 수	422,088	808,950	165,060	33,937	1,430,035
	금 액	138,972	376,583	1,567,961	12,794	2,096,310
2004	건 수	563,003	181,896	57,595	4,910	807,404
	금 액	487,337	95,716	1,112,394	2,691	1,698,138

한국은행

## 제 3 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정보망의 연계

199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각 분야별로 구축된 정보망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중복 투자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망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점외CD/ATM 공동망, 종합무역자동화망, SWIFT, 경찰전산망 등 외부정보망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1. 점외 CD/ATM 공동망

점외 CD/ATM공동망은 은행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도 CD/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금융(주)이 설치·운영하는 CD/ATM 네트워크를 금융정보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에 연결한 시스템으로 1993년 10월부터 가동하였다.

은행들은 CD/ATM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동 공동망을 통해 은행 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가. 참가기관

점외 CD/ATM공동망에는 2004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 나. 대상업무

점외 CD/ATM공동망은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현금인출과 잔액조회업무만 취급하였으나 1999년 1월 및 2월부터는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서비스 및 현금서비스업무가 추가되었다.

점외 CD/ATM공동망을 이용한 현금인출한도는 1회 50만원까지이며 1일 인출가능횟수는 각 참가은행별로 CD공동망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 다. 운영시간 및 수수료

2004년말 현재 예금지급 서비스는 산업, 국민, 외환, 경남, 우리,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의 경우 24시간 이용가능하며 다른 은행 거래 고객인 경우에는 CD공동망 시간(08:00~23:30) 중에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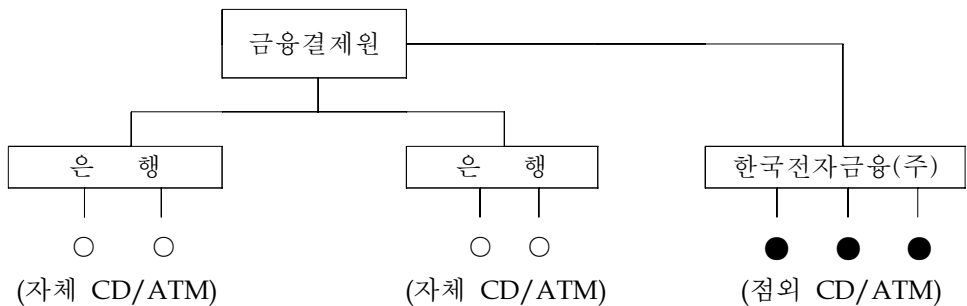
고객의 현금인출 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한 배분은 한국전자금융(주)와 개별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고객에 대한 수수료는 대체로 타행인출 수수료 수준이다.

### 라. 이용방법 및 자금결제

한국전자금융(주)이 지하철역, 백화점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한 CD/ATM에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선택하면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해당은행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전자금융(주)는 매일 다음날의 CD/ATM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 은행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결제원에 송부한다. 금융결제원은 이를 동 회사 거래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수취할 금액과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CD공동망 이용과 관련한 은행간 자금결제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한국전자금융(주)은 1개월에 한번씩 각 은행에 수수료 청구명세를 작성·송부하여 수수료를 수취한다.

네트워크 구성도



## 마. 이용실적

2004년중 점외CD/ATM공동망을 이용하고 있는 기기 1대당 일평균 이용실적은 53회 정도이며, 1회 현금인출 금액은 10만원으로 CD공동망(21만원)의 약 47.6% 수준이다. 이는 점외CD/ATM공동망의 설치지역이 고객의 내왕이 잦은 공공장소라는 특성상 주로 소액인출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점외CD/ATM공동망의 이용 실적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설치 대수	현 금 인 출			잔액조회	총이용건수
		건 수	금 액	건당이용금액		
2000	..	18,580	15,580	84천원	6,713	25,293
2001	..	22,751	19,946	88천원	8,085	30,836
2002	1,693	29,447	27,421	93천원	10,026	39,473
2003	1,761	28,694	27,914	97천원	9,332	38,026
2004	1,784	25,545	25,518	100천원	8,776	34,321

## 2. 종합무역자동화망

종합무역자동화망은 수출입업무 관련절차의 자동화 및 즉시 처리, 무역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무역업체와 은행, 보험회사, 무역관련 정부기관, 운송업체 등 무역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종합무역자동화망은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국내은행이 1992년부터 공동 개발하여 1994년 1월 가동되었다. 은행은 신용장 통지 및 개설, 수출입 승인 및 수출입관련 대금결제업무의 EDI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별은행 시스템을 금융결제원(무역망접속센터)을 통해 한국무역정보통신 정보망과 연결하였다. 이어 1995년 7월에는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추가 지정된 데이콤(DACOM) 정보망을 무역망접속센터에 연결함으로써 무역업체 및 관련기관의

업무편의가 한층 증대되었다. 2004년말 현재 종합무역자동화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은 19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이다.

한편 무역업체는 총 72개 단위업무(수출 46개, 수입 26개)를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금융공동망과 연계함으로써 대금결제 관련 비용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금융사무가 빠르게 처리되어 상품의 인도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걸쳐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2004년중 은행들의 종합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건수는 11,599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1.5% 감소하였다.

#### 은행의 종합무역자동화망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천건)

연중	2001	2002	2003	2004
이용 건수	9,928 (22.8)	10,289 (3.6)	11,779 (14.5)	11,599 (△1.5)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3. SWIF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국제금융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은행간 국제데이터정보통신망으로서 해외은행간 자금결제 및 메시지 교환을 신속·저렴·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교환 규모의 증가에 따른 메시지표준의 필요성과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무역관련 업무, 은행간 자금이체, 외환거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1992년 3월 동 시스템에 가입하였다.

SWIFT를 통한 통신메시지 종류로는 서비스메시지, 시스템메시지 및 은행간 메시지가 있는데 2004년중 처리실적은 18,281천건이다.

## SWIFT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2001	2002	2003	2004
이용실적	14,323 (27.8)	15,918 (11.1)	17,074 (7.3)	18,281 (7.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4. 경찰전산망

현금카드, 통장 등의 도난·분실이 금융관련 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1991년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구축방안’을 의결한 뒤 CD공동망과 경찰전산망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1993년 2월 CD공동망과 경찰전산망 접속을 완료함에 따라 미리 신고된 은행계좌의 부정사용자가 CD/ATM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사고계좌 번호, 인출장소, 시간 등 관련정보가 즉시 경찰관서에 온라인으로 통지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있다.

동 시스템의 가동시간은 CD공동망과 동일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2004년중에 CD공동망을 통해 관련정보가 경찰전산망에 통지된 건수는 372건이다.

### CD공동망의 경찰전산망 통지실적

(단위 : 건)

연 중	2001	2002	2003	2004
이용건수	411 (19.1)	866 (110.7)	581 (△32.9)	372 (△36.0)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제 4 장 주요 금융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

#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제 4 장 주요 금융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

### 제 1 절 금융IC카드

#### 1. 배경

2002년말에서 2003년초에 걸쳐 위조 磁氣띠(M/S; Magnetic Stripe) 현금카드를 이용한 불법예금인출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磁氣띠 현금카드의 경우 고객의 계좌번호, 유효기간 등 고객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카드정보의 해독 및 복제장치에 의한 磁氣띠 현금카드의 위조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들은 현금카드를 磁氣띠 방식에서 IC칩 방식으로 전환기로 하였다. IC칩은 계좌번호, 유효기간 등 고객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IC칩의 정보를 해독하거나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C칩은 M/S에 비하여 정보를 실을 수 있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전자화폐<sup>1)</sup>,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서비스와 의료카드, 신분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M/S카드와 IC카드 비교

구분	M/S 카드	IC 카드
기능	현금, 신용, 직불카드	현금카드,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의료카드, 신분증 등 다양한 기능 탑재 가능
데이터 암호화	불가능	가능
용량	226 byte	8~64K byte

1) 현재 IC카드형 전자화폐인 K-Cash, VisaCash, MYbi, A-CASH 등 4종류 모두 탑재가 가능하다

## 2. 추진경과

磁氣띠 현금카드의 금융IC카드 전환사업은 CD/ATM의 공동이용, 개발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이하 '은행소위원회'라 칭함)에서 2003년 4월에 은행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2003년 11월 은행소위원회는 IC카드에 실을 상품의 규격을 정한 「금융IC카드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융IC카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2004년 1~3월중에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들이 본점 영업부와 여의도 소재 점포에서 금융IC카드 발급 및 시스템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 실시중 고객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PIN<sup>2)</sup>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은행들이 금융IC카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면서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4년 6월 은행소위원회에서는 금융IC카드에 하나의 계좌정보만 실린 경우에는 PIN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여러 개의 계좌정보가 실린 경우에는 PIN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범사업도 2004년 7~9월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 실시후인 2004년 10월부터 전국의 점포에서 금융IC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여 2004년 12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 중 17개 은행에서 IC현금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2005년 2월 가동)으로 IC현금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던 외환은행도 200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2004년 12월말 현재 발급된 금융IC카드수는 49만장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전자통장, 신분증, 체크카드 등의 기능이 부가된 카드가 47만장으로 총 발급장수의 95.4%나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카드기능만 있는 카드는 2만장에 불과하였다.

---

2)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서 IC칩에 내장되는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IC현금카드 발급현황  
(2004년 12월말 현재)

(단위 : 장)

전체 IC카드 발급장수	현금 카드 <sup>1)</sup>	현금카드 + 기타기능 <sup>2)</sup>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전자통장	기타 <sup>3)</sup>	
491,166 (100.0)	22,829 (4.6)	468,337 (95.4)	95,454 <19.4>	382,903 <78.0>	249,251 <50.7>	138,376 <28.2>

주 : 1) IC카드에 현금카드기능만 탑재된 경우

2) IC카드에 부가기능이 탑재된 경우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4) ( )내는 IC카드 발급 구성비(%), < >내는 전체 IC카드 발급장수에 대한  
항목별 비중(%)

# 한국은행

## 제 2 절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1. 배 경

국내외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의 결제는 환거래은행간 결제시간대 차이로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등으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sup>3)</sup>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원금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PvP : Payment-versus-Payment)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BIS의 G-10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외환결제 리스크 감축방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 9월 BIS의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감독지침」을 통하여 외환결제리스크 노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간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의 외환동시결제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였다.

CLS은행은 전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미국 뉴욕 소재 외환결제전문 민간은행이다.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2002년 9월 가동되었으며 2005년 3월말 현재 19개국 69개 금융기관이 CLS그룹지주회사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58개 기관이 CLS은행 결제회원은행으로 외환결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거래액의 약 80%를 원/달러거래가 차지하고 있는데다 실제 결제는 결제시차가 상대적으로 큰 미국소재 금융기관과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였다.

---

3) 1974년 6월 26일 독일 헤르스타트(Herstatt)은행이 파산할 당시 이 은행과 거래를 한 미국소재 은행들은 독일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Herstatt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고 동 은행의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미국 달러화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산결정이 난 시각에 뉴욕에서 미 달러화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거래은행들이 미 달러화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던 데서 Herstatt risk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추진경과

2002년 들어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참가은행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재정부,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6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에서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거래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국내 CLS공동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CLS은행시스템, 한은금융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 12월 6일 가동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중 CLS은행에 대한 한은금융망 가입 승인, 원화의 CLS은행 결제통화 지정,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국은행의 관련규정 개정 등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CLS그룹 지주회사 앞 출자(2003. 9)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결제회원은행(settlement member) 자격을 취득(2004. 11)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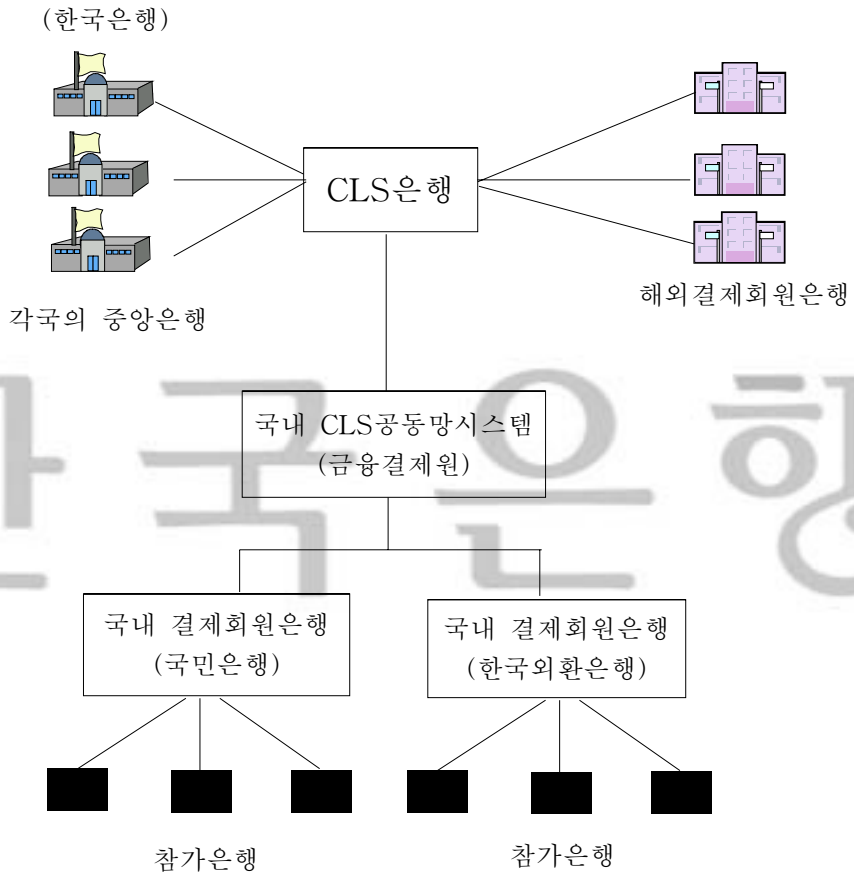
## 3. 주요내용

국내 결제회원은행(국민, 외환은행)은 CLS은행에 원화를 포함하는 복수통화 결제계정을 보유하고 자기거래를 포함한 고객은행의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여타 CLS공동망 참가은행(제3자 고객은행, third party)은 국내 결제회원은행을 통해 CLS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결제회원은행과 제3자 고객은행을 연결하는 CLS공동망의 시스템 관리는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한다.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서 외환거래는 최종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므로 한국은행은 여타 CLS결제통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한은금융망을 CLS은행 결제시스템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CLS은행은 CLS결제통화간 거래중 원화분에 대한 결제

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은행에 CLS은행의 원화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한은 금융망에 접속하고 있다.

CLS공동망 시스템 구성도



## 4. 기대효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도입은 국가간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의 감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가. 필요 결제유동성 절감

CLS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는 동일한 결제일의 모든 결제금액을 통화별로 차액정산한 금액만을 수수하기 때문에 환거래은행을 통한 거래 건별 결제방식에 비하여 결제소요 자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5월중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동시결제에 따른 필요 유동성 절감효과는 89.7%이다.

### 나. 외환시장 선진화 및 원화의 대외신인도 제고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직접 참가하는 CLS은행 결제시스템을 통한 원화/외화의 동시결제는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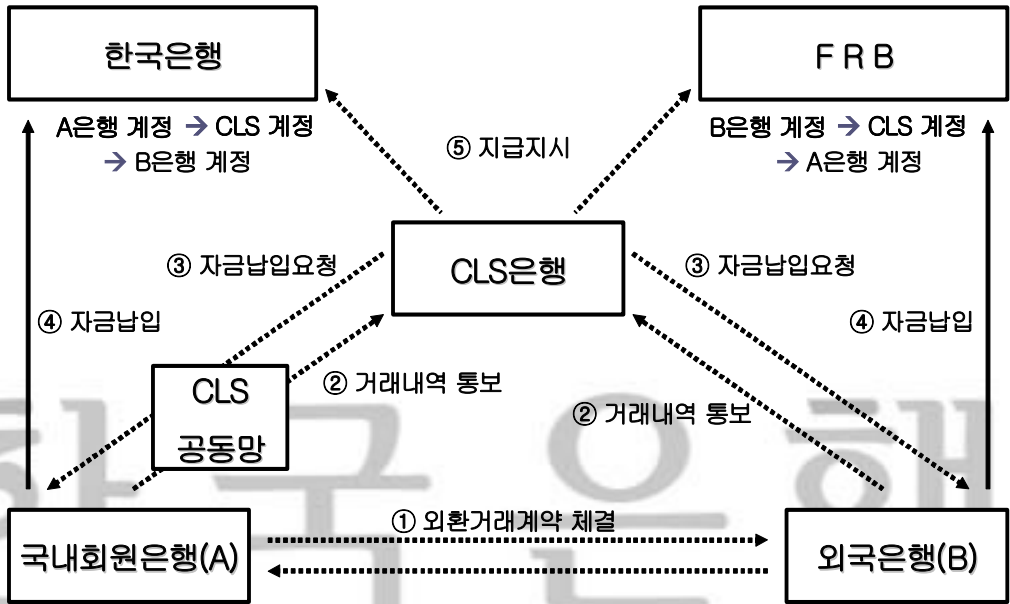
특히 CLS은행은 외환매매거래에 대한 동시결제 외에 파생상품 등 관련 외환거래의 결제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CLS결제시스템의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다. 외환결제업무 간소화

CLS은행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업무는 전 결제과정이 전산으로 일관처리(straight-through processing)되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외환결제 업무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수작업과 관련한 착오예방 등 결제업무의 운영리스크도 크게 감소된다. 이에 따라 2007년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는 신 BIS의 자기자본

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sup>4)</sup>에 의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기자본 추가 적립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원/달러거래의 CLS결제과정(예시)



- ① 국내 결제회원은행 A와 외국 결제회원은행 B(달러매도, 원화매입)의 거래계약 체결
- ② 거래내역의 CLS은행앞 전송
- ③ CLS은행은 다자간 차액산정후 은행 A 및 B앞 자금납입(pay-in) 요청
- ④ 은행 A 및 B는 각각 한국은행 및 미연준앞 매도통화 자금납입
- ⑤ CLS은행은 결제완료후 한국은행 및 미연준에 은행 A 및 B앞 매수 통화 지급(pay-out) 요청

4) 현행 협약에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담당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국내은행들의 경우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이용실적

2005년 5월말 현재 19개 국내은행 중 한국씨티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이 CLS공동망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13개 은행이 외환동시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은지점 중에서는 HSBC 및 BOA 서울지점이 외환동시결제에 참가하고 있다.

2005년 5월중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된 외환거래 금액 및 건수는 560억달러 14,514건으로 2004.12월중 대비 각각 355%, 445%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외환동시결제 거래금액 및 건수

(억달러, 건, %)

구분	거래금액(억달러)			거래건수(건)		
	2004.12월중	2005.5월중	증감(%)	2004.12월중	2005.5월중	증감(%)
국내은행	104 (84.5)	495 (88.5)	376.0	2,057 (77.3)	12,846 (88.5)	524.5
외은지점	19 (15.5)	65 (11.5)	242.1	605 (22.7)	1,668 (11.5)	175.7
계	123 (100.0)	560 (100.0)	355.3	2,662 (100.0)	14,514 (100.0)	445.2

1) ( ) 내는 비중(%)

2005년 5월중 외환동시결제에 따른 유동성절감효과를 보면 전체통화 매도분에 대해서는 89.7%, 원화매도분에 대해서는 90.3% 수준으로 나타나 2004년 12월중 대비 각각 22.6%p, 23.9%p 상승하였다.

### 결제유동성 절감효과

(억달러, 억원, %, %p)

구분	전체통화(억달러)			원 화(10억원)		
	2004.12월중	2005.5월중	증감(% , %p)	2004.12월중	2005.5월중	증감(% , %p)
매도거래금액(A)	123.4	559.9	353.7%	3,895	26,212	573.0%
Pay-In 금액(B)	40.6	57.9	42.6%	1,309	2,536	93.7%
유동성 절감효과 [1-(B/A)]	67.1%	89.7%	22.6%p	66.4%	90.3%	23.9%p

앞으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량이 많은 주요 외은지점의 외환동시결제 참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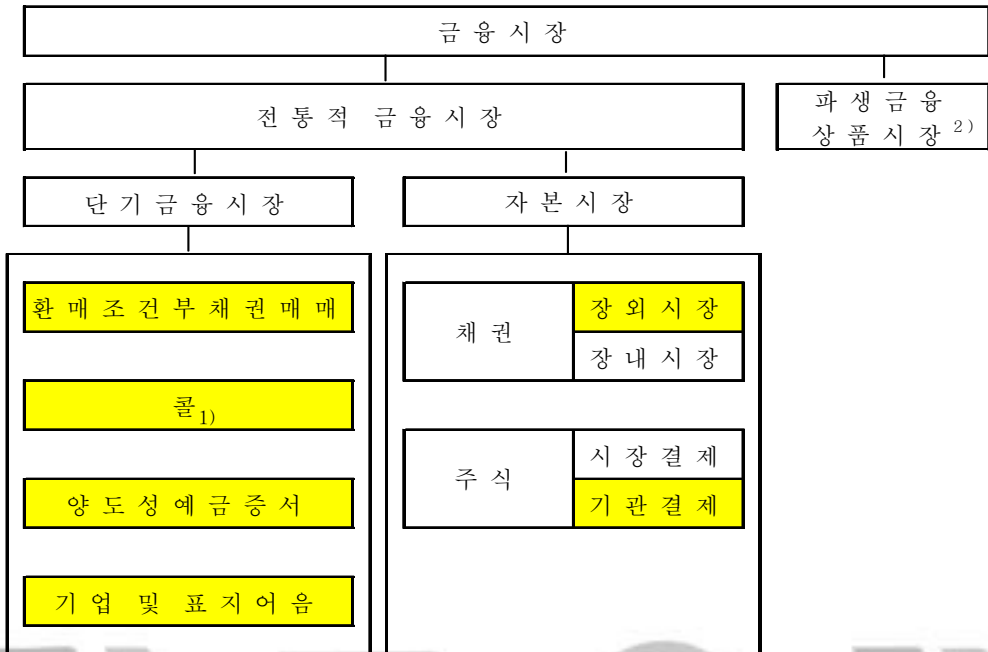
### 제 3 절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자금이체시스템과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계좌대체(book-entry)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래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손실위험(principal risk)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증권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제적으로도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는 한은금융망(BOK-Wire)의 자금이체시스템과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대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증권거래에 있어 증권실물과 증권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제도로서 1999년 11월 장외 채권거래에 대해 우선 도입하였고 2001년 10월 적용대상을 주식 기관결제(증권회사와 그 고객인 기관투자자간의 주식거래)로 확대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담보부 콜거래를 활성화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하여 콜자금의 공급 및 담보증권의 제공, 콜자금 및 담보증권의 회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한 담보부 콜거래를 추가하였으며 2004년 4월에는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매거래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거래로 증권·대금동시결제 적용대상거래를 확대하였다.

## 금융시장별 증권·대금동시결제 적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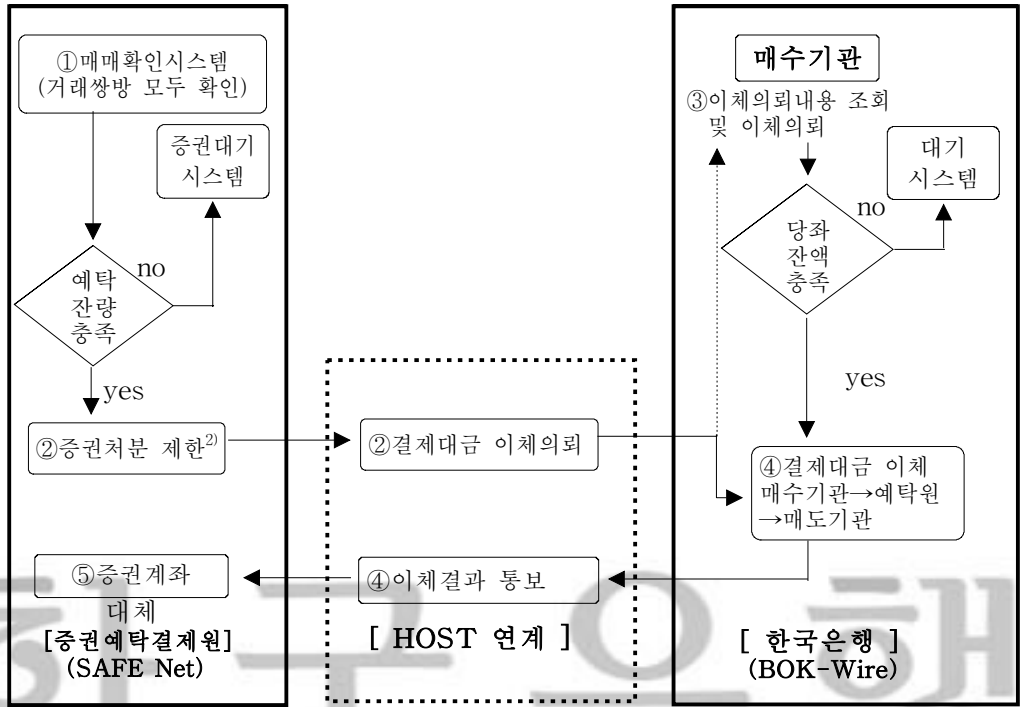


주: 1)  는 증권·대금동시결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

2) 증권·대금동시결제 적용대상이 아닌 시장

또한 한국은행은 그동안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 발행되는 국공채의 매입자에 관한 자료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제공함에 있어 증권예탁결제원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통해 한국은행에 조회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부터 양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전문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로써 한국은행에서 국공채가 발행된 후 실소유자의 명의를 증권예탁결제원<sup>1)</sup> 예탁자계좌부에 기록되기까지의 시차가 단축되어 발행 당일에 거래되는 국공채도 동시결제될 수 있게 되었다.

증권·대금 동시결제 처리절차<sup>1)</sup> 흐름도



- 주 : 1) 매수기관 당좌계좌에 결제자금이 충분한 경우 ③~⑤절차가 동시에 실행됨  
 2) 동시결제 이행의 보장을 위하여 채권의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다시 처리하지 못하도록 예탁자계좌부상 처분을 제한

2004년중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총결제건수 및 금액은 41만건, 1,446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1.8%, 91.7%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4년 4월부터 증권예탁결제원의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의 구축에 맞추어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거래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실시함에 따라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의 이용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다.

증권·대금동시결제 추이

(단위 : 건, 십억원)

	결제건수		결제금액	
	총건수	일평균건수	총금액	일평균금액
1999	31	0.6	143	2.8
2000	7,409	25.1	60,778	206.0
2001	31,015 (318.6)	104.1 (314.7)	250,463 (312.1)	840.5 (308.0)
2002	52,008 (67.7)	189.1 (81.7)	343,391 (37.1)	1,270.5 (51.2)
2003	141,792 (172.6)	571.7 (202.3)	754,336 (119.7)	3,041.7 (139.4)
2004	413,736 (191.8)	1,654.9 (189.5)	1,445,786 (91.7)	5,783.1 (90.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 제 4 절 전자정보교환시스템(Truncation)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는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장표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납장표 처리업무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는 이러한 장표처리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 및 장표의 물리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과다한 인적·물적 비용 및 분실·도난 등의 사고위험 증대, 빈번한 오류발생 및 업무종료 지연 등 창구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1996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금융기관 수납장표 처리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보교환제도의 도입을 공동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수납기관 및 한국전산원 등을 중심으로 실무전담반이 구성되어 1997년 5월 「OCR지로용지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1997년 7월에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2000년 5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앞수표의 정보교환이 실시되었고 동년 7월에는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지로장표가, 11월에는 한국통신 발행 지로장표가 추가되었으며 2002년 9월부터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 업무처리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기관의 각 수납점에서 자동인식기 등의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수납내역을 전산데이터로 전환한 후 장표실물은 자체보관하고 전환된 전산데이터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본부의 주컴퓨터로 전송한다. 본부에서는 전송받은 전산데이터를 다시 중계센터로 전송하고 중계센터는 각 금융기관의 전산데이터를 취합, 분류한 후 수납기관 앞으로 전송하며 수납기관은 전송받은 전산데이터로 수납대사 업무를 처리하고 수납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어음교환 업무의 경우 종전에는 각 금융기관 직원들이 어음·수표 실물을 가지고 금융결제원에 모여 교환하였으나 전자정보교환제도 도입 이후 교환에 회부될 어음·수표의 전산데이터만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교환업무가 처리된다.

종전에는 고객이 자기앞수표를 거래은행에 입금하면 어음교환과정을 거쳐 다음 영업일 은행간 차액결제가 종료된 후 14:50부터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기앞수표의 현금화가 이루어져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고객이 타행발행 정액권(10, 30, 50,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할 경우 수취은행이 발행은행과 실시간 정보교환을 거쳐 그 자리에서 현금화해주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sup>5)</sup>

2004년중 전자정보교환처리된 수납장표의 비중(건수기준)을 살펴 보면 어음·수표는 97.2%, 지로장표는 14.2%로서 전년에 비해 각각 0.5%p, 2.2%p 상승하였다.

####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이용실적

(단위 : 백만건)

연중	어음·수표			지로장표 <sup>1)</sup>		
	전자정보 교환처리(A)	전체(B)	비중 (A/B)	전자정보교 환처리(C)	전체(D)	비중 (C/D)
2002년	692.8	1,098.5	63.1	42.1	491.3	8.6
2003년	944.0 (36.3)	976.8 (△11.1)	96.7	56.7 (34.7)	472.3 (△3.9)	12.0
2004년	847.6 (△10.2)	872.3 (△10.7)	97.2	61.5 (8.5)	432.4 (△8.4)	14.2

주 : 1) 지로일반이체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5)

(단위 : 건)

	2004.8	2004.9	2004.10	2004.11	2004.12	2005.1	2005.2	2005.3
10만원권	115,072	142,578	151,396	151,921	163,002	151,124	186,247	210,552
30만원권 <sup>1)</sup>	140	186	164	147	183	161	148	147
50만원권	3,889	5,298	3,906	5,622	5,939	5,166	5,506	6,446
100만원권	57,027	79,306	73,711	84,949	91,140	76,653	84,059	108,806
합계	176,128 (705)	227,368 (963)	229,177 (909)	242,639 (1,030)	260,264 (1,105)	233,104 (944)	275,960 (1,055)	325,951 (1,331)

주 : 1) 2000년 12월부터 인쇄를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기존에 인쇄된 재고수표가 유통중 ( ) 내는 교환금액(억원)

앞으로 수납장표정보화는 지로장표의 경우 기존 표준OCR외에 일반OCR, MICR, A장표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음·수표의 경우 비정액권 자기앞 수표와 인감대조 확인이 필수적인 당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의 정보교환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은행

## 제 5 절 기타 금융정보화 사업<sup>6)</sup>

### 1. 전자화폐

#### 가. 개요

전자화폐는 IC카드, PC 등의 매체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화폐가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며 일종의 선불카드이다. 지난 20~30여년동안 교통카드, 전화카드 등과 같은 선불카드(prepaid card)를 이용하는 거래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는 시각에서 보면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화카드, 교통카드 등은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범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전자화폐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어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화폐는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된다.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에 IC칩을 내장하여 동 칩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단말기, PC용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IC카드형 전자화폐는 K-CASH, VisaCash, MYbi, A-CASH 등 4종류<sup>7)</sup>가 있다.

---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현황」 참조

7) 2002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전자화폐 시스템 운영자인 몬텍스코리아가 2005년 3월 이후 영업을 중지함에 따라 2005년 4월 이후 Mondex 전자화폐의 사용은 중단

## IC카드형 전자화폐별 발급기관

(2005년 6월 현재)

전자화폐	발급기관	최초발급
K-CASH	조흥·우리·제일·국민·외환·신한·한국씨티·하나·기업·농협·대구·삼성카드(12개기관)	2000. 7
VisaCash	하나·우리·국민·외환·한국씨티·삼성카드·LG카드(7개기관)	2001. 5
MYbi	부산·경남·농협·국민·광주·삼성카드·LG카드(7개기관)	2000. 9
A-CASH	삼성카드·LG카드(2개기관)	2000. 12

네트워크형은 공중망의 가상계좌나 공중망과 연결된 사용자의 PC,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설비에 전자기호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실적은 미미하다.

### 나. 전자화폐 발급 및 이용현황

#### (1) 발급현황

2004년 12월말 현재 5개 전자화폐의 전체 발급장수는 613만장로서 2003년 12월말(501만장)에 비해 22.4% 증가하고 발급잔액은 95.5억원으로 2003년 12월말(81.7억원)에 비해 16.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화폐의 발급장수 및 발급잔액이 증가한 것은 대중교통분야에서 전자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부산, 대전, 광주, 경남 지역 등에서의 발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일부 대학의 학생증에 전자화폐를 탑재하여 발급하는 등 신규시장 개척노력에 주로 기인하였다.

전자화폐 발급현황  
(월말 기준)

(금액 : 천장, 백만원)

	2003년 12월말	2004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발급장수	5,008 (6.3) <40.3>	5,338 (6.6) <41.1>	5,676 (6.3) <36.6>	5,941 (4.7) <26.1>	6,129 (3.2) <22.4>
발급잔액	8,172 (33.7) <16.9>	9,303 (13.8) <120.2>	8,947 (△3.8) <17.1>	9,545 (6.7) <56.1>	9,554 (0.1) <16.9>

주 : ( )내는 전분기말 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 동월말 대비 증감률(%)

## (2) 이용현황

2004년 12월중 5개 전자화폐의 전체 이용건수는 1,334만건(일평균 43만건)으로서 전년 12월중(1,622만건)에 비해 17.7% 감소하고 이용금액은 103.3억원(일평균 3.3억원)으로서 전년 12월중(115.6억원)에 비해 10.6%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화폐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은 대학, 기업 등의 신분증에의 전자화폐 탑재 등 신규시장 개척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대중교통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불교통카드겸용 신용카드로와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전자화폐 이용현황  
(월중 이용실적 기준)

(금액 : 천건, 백만원)

	2003년 12월중	2004년			
		3월중	6월중	9월중	12월중
이용건수	16,216 (11.5) <31.2>	17,136 (5.7) <15.9>	14,591 (△14.9) <△3.5>	13,541 (△7.2) <△6.9>	13,341 (△1.5) <△17.7>
이용금액	11,558 (10.1) <51.5>	12,207 (5.6) <17.0>	10,452 (△14.4) <△3.9>	10,327 (△1.2) <△1.6>	10,328 (0.01) <△10.6>

주 : ( )내는 전분기말 대비 증감률(%), < >내는 전년 동월말 대비 증감률(%)

#### 다. 한국형 전자화폐 K-Cash

##### (1) 개발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은행(1994.3)과 동남은행(1995.9)에서 전자화폐와 유사한 선불형 IC카드를 발행하였으나 개별은행 차원에서 추진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 확대가 어려워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1996년 1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에서는 중복투자방지,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하였다.

그후 1997년 12월에는 금융IC카드의 사양 및 IC칩의 운영체제인 COS(Chip Operating System)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998년 11월에는 정부의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어 암호알고리즘(SEED) 및 키관리 적용방안을 확정하였다.

2000년 7월에는 서울 역삼동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1년 1월부터 춘천, 수원, 원주, 대구, 제주(서귀포시) 등으로 사용지역을 확대하였다.

## (2) 이용현황

K-Cash는 대중교통분야(김해, 춘천, 서귀포), 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 숙명여대, 국민대 등)내 상점, 기업의 구내(일부은행 및 정부기관)식당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K-Cash 이용자는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기명의로 예금계좌와 연결된 IC카드를 발급받아 은행창구, CD/ATM, 인터넷 등을 통해 예금잔액을 대가로 50만원 이내에서 충전할 수 있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K-Cash간의 가치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년 12월말 현재 발급현황을 보면 발급장수가 108만매, 발급잔액이 8.0억원으로 2003년 12월말 대비 각각 73.3% 및 23.0% 증가하였으며 2004년 12월중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건수가 61만건, 이용금액이 4.7억원으로서 전년 12월중 대비 각각 24.7% 및 29.3%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발급 및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은 우리은행의 K-Cash탑재 학생증 발급 및 이용이 큰 폭 증가한데다 김해지역 대중교통분야에 사용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하였다.

## 2.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간 상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은 어음과 당좌수표로서 전체 기업간 결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은 연쇄부도, 남발 등 그 자체에 역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형태로 발행되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방식의 상거래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일부 온라인 결제수단의 경우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금융공동망 기반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0년 10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는 참여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01년 2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실무작업반과의 협의를 거쳐 각 지급결제수단별 업무처리절차, 주요 전문내용 및 전자외상매출채권 계정처리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운영규약 및 약관 제정 등을 거쳐 2002년 3월 전자외상매출채권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현재 기업간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구매기업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동 채권은 은행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무보증 채권으로 구분되며 보증채권

에 대해서는 매매보호(escrow)<sup>8)</sup>서비스가 가능하다.

2002년 9월에는 공공기관의 조달업무에 수반된 대금결제를 실시간 계좌이체방식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연결시켰다.

2004년말 현재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는 15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중 이용실적을 살펴 보면 전자채권 발행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57.5%, 52.7% 증가하였다.

###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실적

(개, 건, 억원, %)

연중	참가은행수 <sup>1)</sup>	전자채권발행 건수	전자채권발행 금액
2002년	8	9,774	4,431
2003년	12 (50.0)	36,229 (270.7)	18,937 (327.4)
2004년	15 (25.0)	57,069 (57.5)	28,917 (52.7)

주 : 1) 연말기준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편 e-Marketplace들이 다수 은행들과 개별 접속해야 하는데 따른 비효율성 및 업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5개의 e-Marketplace를 「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 연결하였다. 당시에는 5개 e-Marketplace가 6개 은행과 공동접속하였으나 2004년중 5개 은행 및 1개 e-Marketplace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2004년말 현재 11개 은행 및 6개 e-Marketplace가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

### 3. 전자고지 및 납부(EBPP)시스템

「전자고지 및 납부」(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8) 물품의 인도전에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대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이 판매기업 앞으로 은행보증채권의 지급위탁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제대행서비스이다.

는 실물장표의 발행·우송과 은행창구 납부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고지·납부방식을 인터넷으로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로서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함께 1990년대 말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전자금융서비스 중 하나이다. EBPP서비스 이용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수납기관(또는 제3자 대행기관)은 각종 세금, 공과금 및 상거래대금 등의 청구내역을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납부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정보입력 등 전자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EBPP를 이용함으로써 수납기관은 실물고지서의 발행과 우송 등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접점이나 고객관계관리(e-CRM)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EBPP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납부자는 금융기관 창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도 창구수납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2000년 7월 EBPP관련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은행공동의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금융결제원에 위탁하였다.

금융결제원은 동 시스템 구축시 인터넷지로와 각 행의 인터넷뱅킹 및 수납기관의 웹사이트를 상호 연결하여 체세공과금 등의 납부업무를 다양한 접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창구나 공공기관 및 인구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무인수납전용기기를 설치하여 장표 형태로 발부된 지로, 공과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였다.

은행권의 EBPP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용대상장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국민연금, 2002년 국민건강보험료, 한국통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HTS: Home Tax Service)시스템 및 재정정보시스템과 EBPP시스템을 각각 연계하여 국세와 각종 기금 등을 즉시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전자납부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계속 확대되어 2004년말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등 169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가 전자납부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세금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에 관한 법적 보완(국세기본법령, 국고금관리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주로 실물장표 발급이나 납부자 직접조회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고지부분도 e-Mail 등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BPP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용대상장표 확대에 따라 2004년중 인터넷지로 이용실적은 1,548만건으로 2003년의 774만건에 비해 100%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편의와 금융기관의 창구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참가기관(수납기관) 및 적용대상 제세공과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EBPP의 결제수단을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전자화폐,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 4.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제도란 수출기업(내국신용장 개설기업)에 물품을 판매한 기업(내국수출기업)이 물품판매대금을 더욱 쉽게 추심할 수 있도록 내국수출기업이 판매대금을 추심할 때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환어음,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추심관련문서의 제출방식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물품을 판매한 내국수출기업이 판매대금을 추심하려면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어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되었고 특히 내국신용장 참가은행간 어음교환 관할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판매대금 회수기간이 1주일까지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 활성화 도모 및 물품대금 회수 업무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러한 불편의 내국신용장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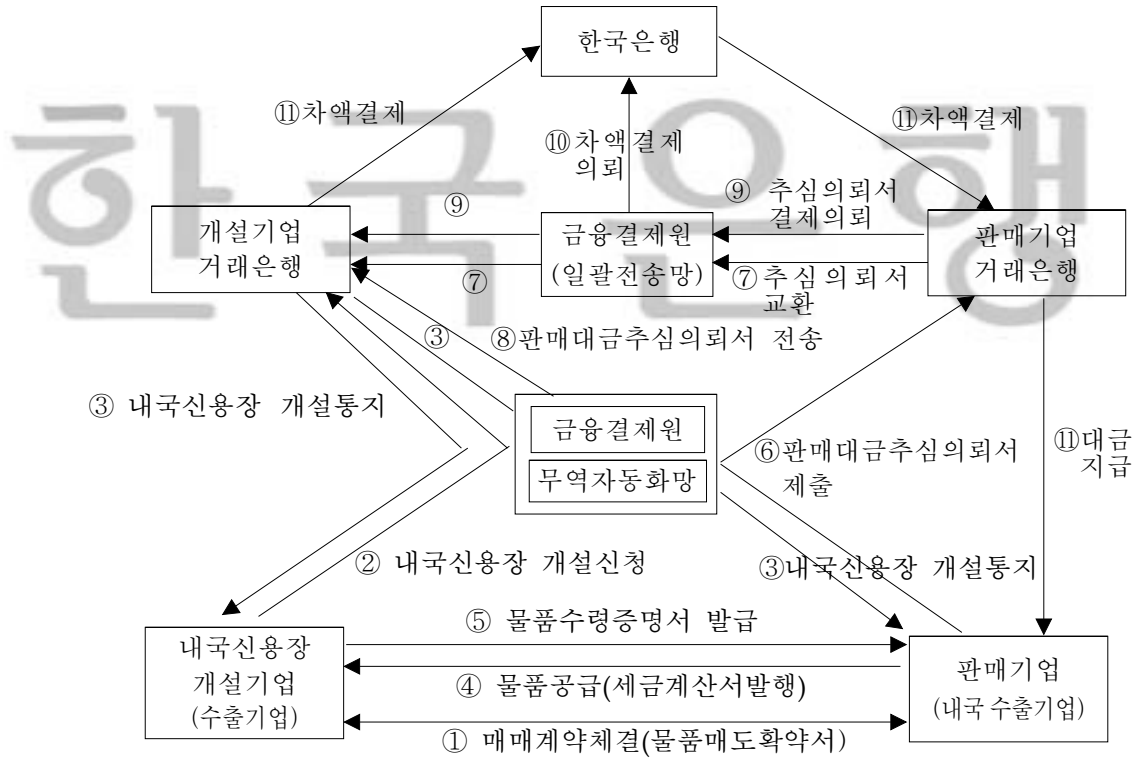
이듬해 2002년 2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및 KT-NET 등은 내국신용장관련 전자문서교환 활성화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2003년 7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취급세칙」 및 「동 절차」를 개정하여 환어음 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전송되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해서도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는 2004년 4월 은행 공동의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금융

결제원에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였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내국신용장어음 교환규약 개정 등을 거쳐 2005년 5월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였다.

동 시스템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교환 및 결제시스템」과 「내국신용장 잔액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일괄전송망시스템 및 무역자동화망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후자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내국신용장 개설정보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확충하여 EDI방식 내국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등록 및 취소업무를 수행한다.

EDI방식 내국신용장 업무처리 흐름도



제 5 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과제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제 5 장 금융정보화관련 주요과제

### 제 1 절 금융서비스제공 채널의 안전성 제고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전자금융 관련 사고의 예방 등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1997년 2월에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어 2001년 12월에는 인터넷뱅킹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기준에 ‘네트워크 정보보안기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운영기준’ 항목에 추가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 금융 및 지급결제업무의 전산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재해나 전산장애로 인해 주요 업무 또는 전체 업무가 중단될 위험도 커졌다. 특히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거나 장애 발생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업무의 연속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개별 금융기관 전산망 및 금융공동망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반 리스크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안 및 안전대책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는 상대방의 신원 및 거래의사의 진정성과 전자문서의 위·변조여부 등의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국내 상거래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전자상거래시 당사자간 신원 및 거래 신뢰성 확인을 위해 주요국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국제공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중심의 국제기업간 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1.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 기준

### 가. 주요 내용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은 금융거래정보의 안전관리, 전산망자원 및 전산요원의 효율적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향상,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 강화 등 금융정보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설비기준·시설기준·운영기준·네트워크 정보보안기준 등 4개 세부 기준을 정하고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참여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권장사항은 각 참여기관의 판단하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은행은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권소위원회와 보험소위원회에서 참여기관의 특성에 맞게 동 기준을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나. 최근 기준 개정내용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2005년 2월 최근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급격한 확산, MS카드의 IC카드로의 전환, 금융기관 전산업무의 outsourcing 확대 등 급변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망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

재해나 전산장애 등에 의해 금융정보망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지속계획을 기준에 반영하여 「운영기준」 부문에 업무지속계획 항목을 신설하였다. 즉 위험요소 발생 가능성 및 동 위험요소 발생이 금융기관과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업무별 중요도와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재해 및 장애 발생시 금융기관의 전체 및 개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해 및 장애 발생시 우선처리 업무 순위를 결정하고 인력·기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참여기관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여건 등을 반영하여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외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시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및 동 기관과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방안 및 외부위탁에 따른 리스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기관 위탁에 대한 운영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밖에 네트워크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확립, 전산실 출입허가장치에 IC카드 인식시스템 및 생체인식시스템 추가 등 최근의 전자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

## 다. 이행현황

2003년 7월중 은행소위원회가 참여은행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행대상 172개 항목(의무사항 141개 항목, 권장사항 31개 항목)중 전 은행이 평균 168개 항목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비율은 97.7%로서 1999년(93.7%) 및 2001년(97.4%)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점검결과를 기준별로 보면 설비·운영·기술기준은 모두 98%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반면 네트워크 정보보안기준은 기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시스템 미비, 비밀번호 및 사용자번호 등 중요정보의 공중망을 통한 전송시 암호화 미흡 등으로 다소 부진한 94.6%의 이행비율을 보였다.

한편 은행소위원회는 2005년 7월중에 개정된 안전대책기준의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의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이행현황(2003년 은행 평균)

구분	의무사항[141] (A)	권장사항[31] (B)	합 계[172] (A+B)
합계	138.6( 98.3)	29.4(94.9)	168.0(97.7)
설비기준[46]	45.6( 99.2)	17.1(95.0)	62.7(98.0)
운영기준[44]	43.8( 99.5)	1.9(94.7)	45.7(99.3)
기술기준[16]	16.0(100.0)	7.6(95.4)	23.6(98.5)
네트워크정보 보안기준[35]	33.2( 94.7)	2.8(93.0)	35.9(94.6)

주 : [ ]내는 총항목수, ( )내는 이행 비율(이행항목수/총항목수, %)

## 업무지속계획(BCP)의 주요 내용 및 현황

### 1. 업무지속계획의 의의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은 일반적으로 기업 등의 조직(business entity)이 재해나 전산장애 등에 의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단된 경우에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응계획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전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재해나 전산장애가 업무전반으로 파급되어 주요 또는 전체 업무가 중단될 위험도 크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단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산, 인력, 설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소요자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인 BCP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재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에 그치는 전산시스템 재해복구계획(DRP : Disaster Recovery Plan)만 수립·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업무지속계획과 재해복구계획의 주요 차이점

구분	재해복구계획(DRP)	업무지속계획(BCP)
개념	업무의 중단을 전제로 시설·장비의 신속한 복구에 중점	재해 또는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비
계획상 구체적 조치내용	업무중단시 대체수단의 조달·활용·처리방법 등 복구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규정한 임시적 조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장애·재해 예방 및 사후 업무지속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일상적 조치
계획의 포괄범위	주로 전산설비의 손실 또는 작동불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치중	전산설비는 물론 인력운용 등 비전산부문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
계획의 검증·갱신	계획의 실효성(예 : 수작업체제 전환)을 연 1~2회 정도 시범적으로 점검해 보는 수준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계획을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갱신

업무지속계획은 모든 조직에 필요한 계획이지만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로서 경제혼란의 방지 등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도 주요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우리나라 은행권의 BCP 수립 현황

한국은행은 2004년 12월에 기존의 「한은금융망 비상계획」을 전면 개편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한은금융망 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또는 재해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종합적인 비상계획이다. 동 계획에서는 한은금융망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을 기술적 장애,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각각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한은금융망 업무와 관련된 비상상황을 7단계로 구분하여 여러 형태의 전산장애 상황 및 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및 복구 복원 처리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하였다. 특히 본점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제1, 제2의 대체근무장소를 선정하였다.

2005년 들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비상상황별 참가기관 행동지침을 통보하여 자체 비상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 중에서는 제일은행이 2004년말 1단계(계정계, 정보계, 인터넷뱅킹, 외환시스템 등 대상) BCP 수립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유가증권관리시스템, 신용위험관리시스템 등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있으며 농협, 우리은행은 외부 컨설팅을 토대로 BCP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개별기관의 업무지속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 가. 공인인증기관 현황

전자서명은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변조 및 전자거래의否認을 방지(종이문서의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 공인인증은 거래당사자가 공인인증기관에 미리 등록한 전자서명을 인증(종이문서의 인감증명서에 해당)해 주는 제도이다<sup>9)</sup>.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인증체계는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 공인인증기관(CA),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 RA)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기관을 관리한다. 가입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증기관은 2004년말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이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사용자에게 직접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은행 및 증권회사 등 등록기관을 통해 교부한다.

### 나. 공인인증서 이용현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각종 공과금의 납부, 인터넷트레이딩을 통한 증권거래, 인터넷쇼핑몰 거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 9)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제도는 1999년 7월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및 전자서명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의 비교

구 분	기존 상거래시	전자상거래시
사용수단/형태	인감도장/인감날인	공개키/전자서명
증명수단	인감증명서	인증서
발급기관	관공서	인증기관
증명절차	날인된 인감을 인감증명서와 육안으로 비교	전자서명된 값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확인
사용기간	1회	일정기간(1년) 상시 사용

6개 공인인증기관은 2003년 1월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전자민원행정서비스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11월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기존에 무료로 발급해온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용(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온라인보험, 온라인신용카드 등 금융권역별로 제한)과 상호연동형(모든 분야에 사용가능)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상호연동형은 유료화하였다.

### 인증기관별 주요 이용분야

인 증 기 관	이 용 분 야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 온라인신용카드, 주택청약, 인터넷지로,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전자입찰 등
한국전산원	조달EDI, 국가재정정보, 국세전자신고 등 공공분야
한국전자인증	전자입찰
한국정보인증	우체국 인터넷뱅킹, 전자입찰
코스콤 (舊한국증권전산)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입찰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 전자통관, 전자물류서비스

공인인증서의 발급규모는 2001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5년 3월말 현재 1천만개를 넘어섰는데 주로 은행, 증권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위한 발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인증서 발급규모

(단위 : 개, 연월말 기준)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서비용	합 계
2000년	18,470	8,337	38	26,845
2001년	1,293,850	207,457	228	1,501,535
2002년	4,376,203	557,556	384	4,934,143
2003년	7,088,509	735,225	634	7,824,368
2004년	8,724,889	772,333	697	9,497,919
2005년3월	9,302,137	786,310	737	10,089,184

자료 : 정보통신부

## 다. Identrus 국제인증시스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국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 인증시스템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기관으로는 Identrus, Verisign, Entrust, RSA Security 등이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국내 인증체계와의 유사성<sup>1)</sup>, 상대적 신뢰성<sup>2)</sup> 등을 고려하여 세계 우수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Identrus 국제인증시스템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00년 3월부터 인증서비스를 시작한 Identrus는 2004년말 현재 전세계 6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는데 최근까지는 본격적인 국제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기반 형성을 위해 동일국가내의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서비스 보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2004년 이후 국제인증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PDF문서에 대한 인증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수요진작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Identrus 국제인증시스템 도입을 2004년도부터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현재는 Identrus 인증시스템을 운영중인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이 동일국가내의 인증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Identrus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당분간 국제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수익모델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한 국내 공인인증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어 Identrus 인증시스템을 금융거래와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국제인증수요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1) Identrus와 국내 인증체계의 비교

구 분	Identrus 국제인증시스템	국내 공인인증시스템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	Identrus社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증기관(CA)	CA참가은행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등록기관(RA)	CA참가은행 또는 RA은행	은행(금융결제원 공인인증의 경우)
가입자	법인고객	개인 및 법인고객

2) Identrus는 주요 주주로 ABN AMRO, BOA, Chase Manhattan, Deutsche Bank, Citigroup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주은행들과 동일하게 미국 연방금융감독당국인 OCC(Office of Comptroller Currency)의 감독을 받고 있다.

## 제 2 절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

1990년대 중반이후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도 급속히 확대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1999년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경제부)는 2001년 12월부터 정부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3년 8월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16대 국회 종결시까지 심사가 보류되면서 동 법률안은 자동폐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률안 내용을 정비하여 2004년 12월 17대 국회에 재상정하여 2005년 7월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기반 확보에 관한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응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4년 9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지시와 그 결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2004년 11월에 개최된 법률전문가회의에서는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 심의를 거쳐 동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2005년 3월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참여기관들은 금융정보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의 제정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sup>3)</sup>의 주요 내용<sup>4)</sup>

### 가. 법률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만 참여하고 당사자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 및 절차의 명확화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眞正性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강화하였다.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갱신 또는 대체 발급시는 예외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非대면성·非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요청시 2주내에 서면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오류정정을 요구받거나 스스로 오류를 인지한 때는 이를 즉시 조사·처리한 후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

3)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되었다. 첫째, 규율내용은 지급결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율만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즉, 가급적 현행 시장 상황 및 영업형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율방식도 급속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규율의 큰 틀만을 제시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4) 17대 국회에 상정된 정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다.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sup>5)</sup>

해킹, 전산장애 등 쌍방 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거래정보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을 범용성·환금성 등에 따라 전자화폐 및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구입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범용성)되고 현금·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권·구두상품권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 마.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서비스(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5) 2005년 6월 17일 열린 전자금융거래법안 공청회에서 전자금융사고시 금융기관과 이용자간 책임부담에 관해 금융기관과 소비자보호단체등 간 첨예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 바.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으로 구분된다.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

구분	업무	규제
금융기관	·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금융업무	관련법률에 의거
전자금융업자 · 자신의 명의로 책임으로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 이용자의 자금을 금융기관의 자기계좌 등을 통해 수취하는 사업자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허가
	· 전자자금이체업무 (휴대전화이체, e메일뱅킹 등)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Gateway 등)	등록
전자금융보조업자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부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 금융기관간 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결제업무 수행	· 단순 지급정보중개업자, DB관리업자, IT설계·관리업자 등 · 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금융결제원)	-
전자채권관리기관	·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등록

## 사.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화폐 발행자는 원칙적으로 겸업을 제한하여 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안 제2조제15호에 의한 전자화폐 이외의 것에 대해 ‘전자화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며,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상호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치저장한도·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총발행한도의 설정 및 이에 관한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아.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 2.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 추진

### 가.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 필요성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금융기관의 이체 지시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는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가 불가능(irrevocable)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결제를 과거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결제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파산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종전 관련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처리과정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否認權)<sup>6)</sup> 행사로 무효화될 경우 동 시스템내에서 타 금융기관의 결제가 연쇄적으로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인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가 실시간 또는 지정시점에 결제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대금과 외환거래자금의 동시결제도 이루어지므로 각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또한 2004년 일평균 137조원이 지급결제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되는 경우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파산시에도 동 기관의 이체지시에 따른 결제가 예정대로 완결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적 근거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시키기 위해서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01년 1월 공표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에서는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국이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됨에

6)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선고전 지급결제행위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간 형평성을 내세워 지급결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따라 EU 역내국가를 비롯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는 결제의 완결성을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보장하였다.

### 국제적 기준 수용의 불가피성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국내은행 등과 함께 국제 민간금융기구인 외환동시결제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International ; CLS 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원·외화를 시차없이 매매 결제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CLS은행에 대한 한은금융망 가입승인, 원화의 CLS은행 결제통화 지정,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국은행의 관련규정 개정, 한국은행·금융결제원·국내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2004년 12월 6일부터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그러던 중 CLS은행은 우리나라 법무부가 2004년 9월 입법예고한 통합도산법(안)중 일부조항이 결제완결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2004년 10월말에는 CLS은행은 동 법률(안)에 결제의 완결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CLS은행은 2004년 11월말 원화가 CLS은행의 결제통화로 지정된 후에도 결제의 완결성이 저해되는 방향으로 법적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결제통화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제의 완결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2005년 3월에 제정된 통합도산법에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 11월말 우리나라와 더불어 CLS은행의 결제통화로 지정된 뉴질랜드(2003.8), 홍콩(2004.7) 그리고 南阿共(2004.10)은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 나. 법제화 추진과정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지시와 결제에 대해 완결성을 보장하는 것과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금융기관간 차감계산<sup>7)</sup>에 대해 법적 유효성 및 이행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 제공된 담보의 처분 및 충당 행위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결제의 완결성 보장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정치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진전 등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빈번한 가운데 국내금융기관도 외국처럼 일시에 파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파산시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여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4년 3월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현황’을 조사하여 발간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정부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제정을 준비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안)’)에 결제완결성의 보장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2004년 10월부터는 통합도산법(안) 제정 관련 법무부, 국회법사위 등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및 전문가회의 개최를 통해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05년 3월 통합도산법(안)을 의결하였다.

## 다. 통합도산법상 결제완결성의 보장 내용

새로 제정된 통합도산법<sup>8)</sup> 제120조제1항은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7) 금융기관과 고객(개인, 기업, 비은행 금융기관 등)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채권·채무관계를 일괄정산하여 특정시점에 최종결제(차액결제)하는 것이다.

8) 동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기타 결제에 관하여는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은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법 제336조).

이처럼 통합도산법상 금융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시 포함)하더라도 한은금융망 등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그 지급지시와 관련된 결제는 유효하도록 즉, 결제의 완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산시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6년 4월) 되는데 동 기간중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하는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합도산법상의 결제완결성 보장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표준화의 지속적 추진

금융업무의 표준화는 사무자동화, 신상품의 개발, 원활한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업무처리절차, 양식 또는 매체 등을 통일하는 것으로 주요 표준화 대상업무로는 각종 금융거래메시지 양식 및 메시지 구성요소의 통일, IC카드 등 지급결제수단 사양 및 보안관련 사항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5월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전신)의 발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융업무가 표준화되면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은 각종 서비스의 독자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 및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전체 효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시스템이므로 관련기술 및 이용절차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매년 표준화 필요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1. 표준화 추진 체계

금융부문의 국내표준 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효율적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및 표준화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다만 표준화 내용이 은행·증권·보험소위원회중 한 소위원회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표준화를 논의케한 후 해당 소위원회에서 표준안을 결정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표준원 산하에 ISO의 분야별 기술위원회<sup>9)</sup>에 대응

9) 국제 표준화기구로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있으며 동 기구는 1947년 유엔 표준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정부간 협의기구 형태로

하는 분야별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금융부문에 대한 ISO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금융분야 전문가로 금융부문 (ISO/TC68)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며 금융결제원이 간사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ISO의 금융부문 국제표준안에 대한 찬·반 투표권 행사는 국내 대표기구(National Body)인 기술표준원이 하고 있다.

## 2. 주요 표준 제정 실적

최근의 표준제정은 금융IC카드와 관련된 표준의 제·개정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2004년중에도 PIN System 도입을 위한 금융IC카드 표준을 개정하였으며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대학등록금 수납관련 File Layout 표준을 제정하였다. 향후에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표준화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표준 제정 실적

표준 제정	표준 제정 내용
1996. 3	- 펌뱅킹 서비스 파일포맷 표준 제정
1997. 2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제정
1999. 7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비접촉식 기능 추가
2000.11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PIN위치변경, 단말기 최소구비요건 정의 등
2002.12	- CD공동망 거래전문 개정 ○ 거래전문에 지급계좌번호 Field 추가 -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전문 개정 ○ 현행 7개의 입금불능사유 코드를 19개로 확대
2003. 4 2003.11	-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제정 - 폐쇄형 및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현금카드 적용 보안알고리즘 지정 등
2004. 6	- 폐쇄형 및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IC카드에 PIN System제도 도입 등
2004.10	- 대학등록금 수납관련 File Layout 표준 제정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63년 6월 공업진흥청(현재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대표기관으로 가입하였다. ISO에는 182개의 분야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있으며 이중 금융부문은 TC68이 담당하고 있다.

## 제 4 절 신BIS협약 도입에 대응한 금융정보시스템의 구축

### 가. 신BIS협약의 등장 배경

1988년 7월에 확정된 현행 BIS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본규제 회피거래(capital arbitrage)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감독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4년 6월에 신BIS협약을 발표하였다.

신BIS협약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6년말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회원국은 각 감독당국이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신BIS협약의 주요 내용

신협약은 현행 협약인 최소자기자본규제(Pillar I) 이외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시장규율의 강화(Pillar III)가 포함된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illar II 및 III는 Pillar I이 리스크 측정 등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이중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는 리스크의 유형 및 계산에 관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범위와 최저자기자본비율은 현행과 동일하나 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가 추가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현행 측정방식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방법 이외에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내부등급방법을 새롭게 허용하였다.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신용위험가중자산} + \text{시장위험가중자산} + \text{운영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현행 BIS협약과 신BIS협약 비교

구 분	현행 BIS협약	신BIS협약
최저자기 자본규제 (Pillar1)	신용리스크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 위험가중치 적용)	① 표준방법(승인불필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0~1,250%)
		② 내부등급법(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은행 자체의 내부신용평가모형 활용 i)기본내부등급법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부도율만 추정하고 여타 리스크 요소는 협약에서 제시 ii)고급내부등급법 모든 리스크 요소에 대하여 은행이 자체 평가
	시장리스크	- 현행과 동일 (금리, 주식, 외환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	- 운영리스크 추가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 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 ① 표준방법(승인불필요) 총이익을 기준으로 운영리스크 산출 i)기초지표법 총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로 산출 ii)표준방법 8개 사업부문별 총이익의 일정비율(12~18%)의 합을 운영리스크로 산출 ② 고급측정법(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은행 자체의 손실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리스크 산출
감독당국 점검 (Pillar2)	-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적정성평가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8%) 이상의 자본보유 요구
시장규율 강화 (Pillar3)	-	리스크별 측정방법과 자기자본 세부내역 등 공시 의무화

## 다.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의 대응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성과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BIS협약을 2007년말부터 모든 은행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고 리스크 측정방법은 각 은행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 중에서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은행 내부적인 신용평가모형 구축, 개별여신이 아닌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시, VaR 개념의 도입 및 적용 등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선진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기법의 도입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BIS협약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기업, 국가, 은행 등 주요 신용 익스포저를 신용등급별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토록 하거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익스포저의 예상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여신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리스크의 측정에 있어서도 고급 측정법의 경우 계량기법을 이용한 자체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측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고도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실시간 리스크 측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예상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과 같은 위험요소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선진 리스크 측정 및 관리기법의 적용, 여신프로세스 개선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관련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신BIS협약의 본격 도입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부 록 >

1.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
2. 금융정보화 연혁
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안목록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6.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 1. 금융정보화 관련통계

— 일 러 두 기 —

1.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0 】 단위 미만
- 【 - 】 해당사항 없음
- 【 .. 】 미 상
- 【 r 】 정 정

2. 일부 통계의 경우 표시자리수 이하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숫자와 상이할 수 있음

3. 금융기관의 포괄범위<sup>1)</sup>(200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기 관 명
은행 (19)	시중은행 (8)	조흥, 우리, 제일, 외환, 국민, 신한, 한국씨티, 하나
	지방은행 (6)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5)	산업, 수출입, 기업, 농·수협 협동조합중앙회 <sup>2)</sup>
증권기관 (57)	증권회사 (34)	교보, 굿모닝신한, 동원, 대신, 대우, 신영, 한양, 메리츠, 부국, 하나, 현대, 우리, 한화, 신한, 유화, 동양종합금융, SK, KGI, 세종, 브릿지, 삼성, 동부, 현대투자, 한누리투자, 미래에셋, 키움닷컴, 리딩투자, 대한투자, 한국투자, 이트레이드, 코리아RB, BNG, 푸르덴셜, CJ
	자산운용 (23)	교보, 대신, 동부, 동원BNP, 삼성, 우리, 신영, 신한BNP, 템플턴, 조흥, 국민, 한일, 한화, LG, 랜드마크, 대한, 동양, 태광,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투신, 아이, 동양오리온투신, CJ

구 분		기 관 명
보험 기관 (36)	생명보험회사 (21)	대한, 삼성, 흥국, 교보, 녹십자, 신한, 럭키, 금호, SK, 동양, PCA,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뉴욕, 라이나, AIG, 푸르덴셜, 하나, ING, KB
	손해보험회사 (15)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LG, 동부, 서울보증, 코리안리재보험, ACE, 페더럴, 다음다이렉트, 현대해상
기타 관련 기관 (18)	은행계 카드사(3)	BC카드, 신한카드, 산은캐피탈
	우체국금융 및 기금(3)	우체국금융,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련기관(12)	은행(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증권(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보험(보험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협회)
	저축기관중앙회(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외국은행 국내지점(7)	ABN-AMRO, BOA, UFJ, HSBC, MIZUHO, Tokyo-Mitsubishi, Deutsche Bank

주 : 1) ( )내는 기관수

2) 농·수협 회원조합의 경우 은행공동망 실적 및 CD/ATM대수만 중앙회(특수은행)에 포함

## 【 은 행 】

### 1. 전산직원 현황

#### 가. 전산직원수 비중

(단위 : 명, %)

연말	총 직 원 (A)				전 산 직 원 (B)				B/A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중	지방	특수
1990	133,471	62,889	17,656	52,926	3,780	1,743	730	1,307	2.8	2.8	4.1	2.5
1991	140,165	66,148	18,879	55,138	4,441	1,918	867	1,656	3.2	2.9	4.6	3.0
1992	152,692	67,455	19,568	65,669	5,140	2,187	935	2,018	3.4	3.2	4.8	3.1
1993	152,349	67,181	19,647	65,521	5,328	2,235	968	2,125	3.5	3.3	4.9	3.2
1994	153,324	67,494	19,606	66,224	5,381	2,342	934	2,105	3.5	3.5	4.8	3.2
1995	153,851	83,135	19,855	50,861	5,380	2,723	922	1,735	3.5	3.3	4.6	3.4
1996	153,478	82,716	20,158	50,604	5,480	2,740	1,001	1,739	3.6	3.3	5.0	3.4
1997	151,337	93,575	19,872	37,890	5,611	3,232	968	1,411	3.7	3.5	4.9	3.7
1998	109,371	64,757	11,550	33,064	4,701	2,749	678	1,274	4.3	4.2	5.9	3.9
1999	106,558	66,198	10,207	30,153	4,398	2,698	576	1,124	4.1	4.1	5.6	3.7
2000	102,053	64,524	9,476	28,053	4,138	2,542	555	1,041	4.1	3.9	5.9	3.7
2001	109,186	71,412	10,601	27,173	3,799	2,406	535	858	3.5	3.4	5.1	3.2
2002	112,083	74,818	10,536	26,729	4,217	2,732	540	945	3.8	3.7	5.1	3.5
2003	107,681	68,345	10,283	29,053	3,985	2,624	404	957	3.7	3.8	3.9	3.3
2004	114,306	74,683	10,073	29,550	4,342	3,055	414	873	3.8	4.1	4.1	3.0

#### 나. 업무별 전산직원수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0	3,780	197	739	2,033	288	-	-	-	523
1991	4,441	228	906	2,461	309	-	-	-	537
1992	5,140	278	1,047	2,784	353	107	31	346	194
1993	5,328	298	1,146	2,789	326	129	31	460	149
1994	5,381	325	1,157	2,820	293	141	22	476	147
1995	5,380	408	1,205	2,684	271	161	12	463	176
1996	5,480	323	1,188	2,975	242	189	3	374	186
1997	5,611	591	1,198	2,881	213	181	17	451	79
1998	4,701	560	1,012	2,398	173	148	1	334	75
1999	4,398	406	1,078	2,196	138	155	-	335	90
2000	4,138	444	971	1,966	112	185	1	412	47
2001	3,799	327	1,019	1,771	95	126	1	373	87
2002	4,217	348	1,259	1,769	125	156	1	507	52
2003	3,985	245	844	2,131	97	133	-	432	103
2004	4,342	278	964	2,144	126	148	-	486	196

## 2. 전산사무기기 현황

### 가. 주전산기<sup>1)</sup>

(단위 : 대)

연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1989	77	41	20	16	-	-	-	-	-	-	-	-
1990	93	45	23	25	-	-	-	-	-	-	-	-
1991	134	68	34	32	-	-	-	-	-	-	-	-
1992	228	80	95	53	86	17	56	13	37	17	14	6
1993	368	102	152	114	74	17	42	15	40	20	14	6
1994	544	138	218	188	81	21	45	15	55	18	29	8
1995	993	299	248	446	78	30	33	15	51	21	20	10
1996	1,652	637	439	576	56	41	8	7	24	12	7	5
1997	1,556	944	462	150	75	49	11	15	39	24	10	5
1998	1,401	518	294	589	62	43	9	10	51	26	4	21
1999	1,226	740	300	186	54	39	4	11	50	22	7	21
2000	2,229	1,393	476	360	50	34	4	12	64	36	7	21
2001	2,521	1,574	500	447	68	54	3	11	76	49	17	10
2002	2,795	2,040	489	266	41	29	1	11	107	47	9	51
2003	3,024	2,133	590	301	43	28	3	12	126	60	9	57
2004	4,561	3,359	636	566	62	43	4	15	199	160	6	33

(계 속)

(단위 : 대)

연말	중 형				소 형				초 소 형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소계	시중	지방	특수
1989	-	-	-	-	-	-	-	-	-	-	-	-
1990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1992	35	14	5	16	40	22	11	7	30	10	9	11
1993	39	18	6	15	104	30	24	50	111	17	66	28
1994	54	30	5	19	88	45	31	12	266	24	108	134
1995	51	32	7	12	138	81	37	20	675	135	151	389
1996	68	47	6	15	144	97	30	17	1,360	440	388	532
1997	89	62	5	22	223	150	43	30	1,130	659	393	78
1998	108	70	5	33	338	159	48	131	842	220	228	394
1999	51	29	4	18	297	209	54	34	774	441	231	102
2000	115	65	5	45	352	243	50	59	1,648	1,015	410	223
2001	198	130	14	54	494	322	59	113	1,685	1,019	407	259
2002	912	844	6	62	291	159	39	93	1,444	961	434	49
2003	936	841	14	81	356	199	61	96	1,563	1,005	503	55
2004	1,904	1,538	14	352	511	342	73	96	1,885	1,276	539	70

주: 1) '92년부터 규모별[구입가(US\$)기준]로 구분하여 집계,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 형 : 70~150만불 미만      중 형 : 30~70만불 미만  
 소 형 : 10~30만불 미만      초소형 : 10만불 미만

나. 단말기/개인용 컴퓨터(PC)

(단위 : 대)

연말	단 말 기 <sup>1)</sup>				개 인 용 컴 퓨 터 (PC) <sup>2)</sup>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1991	48,410	18,932	5,146	24,332	6,910	3,027	769	3,114
1992	56,210	21,406	6,378	28,426	13,525	4,701	1,233	7,591
1993	66,657	24,867	6,556	35,234	20,553	9,047	3,129	8,377
1994	69,032	29,881	7,508	31,643	31,100	14,082	4,971	12,047
1995	82,257	46,147	8,803	27,307	46,276	24,858	7,134	14,284
1996	71,868	47,015	9,477	15,376	48,224	30,879	8,124	9,221
1997	74,783	51,224	7,957	15,602	77,827	45,668	12,021	20,138
1998	69,146	46,764	6,267	16,115	82,612	49,780	10,333	22,499
1999	59,182	38,448	4,193	16,541	91,458	55,838	9,888	25,732
2000	50,074	33,353	2,883	13,838	100,487	62,681	10,704	27,102
2001	45,808	29,092	2,723	13,993	99,858	69,240	9,647	20,971
2002	51,258	39,863	4,298	7,097	96,960	59,941	8,009	29,010
2003	45,249	33,185	2,984	9,080	102,265	65,986	8,199	28,080
2004	52,008	56,482	2,605	7,669	103,926	62,432	10,182	31,312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 겸용 PC 포함

다. 휴대용 노트북/PDA

(단위 : 대)

연말	휴 대 용 노 트 북				PDA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2002	13,650	10,457	1,004	2,189	68	68	-	-
2003	18,095	13,264	2,585	2,246	973	942	7	24
2004	12,456	7,455	1,904	3,097	102	33	39	30

3. 전산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C)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공동 <sup>1)</sup> 이용 분담금 (C)		
				소계 (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3	72,606	5,144	7.1	2,183	2,632	451	472	257	1,229	223	329
1994	84,411	6,913	8.2	3,565	3,015	516	551	308	1,421	219	333
1995	104,515	9,033	8.6	4,949	3,643	557	689	425	1,723	249	441
1996	107,581	8,975	8.4	4,697	3,796	441	763	458	1,792	342	482
1997	126,621	9,083	7.2	4,165	4,381	500	909	535	1,967	471	536
1998	112,007	7,731	6.9	3,309	3,993	437	982	530	1,605	439	429
1999	97,973	9,070	9.3	4,183	4,388	534	994	644	1,754	462	499
2000	92,076	11,834	12.9	6,583	4,887	538	1,063	774	1,869	644	364
2001	110,772	15,582	14.1	9,516	5,545	683	1,176	858	2,032	795	521
2002	133,334	18,824	14.1	11,412	7,069	1,211	1,275	1,117	2,832	634	343
2003	130,353	17,211	13.2	7,611	8,966	1,800	1,512	1,258	3,820	576	634
2004	144,945	18,249	12.6	6,965	11,284	2,877	1,500	1,410	3,339	2,158	709

주 : 1) 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에 분담하는 금액

#### 4.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 가. 텔레뱅킹

#####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 시 기 관					이 용 고 객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등록고객수 <sup>1)</sup> (연말)	실이용고객수 <sup>1)</sup> (연중)
1995	16	10	3	3	..	..	..
1996	24	14	7	3	..	..	..
1997	26	15	8	3	..	..	..
1998	24	12	7	5	..	..	..
1999	20	10	6	4	..	..	..
2000	22	11	6	4	1	..	..
2001	21	10	6	4	1	..	..
2002	21	8	6	4	3	21,064,308	12,187,075
2003	21	8	6	4	3	26,426,478	11,091,600
2004	20	8	6	4	2	28,088,003	15,311,319

주 : 1) 2개 이상의 은행에 등록된 고객을 포함

#####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이 용 실 적				
	계	정보조회	자금이체 <sup>1)</sup>	대 출	기 타
1995	25,729	20,705	2,311	..	2,713
1996	91,663	70,837	9,724	167	10,935
1997	312,867	228,047	54,748	466	29,606
1998	434,327	319,723	81,753	257	32,594
1999	651,356	443,479	126,055	870	80,952
2000	904,285	599,453	201,763	276	102,794
2001	1,440,918	884,644	347,296	12,255	196,722
2002	1,219,469	803,534	320,454	1,007	65,811
2003	1,194,338	761,371	334,057	374	83,585
2004	1,421,372	921,302	425,278	784	74,008

주 : 1) 현금서비스이체실적을 포함

나. PC뱅킹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시기관 <sup>1)</sup>										이용고객수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등록고객수 <sup>2)</sup> (연말)			실이용고객수 <sup>2)</sup> (연중)		
	H	F	H	F	H	F	H	F	H	F	개인	기업	계	개인	기업	계
1994	18	23	11	14	3	4	4	5	..	..	160,104	14,616	174,720	..	..	..
1995	24	26	13	15	7	7	4	4	..	..	535,869	24,858	560,727	..	..	..
1996	25	27	14	15	7	8	4	4	.	.	1,345,984	47,142	1,393,126	..	..	..
1997	27	28	15	16	9	9	3	3	..	..	4,547,353	65,076	4,612,429	..	..	..
1998	26	24	13	13	7	7	6	4	..	..	6,403,297	75,822	6,479,119	..	..	..
1999	22	20	11	11	6	5	5	4	..	..	6,557,851	89,408	6,647,259	..	..	..
2000	22	21	11	11	6	6	4	3	1	1	8,638,752	116,019	8,754,771	..	..	..
2001	20	20	10	10	6	6	3	3	1	1	11,664,948	99,477	11,764,425	..	..	..
2002	16	24	7	8	6	6	2	4	1	6	9,725,191	223,801	9,948,992	1,800,253	89,071	1,889,324
2003	12	19	6	7	4	5	2	3	0	4	11,561,765	316,343	11,878,108	1,830,125	51,966	1,882,091
2004	7	17	3	7	3	4	1	3	0	3	4,667,531	210,952	4,878,483	528,339	35,379	563,796

주 : 1) H : 홈뱅킹 실시기관수, F : 뽁뱅킹 실시기관수

2) 2개 이상의 은행에 등록된 고객을 포함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중	개 인					기 업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sup>1)</sup>	대출	기타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대출	일괄 데이터 전송	기타
1992	353	247	106	..	—	6,427	630	1,409	..	4,388	..
1993	1,373	1,090	283	..	—	33,481	1,625	4,547	..	27,309	..
1994	3,796	2,888	908	..	—	85,309	4,981	36,027	..	44,300	1
1995	15,721	12,032	3,685	..	4	147,742	10,892	77,089	..	59,759	2
1996	30,901	23,122	7,746	..	34	257,697	19,302	126,510	..	111,876	10
1997	89,096	67,679	20,161	..	1,256	495,852	35,026	371,219	..	79,945	9,662
1998	252,286	170,737	46,347	..	35,202	762,683	54,964	614,805	..	80,767	12,148
1999	404,556	216,390	92,173	..	95,993	993,493	110,350	793,297	..	55,919	33,928
2000	464,209	307,479	111,997	..	44,733	1,238,630	125,477	976,448	..	58,239	78,466
2001	150,216	89,063	37,009	..	24,144	1,421,097	191,894	1,053,166	—	73,923	102,113
2002	80,340	57,329	16,265	3	6,743	479,359	100,273	312,231	—	29,323	37,532
2003	51,644	34,961	12,661	1	4,021	348,863	67,571	223,577	43	27,083	30,589
2004	49,286	35,606	12,790	..	860	371,698	46,883	290,207	..	34,468	140

주 : 1) 현금서비스이체실적을 포함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합 계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대 출	일괄데이터 전송	기 타
1992	6,780	877	1,515	..	4,388	..
1993	34,854	2,715	4,830	..	27,309	..
1994	89,105	7,869	36,935	..	44,300	1
1995	163,463	22,924	80,774	..	59,759	6
1996	288,598	42,424	134,256	..	111,876	42
1997	584,948	102,705	391,380	..	79,945	10,918
1998	1,014,969	225,701	661,152	..	80,767	47,349
1999	1,398,049	326,740	885,470	..	55,919	129,920
2000	1,702,839	432,956	1,088,445	..	58,239	123,199
2001	1,571,313	280,957	1,090,175	..	73,923	126,257
2002	559,699	157,602	328,506	3	29,323	44,268
2003	400,506	102,532	236,239	44	27,083	34,652
2004	444,705	82,489	302,502		34,468	1,000

다. 인터넷뱅킹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 시 기 관					이 용 고 객 수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등록고객수 <sup>1)</sup> (연말)			실이용 고객수 <sup>1)</sup> (연중)
						개인	기업	계	
2000	20	11	6	3	-	..	..	4,090,000	..
2001	21	9	6	3	3	10,916,000	394,000	11,310,000	..
2002	22	8	6	4	4	17,020,000	690,000	17,710,000	8,614,363
2003	23	8	6	4	5	21,752,000	1,002,000	22,754,000	10,507,310
2004	22	8	6	4	4	23,093,723	1,177,141	24,270,864	11,376,276

주 : 1) 2개 이상의 은행에 등록된 고객을 포함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계	정보조회	자금이체	대출
2000	184,559	155,477	28,273	809
2001	910,769	755,983	151,589	3,197
2002	1,782,570	1,449,485	329,914	3,171
2003	2,635,339	2,248,217	384,999	2,123
2004	3,292,563	2,745,332	546,202	1,029

라. 모바일뱅킹

1) 등록고객수 및 이용실적

(단위 : 명, 천건)

연 도	등록고객수 <sup>1)</sup> (연말)	이 용 실 적(연중)		
		계	각종 조회서비스	자금이체서비스
2003	189,221	17,919	16,442	1,478
2004	893,592	51,312	41,674	9,638

주 : 1) IC칩 기반 모바일뱅킹(BankON, M뱅크, K뱅크) 등록고객수 기준, 이동통신사별 중복가입자 포함

마. 계좌통합관리서비스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실 시 기 관					이 용 고 객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등록고객수 <sup>1)</sup> (연말)	실이용고객수 <sup>1)</sup> (연중)
2002	13	8	4	1	-	1,000,642	133,482
2003	12	5	4	2	1	510,631	312,492
2004	12	5	4	2	1	1,284,733	408,981

주 : 1) 2개 이상의 은행에 등록된 고객을 포함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이 용 실 적			
	계	정보조회	자금이체	기 타
2002	934	911	22	1
2003	1,704	1,604	90	10
2004	6,708	4,106	1,308	1,366

## 5. CD/ATM 현황

### 가. 설치현황

#### 1) 종류별

(단위 :대)

연말	C				D			A				T M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sup>1)</sup> 기관	기기 <sup>2)</sup> 운영자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1991	7,167	3,331	912	2,924	..	..	..	24	14	4	6	..	..	..
1992	9,659	4,339	1,223	4,097	..	..	..	61	24	9	28	..	..	..
1993	12,296	6,119	1,467	4,710	..	..	..	188	106	13	69	..	..	..
1994	17,047	9,292	2,068	5,687	..	..	..	1,145	663	46	436	..	..	..
1995	22,799	14,716	2,867	5,216	..	..	..	3,432	2,566	245	621	..	..	..
1996	31,259	16,696	3,465	9,409	1,689	..	..	5,345	3,815	403	1,127	..	..	..
1997	35,470	19,945	3,989	9,264	2,272	..	..	7,204	5,491	567	1,127	19	..	..
1998	32,223	17,029	3,042	9,492	2,660	..	..	9,174	7,188	529	1,112	345	..	..
1999	32,741	16,600	2,682	10,710	2,749	..	..	9,734	7,105	605	1,581	443	..	..
2000	34,971	17,871	2,886	11,465	2,749	..	..	12,793	9,103	793	2,354	543	..	..
2001	36,619	17,263	2,965	12,559	3,832	..	..	16,335	11,529	978	3,195	633	..	..
2002	42,492	13,599	2,862	12,992	4,178	5,872	2,989	23,567	15,343	1,523	5,134	698	869	-
2003	46,556	11,716	2,625	16,773	4,014	6,707	4,721	33,597	19,206	2,085	10,364	622	1,116	204
2004	45,135	10,102	2,362	12,141	4,202	8,707	7,621	35,988	21,984	2,455	8,948	883	1,510	208

주 :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2) 한국전자금융, 노틸러스효성, 게이트뱅크, 케이아이비넷, 청호컴넷, 키스뱅크, 한네트 등 자동화기기사업자가 은행점포 이외의 공공장소에 설치한 기기수

(계 속)

(단위 :대)

연말	합 계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기기운영자
1991	7,191	3,345	916	2,930	..	..	..
1992	9,720	4,363	1,232	4,125	..	..	..
1993	12,484	6,225	1,480	4,779	..	..	..
1994	18,192	9,955	2,114	6,123	..	..	..
1995	26,231	17,282	3,112	5,837	..	..	..
1996	36,604	20,511	3,868	10,536	1,689	..	..
1997	42,674	25,436	4,556	10,391	2,291	..	..
1998	41,397	24,217	3,571	10,604	3,005	..	..
1999	42,475	23,705	3,287	12,291	3,192	..	..
2000	47,764	26,974	3,679	13,819	3,292	..	..
2001	52,954	28,792	3,943	15,754	4,465	..	..
2002	66,059	28,942	4,385	18,126	4,876	6,741	2,989
2003	80,153	30,922	4,710	27,137	4,636	7,823	4,925
	(2,300)	(1,976)	(25)	(299)	(—)	(—)	(—)
2004	81,123	32,086	4,817	21,089	5,085	10,217	7,829
	(3,991)	(2,876)	(351)	(376)	( 388 )	(—)	(—)

주 : ( )내는 공과금수납전용단말기수

2) 설치장소별<sup>1)</sup>

(단위 : 대)

연말	계	점 내							점 외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소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1991	7,191	6,665	3,040	838	2,787	..	..	..	526	305	78	143	-	..	..
1992	9,720	8,695	3,714	1,128	3,853	..	..	..	1,025	649	104	272	-	..	..
1993	12,484	10,302	4,700	1,237	4,365	..	..	..	2,182	1,525	243	414	-	..	..
1994	18,192	13,803	6,734	1,639	5,430	..	..	..	4,389	3,221	475	693	-	..	..
1995	26,231	18,412	11,307	2,192	4,913	..	..	..	7,819	5,974	921	924	-	..	..
1996	36,604	27,168	13,551	2,792	9,136	1,689	..	..	9,436	6,960	1,076	1,400	-	..	..
1997	42,674	32,354	17,760	3,348	8,955	2,291	..	..	10,320	7,676	1,208	1,436	-	..	..
1998	41,397	30,016	15,397	2,559	9,210	2,850	..	..	11,381	8,820	1,012	1,394	155	..	..
1999	42,475	30,684	14,980	2,274	10,606	2,824	..	..	11,791	8,725	1,013	1,685	368	..	..
2000	47,764	36,350	19,033	2,487	11,936	2,894	..	..	11,414	7,941	1,192	1,883	398	..	..
2001	52,954	36,606	20,359	2,621	9,284	4,342	..	..	16,348	8,433	1,322	6,470	123	..	..
2002	66,059	50,067	21,296	2,909	16,678	4,803	4,381	-	15,992	7,646	1,476	1,448	73	4,682	2,989
2003	80,153	60,848	22,218	3,184	24,905	4,563	5,978	-	19,305	8,704	1,526	2,232	73	6,686	4,925
2004	81,123	52,724	23,346	3,134	19,835	3,212	3,197	-	33,249	8,740	1,683	1,254	1,873	7,020	7,829

주 : 1) 점포외벽 설치분 포함

# 한국은행

나. 설치장소별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중	점 내							점 외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기기 운영자
1991	155,051	75,514	17,048	62,489	..	..	..	9,895	5,672	1,098	3,125	..	..	..
1992	202,381	104,599	23,247	74,535	..	..	..	15,709	8,644	1,114	5,951	..	..	..
1993	263,726	132,785	34,999	95,942	..	..	..	21,718	12,926	2,115	6,677	..	..	..
1994	419,810	243,392	56,240	120,178	..	..	..	66,680	43,121	7,727	15,832	..	..	..
1995	576,708	384,814	89,540	102,354	..	..	..	91,665	71,805	14,490	5,370	..	..	..
1996	794,927	511,213	120,504	151,978	11,232	..	..	193,297	158,344	23,862	11,091	-	..	..
1997	999,654	655,173	147,887	175,351	21,243	..	..	348,992	288,835	40,050	20,107	-	..	..
1998	1,234,523	845,177	160,172	207,050	22,124	..	..	332,000	253,730	46,402	31,035	833	..	..
1999	1,516,179	952,244	190,041	340,133	33,761	..	..	343,831	242,318	48,664	50,269	2,580	..	..
2000	1,909,420	1,247,827	188,802	435,691	37,100	..	..	427,013	306,126	55,292	62,804	2,791	..	..
2001	2,279,376	1,351,913	242,864	645,831	38,768	..	..	537,984	366,718	70,400	98,075	2,791	..	..
2002	2,923,485	1,687,364	262,164	868,038	72,204	33,715	-	715,171	412,748	72,455	122,633	1,087	5,479	100,769
2003	2,639,871	1,272,180	245,790	1,054,426	37,023	30,452	-	773,825	400,370	87,582	149,906	43,498	570	91,899
2004	2,576,571	1,353,602	253,692	850,989	105,552	12,736	-	752,497	345,264	111,463	120,193	65,899	1,544	108,134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합 계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기관	기기운영자
1991	164,946	81,186	18,146	65,614	..	..	..
1992	218,090	113,243	24,361	80,486	..	..	..
1993	285,444	145,711	37,114	102,619	..	..	..
1994	486,490	286,513	63,967	136,010	..	..	..
1995	668,373	456,619	104,030	107,724	..	..	..
1996	988,224	669,557	144,366	163,069	11,232	..	..
1997	1,348,646	944,008	187,937	195,458	21,243	..	..
1998	1,566,523	1,098,907	206,574	238,085	22,957	..	..
1999	1,860,010	1,194,562	238,705	390,402	36,341	..	..
2000	2,336,433	1,553,953	244,094	498,495	39,891	..	..
2001	2,817,360	1,718,631	313,264	743,906	41,559	..	..
2002	3,638,656	2,100,112	334,619	990,671	73,291	39,194	100,769
2003	3,413,696	1,672,550	333,372	1,204,332	80,521	31,022	91,899
2004	3,329,068	1,698,866	365,155	971,182	171,451	14,280	108,134



6. 직불카드<sup>1)</sup> 발급 및 이용현황

(단위 : 천매, 건, 백만원, 개)

연 중	카드발급매수	이 용 실 적		가맹점수
		건 수	금 액	
1996	12,290	659,900	33,663	121,788
1997	24,423	1,118,842	57,015	181,412
1998	33,636	1,444,273	64,533	183,017
1999	39,315	1,891,669	97,728	198,208
2000	53,758	1,786,068	106,360	246,012
2001	63,078	1,622,420	97,600	284,113
2002	65,362	1,170,998	75,510	282,496
2003	65,818	904,374	61,985	281,183
2004	63,173	1,105,741	70,381	303,348

주 : 1) 1996년 2월부터 실시

## 7. 은행공동망 현황

### 가. CD 공동망

#### 1) 예금인출<sup>1)</sup>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현 금 인 출												잔 액 조 회 건 수					
	건 수						금 액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1990	11,808	6,372	1,260	4,176	-	-	18,864	10,128	2,064	6,672	-	-	4,834	2,651	516	1,667	-	-
1991	16,062	9,405	1,739	4,918	-	-	28,438	16,529	3,074	8,835	-	-	6,432	3,852	660	1,920	-	-
1992	23,029	12,313	1,062	9,654	-	-	43,334	23,081	1,998	18,255	-	-	8,473	4,415	354	3,704	-	-
1993	32,430	18,582	4,213	9,635	-	-	66,598	37,264	8,878	20,456	-	-	11,041	6,547	1,309	3,185	-	-
1994	46,976	26,883	6,674	13,419	-	-	110,042	61,413	15,969	32,660	-	-	16,626	9,904	2,180	4,542	-	-
1995	68,009	42,313	9,873	15,588	235	-	164,531	99,329	24,719	40,100	383	-	26,581	17,187	3,567	5,711	116	-
1996	117,824	72,381	15,604	28,247	1,592	-	268,561	157,555	36,926	71,156	2,924	-	48,742	31,171	6,178	10,590	808	-
1997	170,730	123,806	14,752	30,355	1,817	-	368,286	273,568	28,888	63,352	2,479	-	141,377	99,890	12,305	26,512	2,670	-
1998	189,651	135,421	14,923	36,997	2,310	-	373,187	273,361	26,802	69,954	3,070	-	211,801	142,180	19,233	45,841	4,547	-
1999	231,613	162,735	14,592	50,768	3,518	-	465,952	341,656	26,027	94,205	4,064	-	106,606	76,437	6,565	21,679	1,925	-
2000	254,370	179,852	15,009	56,945	2,564	-	531,875	384,210	29,419	114,029	4,217	-	109,212	77,806	6,534	23,340	1,532	-
2001	297,089	213,690	16,916	63,200	3,283	-	665,215	491,766	35,670	132,108	5,671	-	126,987	90,073	7,498	27,457	1,909	-
2002	331,494	231,642	19,964	72,463	5,129	2,296	789,751	568,846	44,383	162,362	8,711	5,449	146,310	101,217	8,959	32,255	2,985	944
2003	294,679	192,802	19,811	70,623	6,495	4,948	641,715	429,162	41,096	149,607	11,184	10,666	135,206	88,158	8,924	31,810	3,886	2,428
2004	279,928	175,681	18,359	72,126	7,700	6,062	571,506	366,325	36,378	143,381	13,112	12,310	131,944	82,132	8,489	33,497	4,811	3,015

주 : 1) 1988년 7월부터 가동, 취급은행 기준

#### 2) 현금서비스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현 금 인 출								현금서비스 잔액조회 건수			
	건 수				금 액							
	계	BC계 <sup>2)</sup>	외환계	국민계	계	BC계 <sup>2)</sup>	외환계	국민계	계	BC계 <sup>2)</sup>	외환계	국민계
1994	7,158	5,235	1,522	401	18,363	12,230	4,804	1,329	1,045	707	264	74
1995	13,809	7,463	4,792	1,554	39,962	18,472	16,098	5,392	2,193	1,066	875	252
1996	17,041	9,126	5,413	2,502	50,698	23,214	18,637	8,847	2,878	1,416	1,039	423
1997	10,565	1,131	4,881	4,553	35,741	3,082	16,887	15,772	2,045	182	996	867
1998	10,414	..	5,482	4,932	32,563	..	17,474	15,089	2,666	..	1,365	1,301
1999	9,771	..	4,547	5,224	29,024	..	13,929	15,095	2,995	..	1,360	1,635
2000	19,205	..	8,097	11,108	67,755	..	28,465	39,290	5,021	..	2,116	2,905
2001	32,566	..	12,434	20,132	121,712	..	44,616	77,096	10,276	..	4,155	6,121
2002	38,109	..	12,177	25,932	151,948	..	48,103	103,845	12,634	..	4,175	8,459
2003	6,731	..	3,104	3,627	24,301	..	11,825	12,476	2,291	..	949	1,342
2004 <sup>1)</sup>	3,416	..	..	..	11,030	..	..	..	1,160	..	..	..

주 : 1) 외환카드, 국민카드 합병 등으로 통합실적 기재

2) CD공동망을 이용하던 BC카드계 제휴은행의 현금서비스는 1997년 2월 BC카드 현금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3) 계좌이체<sup>1)</sup>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계좌이체건수						계좌이체금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	저축 기관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	저축 기관
1995	11,765	8,223	802	2,698	42	-	105,921	73,836	7,222	24,521	342	-
1996	24,019	15,947	1,757	5,838	477	-	221,005	145,574	16,455	55,621	3,355	-
1997	39,344	25,995	2,794	9,768	787	-	378,232	275,012	63,451	38,263	1,506	-
1998	44,459	29,401	3,229	10,904	925	-	381,302	267,661	61,042	50,589	2,010	-
1999	64,551	40,461	4,554	18,216	1,320	-	586,780	422,131	58,792	101,836	4,021	-
2000	103,490	68,438	6,551	26,810	1,691	-	1,029,644	689,766	87,748	247,553	4,577	-
2001	119,715	72,933	7,868	37,087	1,827	-	1,259,022	820,900	85,261	345,012	7,849	-
2002	128,384	74,614	8,129	43,208	2,023	410	1,521,137	943,815	91,137	461,693	19,423	5,069
2003	132,145	70,144	8,152	49,844	2,646	1,359	1,456,527	819,837	84,572	515,369	22,812	13,937
2004	123,325	72,609	8,387	37,013	3,187	2,129	1,254,993	771,899	79,191	359,030	23,989	20,884

주 : 1) 1994년 2월부터 실시, 수취은행 기준

한국은행

나. 타행환공동망

(단위 : 천건, 억원)

연중	현 금 송 금											
	건 수						금 액					
	계	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및 외은자점	저축 기관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자점	저축 기관
1991	21,682	10,643	1,536	9,503	-	-	218,472	110,004	16,104	92,364	-	-
1992	37,211	17,985	2,907	16,319	-	-	379,021	191,253	29,310	158,458	-	-
1993	54,911	29,905	7,077	17,929	-	-	699,685	444,591	74,401	180,693	-	-
1994	88,924	48,807	10,866	29,251	..	..	1,733,915	1,192,957	148,340	392,618	..	..
1995	137,716	85,345	14,307	36,093	1,971	-	3,481,307	2,636,192	261,689	562,885	20,540	-
1996	197,288	119,881	19,872	51,689	5,846	-	6,005,254	4,602,482	450,697	897,080	54,995	-
1997	241,990	153,632	22,885	57,763	7,710	-	9,794,009	7,855,947	671,172	1,188,147	78,743	-
1998	270,262	172,797	22,195	66,161	9,109	-	11,542,943	9,326,947	697,574	1,416,600	101,822	-
1999	320,603	211,618	20,680	78,269	10,036	-	15,892,011	12,950,447	902,978	1,883,883	154,703	-
2000	392,112	265,846	22,215	94,137	9,914	-	19,221,154	15,465,727	1,071,376	2,435,905	248,146	-
2001	380,462	253,777	20,701	95,120	10,864	-	14,872,444	11,541,017	803,112	2,290,356	237,959	-
2002	315,092	186,541	17,051	78,726	10,919	21,855	10,977,252	7,644,521	610,801	1,958,497	218,711	544,722
2003	259,682	138,727	16,481	71,335	10,249	22,890	8,959,192	5,594,815	565,497	1,930,954	253,527	614,399
2004	223,434	123,318	16,056	55,307	8,557	20,196	8,019,252	4,911,735	547,110	1,852,100	192,271	516,036

(계 속)

(단위 : 건, 백만원)

연중	추 심 대 전 송 금								자 기 앞 수 표 조 회					
	건 수				금 액									
	계	시중	지방	특수	계	시중	지방	특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자점	저축 기관
1991	12	..	..	..	240	..	..	..	62,832	..	..	..	-	-
1992	17	4	2	11	24	5	10	9	11,092	6,575	823	3,694	-	-
1993	2	0	0	2	0	0	0	0	8,922	4,849	147	3,926	-	-
1994	10	2	6	2	24	4	15	5	141,533	84,395	5,409	51,729	-	-
1995	19	6	12	1	80	11	67	2	349,320	193,688	16,410	123,918	15,304	-
1996	8	-	2	6	19	-	2	16	455,000	297,000	17,000	135,000	6,000	-
1997	4	1	3	-	138	5	133	-	526,836	343,988	18,615	159,360	4,873	-
1998	9	-	8	1	25	-	25	-	581,020	397,841	27,756	149,731	5,692	-
1999	6	1	4	1	11	10	1	-	615,889	420,691	29,784	157,229	8,185	-
2000	5	1	-	4	14	5	-	9	424,170	273,680	12,685	129,002	8,803	-
2001	5	-	2	3	7	-	6	1	489,572	256,236	11,022	195,258	27,056	-
2002	15	2	4	9	37	6	6	25	547,378	108,939	7,617	229,974	29,213	171,635
2003	-	-	-	-	-	-	-	-	622,237	113,564	7,119	248,340	39,288	213,926
2004	-	-	-	-	-	-	-	-	601,152	89,178	7,414	230,584	41,589	232,387

다. ARS 공동망<sup>1)</sup>

(단위 : 천건)

연 중	총이용 건수	잔 액 조 회					무통장거래내역 조 회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1	23,837	7,786	3,491	1,032	3,263	-	14,060	5,723	1,498	6,839	-
1992	35,453	11,245	5,133	1,781	4,331	-	20,602	8,507	3,034	9,061	-
1993	48,216	15,406	7,088	2,457	5,861	-	27,131	11,845	4,047	11,239	-
1994	61,013	20,664	9,164	3,172	8,328	-	32,600	12,945	4,658	14,997	-
1995	75,247	27,357	16,091	4,210	6,744	312	39,137	22,428	5,613	10,657	439
1996	104,344	46,001	27,785	5,434	11,350	1,432	50,323	29,821	5,195	13,625	1,682
1997	123,878	59,741	40,108	6,804	10,485	2,344	54,890	35,537	4,955	12,339	2,059
1998	120,766	60,693	39,502	6,610	11,342	3,239	52,092	32,687	4,365	12,660	2,379
1999	106,300	50,426	31,207	4,032	11,478	3,709	47,620	28,634	2,982	13,462	2,542
2000	103,983	45,774	28,956	3,242	9,871	3,705	47,388	30,145	2,431	12,319	2,493
2001	103,195	43,175	22,944	3,379	13,200	3,652	47,290	24,589	2,971	17,267	2,463

주 : 1) 1989년 4월 부터 가동하여 2002.12월 전자금융공동망으로 업무이관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신용카드 관련처리 <sup>2)</sup>	환율안내 <sup>3)</sup>	금 용 상 품 안 내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1	1,501	471	29	..	..	..	-
1992	2,428	524	15	7	2	6	-
1993	4,363	577	12	6	1	5	-
1994	6,256	550	12	6	1	5	-
1995	6,533	616	10	7	1	2	..
1996	5,222	703	16	10	2	3	1
1997	3,918	786	12	9	1	2	..
1998	1,885	754	5	3	1	1	0
1999	570	488	3	2	0	1	0
2000	1,397	420	3	2	0	1	0
2001	809	..	..	..	..	..	..

주 : 2) 수협, 축협, 신한비자, 동화카드, 동남카드, 대동비자, 광주비자, 제주비자, 강원비자, 충북비자, 국민카드, 장은카드, 외환카드, 하나비자, 보람비자, 평화비자 카드사를 통한 결제대금 조회, 이용내역 조회, 카드조회, 현금서비스 업무, 안내업무, 거래승인 업무 처리분

3) 2001년부터 ARS를 통한 환율안내, 금융상품안내, 통지서비스, 계좌이체, 지로이용안내 서비스 중단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통 지 서 비 스 <sup>4)</sup>					자 기 앞 수 표 조 회					계 좌 이 체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3	378	..	..	..	-	295	114	19	162	-	54	18	7	29	-
1994	270	198	0	72	-	580	317	39	224	-	79	38	11	30	-
1995	232	197	0	35	-	1,262	928	80	250	4	95	58	16	20	1
1996	184	159	0	25	-	1,702	1,198	114	376	14	189	130	19	35	5
1997	429	156	0	21	252	3,864	2,629	311	871	53	249	184	26	30	9
1998	119	83	0	13	23	4,976	3,284	365	1,248	79	230	165	21	32	12
1999	115	80	0	9	26	6,934	4,346	350	2,107	131	142	92	8	28	14
2000	61	61	0	-	-	8,889	6,038	402	2,309	140	56	35	3	11	7
2001	..	..	..	..	..	11,613	6,232	531	4,681	169	..	..	..	..	..

주 : 4) 수시통지, 건수통지, 영업종료후 통지, 익영업일 통지, 환율통지, PC 조회통지분임

(계 속)

(단위 : 건)

연 중	가 계 수 표 조 회 <sup>5)</sup>					지로 이용 안내 <sup>6)</sup>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1995	3,195	2,364	173	609	49	1,635
1996	2,252	1,659	171	416	6	1,543
1997	1,869	1,548	74	243	4	1,370
1998	1,353	1,070	75	204	4	1,351
1999	744	585	28	130	1	873
2000	546	358	39	147	2	1,246
2001	308	229	27	47	5	..

주 : 5) 1994년 10월부터 실시

6) 1994년 12월부터 실시

### 라. CMS공동망<sup>1)</sup>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계		입금이체		출금이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6	2,826	6,680	891	512	1,935	6,168
1997	44,924	48,894	2,345	3,389	42,579	45,505
1998	103,533	85,264	2,469	7,029	101,064	78,235
1999	172,717	145,816	8,181	27,017	164,536	118,799
2000	289,881	324,658	26,105	84,570	263,776	240,088
2001	438,787	629,433	48,724	164,191	390,063	465,242
2002	593,753	1,051,085	65,380	251,179	528,373	799,906
2003	576,247	863,868	60,745	228,933	515,502	634,935
2004	630,764	727,112	65,777	218,747	564,987	508,365

주 : 1) 1996년 8월부터 실시

마. 전자금융공동망<sup>1)</sup>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총 이용 실적											
	건 수						금 액 <sup>2)</sup>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2001	258,130	156,578	19,751	73,643	8,158	-	7,124,912	5,514,928	466,309	994,626	149,049	-
2002	513,764	345,778	34,185	122,437	10,329	1,035	20,248,725	16,292,026	1,031,078	2,509,781	400,369	15,471
2003	641,368	429,613	40,553	151,675	13,068	6,458	28,092,897	22,754,339	1,233,538	3,310,959	696,336	97,725
2004	756,579	500,346	45,275	185,636	13,424	11,898	31,798,107	25,704,477	1,442,347	3,923,501	534,669	193,113

주 : 1) 2001년 4월부터 가동

2) 조회실적 및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실적을 제외한 계좌이체 실적 기준

(계 속)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계좌이체 <sup>3)</sup>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2001	155,228	102,042	12,848	38,466	1,872	-	7,124,884	5,514,900	466,309	994,626	149,049	-
2002	406,012	283,771	27,305	88,739	5,172	1,025	20,233,063	16,286,859	1,029,961	2,500,403	400,369	15,471
2003	519,407	357,332	32,223	115,154	8,385	6,312	28,048,677	22,722,325	1,228,555	3,303,736	696,336	97,725
2004	628,097	423,962	35,750	147,676	9,243	11,466	31,749,928	25,668,298	1,434,547	3,919,301	534,669	193,113

주 : 3) 타행간 계좌이체 실적

(계 속)

(단위 : 천건, 억원)

연 중	물품대금 무선결제시스템 <sup>4)</sup>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2001	6	6	-	-	28	28	-	-
2002	5,615	1,381	388	3,846	15,662	5,167	1,117	9,378
2003	12,971	8,763	1,763	2,445	44,220	32,014	4,983	7,223
2004	13,671	9,511	2,940	1,220	48,179	36,179	7,800	4,200

주 : 4) 2001년 9월부터 가동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잔 액 조 회						무통장거래내역조회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및 외은지점	저축 기관
2001	43,175	22,944	3,379	13,200	3,652	-	47,290	24,589	2,971	17,267	2,463	-
2002	40,045	23,773	3,017	10,409	2,839	7	46,934	26,760	2,765	15,317	2,089	3
2003	42,359	24,955	2,989	11,858	2,461	96	46,344	25,353	2,585	16,454	1,902	50
2004	43,240	25,293	2,847	12,719	2,098	283	48,020	26,467	2,530	17,178	1,696	149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신용카드관련업무				자기앞수표조회					기 타 (단위 : 건)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계	시 중	지 방	특 수	우체국
2001	809	760	21	28	11,613	6,232	531	4,681	169	8,813	5,433	533	1,107	1,740
2002	124	73	31	20	15,033	10,020	679	4,105	229	886	273	206	337	70
2003	38	14	16	8	20,249	13,196	977	5,756	320	146	50	12	65	19
2004	20	8	9	3	23,531	15,105	1,199	6,840	387					

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단위 : 건, 억원)

연 중	전자외상매출채권 <sup>1)</sup>							
	건 수				금 액			
	계	시 중	지 방	특 수	계	시 중	지 방	특 수
2002	9,774	9,774	-	-	4,431	4,431	-	-
2003	36,229	30,364	-	5,865	18,937	17,522	-	1,415
2004	57,069	48,743	340	7,986	28,917	26,494	11	2,412

주 : 1) 2002년 3월부터 가동

한국은행

9. 은행공동망의 외부정보망과의 접속 현황

(단위 : 개, 건)

연말	점외CD/ATM공동망 <sup>1)</sup>		경찰전산망 <sup>2)</sup>		종합무역자동화망 <sup>3)</sup>		S.W.I.F.T. <sup>4)</sup>	
	가입기관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가입은행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가입은행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가입기관수 (연말)	이용건수 (연중)
1992	-	-	-	-	-	-	57	1,754,727
1993	..	..	30	..	-	-	64	3,726,556
1994	..	3,633,000	30	326	33	99,217	66	5,324,391
1995	..	15,060,000	30	324	33	960,741	75	7,093,774
1996	..	25,265,000	30	207	34	3,358,883	82	8,572,803
1997	32	25,254,000	32	282	35	5,456,181	92	9,553,975
1998	33	23,212,000	27	480	30	4,968,426	83	9,553,985
1999	22	35,285,000	22	493	25	6,743,670	74	11,705,000
2000	23	25,295,000	21	345	24	8,088,046	72	11,204,000
2001	20	30,836,000	19	411	21	9,928,482	66	14,323,000
2002	22	39,473,000	19	866	19	10,288,914	70	15,917,708
2003	22	38,026,000	21	581	21	11,778,924	68	17,073,913
2004	22	34,321,000	21	372	20	11,599,191	68	18,280,538

주 : 1) 1993년 10월부터 가동

2) 1993년 2월 접속

3) 1994년 1월 접속, 체신금융(1996년 가입) 포함

4) 1992년 3월 접속

【 증 권<sup>1)</sup> 】

1. 전산직원 현황

가. 전산직원수 비중

(단위 : 명, %)

연 말	총 직원(A)			전 산 직 원(B)			B/A		
	계	증 권	자산운용	계	증 권	자산운용	전 체	증 권	자산운용
1992	29,411	24,037	5,374	1,309	1,017	292	4.5	4.2	5.4
1993	30,278	24,736	5,542	1,393	1,091	302	4.6	4.4	5.4
1994	33,947	28,067	5,880	1,446	1,148	298	4.3	4.1	5.1
1995	33,775	28,994	4,781	1,463	1,218	245	4.3	4.2	5.1
1996	33,581	27,663	5,918	1,560	1,241	319	4.6	4.5	5.4
1997	30,041	25,942	4,099	1,443	1,246	197	4.8	4.8	4.8
1998	26,071	21,861	4,210	1,295	1,072	223	5.0	4.9	5.3
1999	35,239	31,317	3,922	1,494	1,291	203	4.2	4.1	5.2
2000	37,026	35,776	1,250	1,869	1,777	92	5.0	5.0	7.4
2001	36,763	35,425	1,338	2,152	2,064	88	5.9	5.8	6.6
2002	33,880	32,520	1,360	1,922	1,838	84	5.7	5.7	6.2
2003	33,023	31,823	1,200	1,822	1,757	65	5.5	5.5	5.4
2004	30,109	28,958	1,151	1,651	1,593	58	5.5	5.5	5.0

나. 업무별 전산직원수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용자	행정지원 요 원	기타	
1992	1,309	169	298	594	105	25	82	36
1993	1,394	204	283	632	102	71	78	24
1994	1,446	207	340	603	87	85	97	27
1995	1,464	184	316	646	84	87	111	36
1996	1,560	203	350	709	85	89	94	30
1997	1,442	207	355	567	123	88	62	40
1998	1,295	242	322	441	55	70	56	109
1999	1,494	281	322	579	62	63	59	128
2000	1,869	401	355	806	75	57	142	33
2001	2,152	478	441	925	83	79	123	23
2002	1,922	275	411	960	60	61	136	19
2003	1,822	232	492	788	64	70	164	12
2004	1,651	189	565	667	25	53	145	7

1) 1998년까지는 투신운용사에 투신운용업과 수익증권판매를 동시에 수행했던 투신사도 포함

## 2. 전산사무기기 현황

### 가. 주전산기<sup>1)</sup>

(단위 : 대)

연 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1993	894	831	63	23	21	2	24	18	6
1994	1,386	1,279	107	26	24	2	23	17	6
1995	1,860	1,736	124	27	25	2	26	19	7
1996	2,276	2,124	152	23	20	3	33	27	6
1997	2,506	2,278	228	22	20	2	27	26	1
1998	2,502	2,188	314	17	17	-	41	37	4
1999	3,381	3,093	288	25	25	-	42	36	6
2000	4,042	3,919	123	109	109	-	92	87	5
2001	4,739	4,610	129	57	57	-	97	95	2
2002	3,784	3,689	95	34	34	-	72	70	2
2003	3,874	3,777	97	35	35	-	73	71	2
2004	4,470	4,358	112	38	37	1	350	349	1

(계 속)

(단위 : 대)

연 말	중 형			소 형			초 소 형		
	소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소계	증권	자산운용
1993	21	16	5	80	77	3	746	699	47
1994	23	18	5	79	76	3	1,235	1,144	91
1995	36	32	4	140	131	9	1,631	1,529	102
1996	53	46	7	210	203	7	1,957	1,828	129
1997	71	47	24	288	229	59	2,098	1,956	142
1998	93	60	33	221	112	109	2,130	1,962	168
1999	202	179	23	851	724	127	2,261	2,129	132
2000	433	412	21	1,424	1,371	53	1,984	1,940	44
2001	719	689	30	1,682	1,620	62	2,184	2,149	35
2002	362	345	17	953	921	32	2,363	2,319	44
2003	372	354	18	969	937	32	2,425	2,380	45
2004	550	526	24	970	923	47	2,562	2,523	39

주 : 1) 규모별[구입가(US\$)] 분류기준 :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형 : 70~150만불, 중형 : 30~70만불, 소형 : 10~30만불, 초소형 : 10만불 미만

나. 사무자동화기기

(단위 : 대)

연 말	단 말 기 <sup>1)</sup>			개인용컴퓨터(PC) <sup>2)</sup>			휴대용노트북			PDA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증 권	자산 운용	계	증 권	자산 운용
1993	14,790	13,465	1,325	11,402	10,356	1,046	..	..	..	..	..	..
1994	13,260	11,886	1,374	23,933	21,278	2,655	..	..	..	..	..	..
1995	10,248	8,751	1,497	31,641	27,761	3,880	..	..	..	..	..	..
1996	5,301	4,035	1,266	39,474	35,218	4,256	..	..	..	..	..	..
1997	2,414	2,254	160	42,224	37,806	4,418	..	..	..	..	..	..
1998	1,919	1,675	244	43,369	37,873	5,496	..	..	..	..	..	..
1999	697	680	17	60,520	55,440	5,080	..	..	..	..	..	..
2000	1,095	1,063	32	91,197	89,661	1,536	..	..	..	..	..	..
2001	500	480	20	90,947	89,455	1,492	..	..	..	..	..	..
2002	398	358	40	80,217	78,698	1,519	3,257	3,037	220	1,514	1,514	-
2003	137	60	77	83,307	81,863	1,444	2,930	2,646	284	216	180	36
2004	291	246	45	76,131	74,819	1,312	3,622	3,353	269	3,366	3,366	0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 겸용 PC 포함

3. 전산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2	16,886	1,204	7.1	236	968	395	119	107	236	111
1993	18,788	1,536	8.2	449	1,087	416	134	116	283	139
1994	25,196	2,067	8.2	822	1,245	439	180	137	363	127
1995	26,033	3,147	12.1	1,197	1,950	394	186	527	660	184
1996	25,341	3,012	11.9	1,298	1,714	551	192	309	447	215
1997	28,166	2,691	9.6	860	1,831	462	258	322	518	270
1998	23,370	2,737	11.7	988	1,749	330	303	325	529	262
1999	38,972	6,608	17.0	3,435	3,173	867	272	487	953	593
2000	53,767	9,394	17.5	5,116	4,278	875	481	1,096	1,220	606
2001	47,675	8,969	18.8	3,737	5,232	1,233	711	1,261	1,240	786
2002	46,100	7,188	15.6	2,149	5,039	1,015	746	1,278	1,360	640
2003	44,824	6,707	15.0	1,665	5,042	880	911	1,153	1,185	913
2004	42,711	5,302	12.4	981	4,321	534	927	1,029	1,197	634

#### 4.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 가. 폰 트레이딩

(단위 : 개, 천건)

연 말	실시기관			이용실적					
	계	증권	자산 운용	계	조회 <sup>1)</sup>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통지 및 안내	기타
1990	1	1	-	500	500	-	-	..	-
1991	1	1	-	1,000	1,000	-	-	..	-
1992	2	2	-	2,000	2,000	-	-	..	-
1993	2	2	-	3,157	3,040	-	13	..	105
1994	4	3	1	4,424	4,173	12	19	..	221
1995	7	5	2	6,482	6,171	25	16	..	271
1996	12	10	2	12,226	12,105	27	27	..	67
1997	15	13	2	78,082	77,847	94	109	..	32
1998	13	10	3	142,217	141,414	68	716	..	19
1999	15	13	2	193,851	175,121	98	18,491	..	141
2000	25	25	-	133,316	107,636	435	24,362	..	883
2001	21	21	-	71,941	46,205	278	23,356	..	2,101
2002	27	27	-	316,244	271,127	685	17,269	846	26,317
2003	28	28	-	230,982	215,482	558	7,903	567	6,471
2004	29	29	-	324,436	301,635	694	20,936	865	306

주 : 1) 잔액조회, 시세조회, 금융상품안내 등

##### 나. 인터넷 트레이딩

##### 1) HTS(Home Trading System)

(단위 : 개, 명, 천건)

연 말	실시기관 <sup>1)</sup>	이용고객수		이용실적				
		등록고객 (연말)	실이용고객 (연중)	계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타
2002	30	3,436,519	1,522,171	5,073,756	4,701,039	3,898	339,502	4,266
2003	33	4,661,548	1,666,381	5,242,146	4,668,190	4,519	521,506	5,597
2004	33	5,283,511	1,289,258	5,570,660	5,035,674	5,983	527,444	1,599

주 : 1) 증권회사만 실시중

##### 2) WTS(Web Trading System)

(단위 : 개, 명, 천건)

연 말	실시기관 <sup>1)</sup>	이용고객수		이용실적				
		등록고객 (연말)	실이용고객 (연중)	계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주문	기타
2002	28	4,041,198	1,112,037	441,703	392,896	406	48,081	320
2003	25	4,223,012	939,113	106,334	90,045	390	15,894	5
2004	23	4,069,944	354,719	63,590	51,701	478	11,408	3

주 : 1) 증권회사만 실시중

다. 모바일 트레이딩

1) 실시기관수 및 이용고객수

(단위 : 개, 명)

연 말	기기종류	실시기관 <sup>1)</sup>	실이용고객수 (연중)
2002	전용단말기	22	154,730
	휴대전화	16	13,918
	PDA	9	10,492
	계		179,140
2003	전용단말기	26	154,044
	휴대전화	19	40,726
	PDA	14	17,954
	계		212,724
2004	전용단말기	23	99,369
	휴대전화	20	40,445
	PDA	18	15,864
	계		155,678

주 : 1) 증권회사만 실시중

2)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기기종류	이 용 실 적				
		계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2r	전용단말기	63,538	47,589	3	9,377	6,569
	휴대전화	5,880	4,209	0	1,350	321
	PDA	7,044	6,063	6	941	34
	계	76,462	57,861	9	11,668	6,924
2003r	전용단말기	57,676	42,659	268	9,118	5,631
	휴대전화	20,933	19,118	1	1,520	294
	PDA	24,764	22,866	8	1,856	34
	계	103,373	84,643	277	12,494	5,959
2004	전용단말기	59,030	47,611	19	9,041	2,359
	휴대전화	56,276	55,085	16	1,175	-
	PDA	32,405	30,853	9	1,543	-
	계	147,711	133,548	44	11,795	2,359

## 5. 자체 CD/ATM<sup>1)</sup>

### 가. 설치현황

(단위 : 대)

연 말	합 계			C D			A T M		
	계	증 권	자산운용	소 계	증 권	자산운용	소 계	증 권	자산운용
1990	36	18	18	36	18	18	-	-	-
1991	38	18	20	38	18	20	-	-	-
1992	43	18	25	43	18	25	-	-	-
1993	48	18	30	48	18	30	-	-	-
1994	50	18	32	50	18	32	-	-	-
1995	62	18	44	59	18	41	3	-	3
1996	67	18	49	59	18	41	8	-	8
1997	70	5	65	52	5	47	18	-	18
1998	99	55	44	85	55	30	14	-	14
1999	217	158	59	203	158	45	14	-	14
2000	618	618	-	424	424	-	194	194	-
2001	700	700	-	407	407	-	293	293	-
2002	415	415	-	415	415	-	-	-	-
2003	388	388	-	388	388	-	-	-	-
2004	287	287	-	287	287	-	-	-	-

### 나. 이용실적

(단위 : 건)

연 중	계	현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기 타
1990	18,390	13,560	4,830	-	-
1991	20,450	15,050	5,400	-	-
1992	23,429	17,719	5,710	-	-
1993	29,120	23,059	6,061	-	-
1994	28,563	21,889	6,674	-	-
1995	55,316	40,050	13,876	1,390	-
1996	61,359	43,850	15,828	1,681	-
1997	164,527	96,678	55,771	1,118	10,960
1998	207,341	148,718	33,654	3,471	21,498
1999	532,495	279,203	236,063	9,119	8,110
2000	1,127,585	396,152	532,512	90,888	108,033
2001	1,765,253	878,430	274,000	168,823	444,000
2002	1,866,756	855,080	843,056	157,746	10,874
2003	730,000	380,000	210,000	130,000	10,000
2004	384,000	238,000	9,000	120,000	16,000

1) 증권회사가 증권객장에 설치한 CD/ATM으로 CD공동망을 이용하는 CD/ATM에는 포함되지 않음

## 6. 증권 공동정보망

### 가. 이용기관수

(단위 : 개)

연 말	공동온라인 시스템 <sup>1)</sup>	주식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선물거래 시스템	코스닥주식 매매시스템	증권정보 시스템	증권망	증권 ARS
1990	33	25	-	-	-	33	15
1991	39	31	-	-	-	39	16
1992	40	32	-	-	-	40	16
1993	43	32	-	-	-	43	17
1994	47	32	-	-	86	47	17
1995	47	33	-	-	87	47	16
1996	57	36	32	33	125	60	13
1997	59	39	39	39	..	62	19
1998	51	41	41	41	..	53	24
1999	80	40	38	44	..	273	23
2000	50	51	47	63	208	715	24
2001	33	51	53	63	230	651	7
2002	2	49	47	59	278	511	5
2003	-	49	46	65	582	450	5
2004	-	48	55	55	273	498	5

주 : 1) 2002년 12월 종료

(계 속)

(단위 : 개)

연 말	BASE 21 시스템 <sup>2)</sup>	인터넷 HTS	주가지수 옵션시스템	채권매매 시스템	장외채권 시스템	OTC-BB 시스템	개별주식 옵션시스템
2002	36	8	47	180	68	46	29
2003	36	8	46	143	71	45	29
2004	40	11	55	178	37	41	24

주 : 2) 2002년 2월부터 가동

나.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연 중	공동온라인 시스템	주식매매 시스템	주가지수 선물시스템	코스닥주식 매매시스템	증권정보 시스템	증권 ARS
1990	280,500	25,863	—	1	49,476	27,590
1991	397,250	27,204	—	1	50,737	33,202
1992	488,217	39,320	—	14	70,495	45,871
1993	595,292	52,504	—	20	92,044	54,585
1994	635,892	57,319	—	23	98,464	71,957
1995	506,532	38,238	—	32	67,527	57,434
1996	529,819	50,857	48	136	93,735	47,862
1997	756,806	97,381	2,684	1,269	..	28,200
1998	185,597	150,270	10,814	1,021	..	4,864
1999	319,617	434,492	14,690	82,969	..	29,974
2000	683,818	471,651	23,902	372,463	..	14,907
2001	904,434	321,250	23,697	204,774	..	348
2002	99,122	192,594	12,285	148,156	..	28
2003	-	139,600	14,338	265,074	-	-
2004	-	294,393	34,262	210,779	-	-

(계 속)

(단위 : 천건)

연 말	BASE 21 시스템	HTS 시스템	주가지수 옵션시스템	채권매매 시스템	장외채권 시스템	OTC-BB 시스템	개별주식 옵션시스템
2002	291,211	4,565	56,657	128	440	166	2
2003	124,404	11,883	68,597	162	548	44	0.2
2004	144,741	8,028	183,712	149	598	125	25

【 보 험 】

1. 전산직원 현황

가. 전산직원 비중

(단위 : 명, %)

연말	총 직원(A)			전 산 직 원(B)			B/A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1991	60,804	40,564	20,240	1,419	929	490	2.3	2.3	2.4
1992	66,557	45,541	21,016	1,459	1,014	445	2.2	2.2	2.1
1993	70,946	49,353	21,593	1,616	1,162	454	2.3	2.4	2.1
1994	74,567	51,945	22,622	1,708	1,242	466	2.3	2.4	2.1
1995	80,092	54,826	25,266	1,986	1,306	680	2.5	2.4	2.7
1996	85,359	55,097	30,262	1,995	1,285	710	2.3	2.3	2.3
1997	84,664	52,681	31,983	1,671	1,126	545	2.0	2.1	1.7
1998	64,990	39,102	25,888	1,403	978	425	2.2	2.5	1.6
1999	61,617	36,557	25,060	1,287	879	408	2.1	2.4	1.6
2000	56,427	32,841	23,586	1,269	740	529	2.2	2.3	2.2
2001	50,509	29,058	21,451	1,245	740	505	2.5	2.5	2.4
2002	47,969	26,559	21,410	1,325	791	534	2.8	3.0	2.5
2003	48,392	27,130	21,262	1,400	841	559	2.9	3.1	2.6
2004	45,694	25,452	20,242	1,354	828	526	3.0	3.3	2.6

나. 업무별 전산직원수

1) 전 체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용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1	1,419	181	263	780	63	29	78	25
1992	1,459	194	277	786	56	34	70	42
1993	1,616	211	320	860	60	42	87	36
1994	1,708	238	323	896	63	57	90	41
1995	1,986	309	392	973	69	84	113	46
1996	1,995	339	375	948	60	113	100	60
1997	1,671	315	357	726	47	93	99	34
1998	1,403	273	299	606	31	76	104	14
1999	1,287	292	322	516	32	44	77	5
2000	1,269	291	266	528	32	36	100	16
2001	1,245	270	235	505	30	69	111	25
2002	1,325	244	321	516	55	49	133	7
2003	1,400	266	354	516	53	42	145	24
2004	1,354	204	272	557	59	40	181	41

2) 생명보험회사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용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1	929	119	155	520	45	21	49	20
1992	1,014	135	178	556	46	22	47	30
1993	1,162	155	203	642	46	29	59	28
1994	1,242	179	229	659	46	40	59	30
1995	1,306	205	262	648	47	42	70	32
1996	1,285	225	262	597	47	51	62	41
1997	1,126	210	245	491	37	56	67	20
1998	978	187	234	398	30	50	69	10
1999	879	203	236	340	31	23	41	5
2000	740	169	161	309	20	18	60	3
2001	740	174	133	299	24	41	63	6
2002	791	146	199	297	44	23	80	2
2003	841	162	209	308	40	23	94	5
2004	828	124	156	348	45	29	116	10

3) 손해보험회사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용자	행정지원 요 원	기 타	
1991	490	62	108	260	18	8	29	5
1992	445	59	99	230	10	12	23	12
1993	454	56	117	218	14	13	28	8
1994	466	59	94	237	17	17	31	11
1995	680	104	130	325	22	42	43	14
1996	710	114	113	351	13	62	38	19
1997	545	105	112	235	10	37	32	14
1998	425	86	65	208	1	26	35	4
1999	408	89	86	176	-	21	36	-
2000	529	122	105	219	12	18	40	13
2001	505	96	102	206	6	28	48	19
2002	534	98	122	219	11	26	53	5
2003	559	104	145	208	13	19	51	19
2004	526	80	116	209	14	11	65	31

## 2. 전산사무기기 현황

### 가. 주전산기<sup>1)</sup>

(단위 : 대)

연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중 형			소 형			초 소 형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1991	243	195	48	..	..	..	..	..	..	..	..	..	..	..	..	..	..	..
1992	249	217	32	12	8	4	17	9	8	25	19	6	176	170	6	19	11	8
1993	367	259	108	15	10	5	18	10	8	29	23	6	208	203	5	97	13	84
1994	421	284	137	15	10	5	21	12	9	25	20	5	235	227	8	125	15	110
1995	406	255	151	17	12	5	23	11	12	34	20	14	192	185	7	140	27	113
1996	530	325	205	25	14	11	26	13	13	54	24	30	203	197	6	222	77	145
1997	840	257	583	24	15	9	28	16	12	59	30	29	151	72	79	578	124	454
1998	770	221	549	28	16	12	20	12	8	77	35	42	91	62	29	554	96	458
1999	990	440	550	29	22	7	32	12	20	92	50	42	121	54	67	716	302	414
2000	1,385	565	820	31	22	9	29	16	13	79	35	44	299	84	215	947	408	539
2001	1,674	717	957	36	23	13	24	14	10	105	55	50	392	136	256	1,117	489	628
2002	2,026	1,090	936	33	21	12	130	110	20	398	297	101	653	165	488	812	497	315
2003	2,302	1,247	1,055	34	21	13	132	111	21	416	304	112	760	212	548	960	599	361
2004	2,242	1,418	824	47	32	15	58	30	28	371	142	229	468	407	61	1,298	807	491

주: 1) '92년부터 규모별 [구입가(US\$)기준] 로 구분하여 집계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형 : 70~150만불 미만      중형 : 30~70만불 미만  
 소형 : 10~30만불 미만      초소형 : 10만불 미만

### 나. 단말기/개인용 컴퓨터(PC)

(단위 : 대)

연말	단 말 기 <sup>1)</sup>			개인용컴퓨터(PC) <sup>2)</sup>			휴대용노트북			PDA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계	생보	손보
1991	2,712	399	2,313	19,208	17,074	2,134	..	..	..	..	..	..
1992	4,096	336	3,760	26,538	21,781	4,757	..	..	..	..	..	..
1993	4,054	383	3,671	35,379	28,298	7,081	..	..	..	..	..	..
1994	3,596	369	3,227	52,015	39,128	12,887	..	..	..	..	..	..
1995	3,025	218	2,807	80,011	56,123	23,888	..	..	..	..	..	..
1996	1,998	205	1,793	109,640	66,084	43,556	..	..	..	..	..	..
1997	1,043	65	978	125,777	71,863	53,914	..	..	..	..	..	..
1998	811	47	764	121,950	66,287	55,663	..	..	..	..	..	..
1999	1,188	531	657	124,940	67,402	57,538	..	..	..	..	..	..
2000	675	13	662	138,956	80,379	58,577	..	..	..	..	..	..
2001	57	28	29	153,047	89,127	63,920	..	..	..	..	..	..
2002	12	9	3	126,570	69,409	57,161	11,501	5,923	5,578	1,226	976	250
2003	13	13	0	145,369	82,201	63,168	16,458	10,670	5,788	1,276	976	300
2004	129	55	74	148,434	80,735	67,699	15,922	9,253	6,669	1,022	1,022	0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겸용 PC 포함

### 3. 전산예산 현황

#### 가. 전 체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1	35,558	1,052	3.0	314	738	251	63	132	179	113
1992	49,111	1,406	2.9	455	951	320	86	155	259	131
1993	57,617	1,716	3.0	570	1,146	328	121	172	358	167
1994	67,774	2,353	3.5	954	1,398	397	146	227	471	167
1995	84,514	3,057	3.6	1,341	1,715	435	194	306	603	177
1996	106,806	3,973	3.7	1,603	2,369	564	238	413	900	254
1997	113,177	4,640	4.1	1,682	2,957	774	338	527	1,216	102
1998	118,029	4,241	3.6	1,321	2,921	825	387	555	979	175
1999	114,195	4,989	4.4	1,987	3,002	734	480	550	1,066	173
2000	125,161	6,299	5.0	3,135	3,164	655	511	663	1,237	98
2001	123,102	7,201	5.8	3,581	3,621	755	613	791	1,296	165
2002	139,957	7,507	5.4	3,865	3,642	652	676	763	1,384	168
2003	143,019	8,067	5.6	3,952	4,115	582	773	805	1,775	180
2004	163,812	8,143	4.9	3,347	4,796	832	650	747	2,335	232

#### 나. 생명보험회사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1	27,094	716	2.6	263	453	133	45	88	89	97
1992	37,915	944	2.5	386	558	176	64	105	137	76
1993	44,710	1,160	2.6	498	662	164	90	117	213	78
1994	52,978	1,521	2.9	757	763	178	114	156	252	63
1995	64,476	1,889	2.9	998	891	172	146	208	315	51
1996	77,467	2,062	2.7	1,002	1,060	182	159	241	414	63
1997	78,969	2,050	2.6	893	1,157	182	201	252	459	62
1998	84,593	1,924	2.3	820	1,105	179	206	250	392	77
1999	81,176	2,438	3.0	1,229	1,209	184	240	249	461	75
2000	88,105	3,801	4.3	2,238	1,563	208	256	358	665	76
2001	81,792	4,354	5.3	2,512	1,842	347	323	446	615	111
2002	92,563	4,318	4.7	2,345	1,973	269	393	458	735	118
2003	94,576	4,743	5.0	2,431	2,312	350	488	516	883	75
2004	97,097	4,418	4.5	2,072	2,346	465	323	471	963	124

다. 손해보험회사

(단위 : 억원, %)

연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1	8,464	336	4.0	51	285	118	18	44	89	16
1992	11,197	463	4.1	69	393	144	22	50	121	55
1993	12,907	556	4.3	71	485	163	31	55	145	90
1994	14,796	832	5.6	197	636	220	32	71	208	104
1995	20,038	1,168	5.8	343	825	263	48	99	288	127
1996	29,339	1,911	6.5	601	1,309	382	79	172	486	190
1997	34,208	2,589	7.6	789	1,800	592	136	275	757	40
1998	33,436	2,317	6.9	501	1,816	645	181	305	587	98
1999	33,019	2,551	7.7	758	1,793	549	240	301	605	98
2000	37,056	2,497	6.7	897	1,601	446	255	305	572	22
2001	41,310	2,848	6.9	1,069	1,778	408	290	346	680	54
2002	47,394	3,190	6.7	1,521	1,669	383	283	304	648	50
2003	48,443	3,324	6.9	1,521	1,803	233	285	289	891	105
2004	66,715	3,725	5.5	1,275	2,450	367	327	276	1,372	108

#### 4.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 가. 텔레마케팅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기관			이용실적							
	계	생보	손보	계	보험계약 조회	보험계약 체결	대출관련 조회	대출계약 체결	상품안내	기타	
1991	5	2	3	1,359	1,105	..	9	..	18	227	
1992	7	2	5	2,519	2,129	..	16	..	32	341	
1993	8	2	6	2,165	1,794	..	14	..	25	333	
1994	11	3	8	711	468	..	8	..	11	223	
1995	12	4	8	1,354	999	..	39	..	22	295	
1996	16	8	8	2,171	1,735	..	36	..	28	372	
1997	18	11	7	3,953	1,141	..	1,855	..	483	475	
1998	15	10	5	5,075	3,537	..	559	..	184	795	
1999	16	11	5	5,312	2,429	..	1,067	..	818	998	
2000	14	9	5	12,028	6,614	..	2,498	..	1,124	1,792	
2001	25	14	11	20,296	14,287	..	2,987	..	860	2,163	
2002	31	20	11	54,191	19,372	1,324	16,782	1,384	5,017	10,313	
2003	33	19	14	85,567	48,577	1,678	7,600	2,731	14,529	10,452	
2004	28	16	12	66,148	19,511	2,063	5,392	1,281	18,825	19,176	

##### 나. 인터넷 마케팅

(단위 : 개, 명, 천건)

연말	실시기관			이용실적							등록 고객수 (연말)	실이용 고객수 (연중)
	계	생보	손보	계	정보 조회	자금 이체	보험 체결	대출 체결	기타			
2002	27	15	12	37,037	34,980	267	571	567	651	7,252,620	2,886,991	
2003	28	16	12	67,963	64,570	503	1,165	804	921	13,535,532	3,534,481	
2004	26	14	12	69,709	66,303	479	762	968	1,198	10,528,381	5,694,242	

## 5.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실적

### 가. 조회 및 배정시스템

(단위 : 천건)

연 중	자 동 차 보 험					
	책임보험 가입회사	종합보험개별 할인·할증	사고피해자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보험가입경력	인수거부물건 배정
1994	5,520	5,400	72	-	-	-
1995	4,051	11,031	181	100	-	-
1996	4,918	12,134	119	199	-	0.071
1997	10,523	16,948	754	492	-	20
1998	11,352	35,201	659	955	-	1
1999	19,489	155,267	940	192	-	3
2000	11,240	220,550	1,560	340	-	110
2001	591	372,664	1,662	373	-	898 <sup>1)</sup>
2002	1,352	569,905	1,795	271	23,405	317
2003	380	558,014	2,248	278	8,284	302
2004	122	488,584	3,073	307	7,102	245

주 : 1) 보험사별 인수거부물건 판정기준 강화로 이용실적 급증

(계 속)

(단위 : 천건)

연 중	기타			
	장기보험계약자조회	보유자코드 및 정비공장코드 조회	근재보험 계약자별손해율조회	인보험통합
1998	1,653	157	51	-
1999	1,426	156	66	-
2000	10,100	130	90	-
2001	11,039	981	70	-
2002	41,722	99,149	86	5
2003	19,665	81	106	7,694
2004	14,122	102	68	12,187

### 나. 통보 및 EDI 시스템

(단위 : 천건)

연 중	생명보험 거절체 정보교환	적하·선박 보험 공동인수 자료교환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	자배책 미가입 통 보	적하보험계약 및 배서EDI
1996	20	9	-	1,528	84
1997	21	100	-	1,282	160
1998	..	117	-	1,264	235
1999	..	10	-	1,228	394
2000	..	190	..	1,200	340
2001	..	198	..	1,279	213
2002	..	211	2,200	7,132	290
2003	..	199	2,886	7,774	241
2004	..	250	2,350	3,393	286

## 【기타 관련기관】

### 1. 전산직원 현황

#### 가. 전산직원 비율

(단위 : 명, %)

연말	총 직원 (A)				전산직원 (B)				전산직원 비율 (B/A)			
	계	은행계 카드사 <sup>1)</sup>	우체국 및 기금 <sup>2)</sup>	관련 기관 <sup>3)</sup>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6	30,084	2,932	15,861	11,291	2,254	298	734	1,222	7.5	10.2	4.6	10.8
1997	31,049	2,906	16,886	11,257	2,025	310	599	1,116	6.5	10.7	4.9	9.9
1998	21,009	2,428	10,370	8,211	1,754	268	473	1,013	8.3	11.0	4.6	12.3
1999	20,214	2,314	9,667	8,233	1,757	256	462	1,039	8.7	11.1	4.8	12.6
2000	22,872	2,540	11,721	8,611	1,900	294	427	1,179	8.3	11.6	3.6	13.7
2001	23,201	3,047	11,308	8,846	1,850	336	312	1,202	8.0	11.0	2.8	13.6
2002	25,404	4,602	11,599	9,203	2,004	480	316	1,208	7.9	10.4	2.7	13.1
2003	23,030	3,103	10,644	9,283	2,133	498	329	1,306	9.3	16.0	3.1	14.1
2004	18,840	988	11,932	5,920	1,762	171	327	1,264	9.4	17.3	2.7	21.4

주 : 1) BC카드, 신한카드, 산은캐피탈

2) 우체국금융,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3) 은행관련(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증권관련(한국증권전산, 증권거래소 등) 및 보험관련(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등)기관

#### 나. 업무별 전산직원

##### 1) 전 체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원	기 타	
1996	2,254	221	323	666	173	93	307	248	223
1997	2,025	155	285	779	188	108	35	214	261
1998	1,754	152	251	585	142	100	191	133	200
1999	1,757	197	233	491	166	82	206	182	200
2000	1,900	219	358	749	161	90	34	212	77
2001	1,850	226	354	754	145	82	28	168	93
2002	2,004	211	503	749	114	52	22	228	125
2003	2,133	260	570	702	151	60	25	283	82
2004	1,762	172	577	511	140	57	-	220	85

2) 은행계 카드사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행정지원 요원	기 타	
1996	298	34	58	146	27	11	17	5
1997	310	33	58	161	26	14	17	1
1998	268	25	60	136	25	6	16	-
1999	256	27	52	120	32	9	12	4
2000	294	44	75	141	12	8	14	-
2001	336	82	77	152	8	5	12	-
2002	480	47	118	247	6	6	48	8
2003	498	48	129	227	29	4	61	-
2004	171	10	66	57	24	2	10	2

3) 우체국금융 및 기금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원	기 타	
1996	734	32	34	95	27	23	191	123	209
1997	599	31	28	115	17	23	-	137	248
1998	473	38	22	91	15	32	-	80	195
1999	462	49	18	78	15	28	-	80	194
2000	427	32	52	143	15	27	-	82	76
2001	312	20	30	112	11	13	-	36	90
2002	316	18	27	109	12	12	-	48	90
2003	329	56	54	91	12	16	-	37	63
2004	327	46	54	91	14	19	-	41	62

4) 관련기관

(단위 : 명)

연 말	전 산 직 원								
	관리자	시스템 분석, 설계자	프로 그래머	기기 조작자	통신망 운영자	입력요원	행정지원 요원	기 타	
1996	1,222	155	231	425	119	59	116	108	9
1997	1,116	91	199	503	145	71	35	60	12
1998	1,013	89	169	358	102	62	191	37	5
1999	1,039	121	163	293	119	45	206	90	2
2000	1,179	143	231	465	134	55	34	116	1
2001	1,202	124	247	490	126	64	28	120	3
2002	1,208	146	358	393	96	34	22	132	27
2003	1,306	156	387	384	110	40	25	185	19
2004	1,264	116	457	363	102	36	-	169	21

## 2. 전산사무기기 현황

### 가. 주전산기<sup>1)</sup>

(단위 : 대)

연 말	합 계				초 대 형				대 형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6	427	55	109	263	61	8	2	51	60	15	2	43
1997	463	59	113	291	24	10	3	11	50	2	2	46
1998	425	64	120	241	21	3	4	14	30	13	-	17
1999	579	59	186	334	24	5	3	16	23	5	1	17
2000	941	126	238	577	50	8	1	41	42	5	1	36
2001	2,261	280	247	1,734	297	14	1	282	115	7	2	106
2002	3,113	636	270	2,207	912	18	-	894	155	17	4	134
2003	3,243	662	289	2,292	916	20	-	896	165	23	4	138
2004	1,859	77	338	1,444	68	19	-	49	88	4	23	61

(계 속)

(단위 : 대)

연 말	중 형				소 형				초 소 형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6	62	2	1	59	59	7	2	50	185	23	102	60
1997	68	8	-	60	60	11	2	47	261	28	106	127
1998	68	7	1	60	60	11	5	44	246	30	110	106
1999	75	7	1	67	202	13	71	118	255	29	110	116
2000	106	11	45	50	332	79	80	173	411	23	111	277
2001	115	17	46	52	741	79	15	647	993	163	183	647
2002	257	56	36	165	809	207	6	596	980	338	224	418
2003	268	61	39	168	849	210	14	625	1,045	348	232	465
2004	501	13	23	465	402	10	27	365	800	31	265	504

주 : 1) 규모별[구입가(US\$)] 분류기준

초대형 : 150만불 이상, 대형 : 70~150만불, 중형 : 30~70만불, 소형 : 10~30만불, 초소형 : 10만불 미만

### 나. 사무자동화기기

(단위 : 대)

연 말	단 말 기 <sup>1)</sup>				개인용컴퓨터(PC) <sup>2)</sup>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관련 기관
1996	5,651	1,180	-	4,471	19,698	2,988	9,120	7,590
1997	2,061	864	-	1,197	22,494	3,955	9,280	9,259
1998	3,839	404	2	3,433	25,302	5,041	10,894	9,367
1999	3,431	-	-	3,431	25,846	5,489	11,353	9,004
2000	3,590	-	-	3,590	31,283	7,211	11,796	12,276
2001	3,598	-	-	3,598	34,425	11,133	12,128	11,164
2002	4,065	490	1	3,574	44,089	22,156	15,080	6,853
2003	4,091	240	-	3,851	45,184	24,898	13,118	7,168
2004	3,406	241	-	3,165	24,926	3,301	14,322	7,303

주 : 1) PC겸용 단말기 제외

2) 단말기 겸용 PC 포함

(계 속)

(단위 : 대)

연 말	휴대용노트북				PDA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기타 기관	계	은행계 카드사	우체국 및 기금	기타 기관
2002	2,285	991	265	1,029	33	5	5	23
2003	2,244	838	322	1,084	59	-	5	54
2004	1,788	130	310	1,348	58	-	6	52

### 3. 전산예산 현황

#### 1) 전 체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6	17,377	2,782	16.0	449	2,332	826	183	215	578	530
1997	18,750	2,466	13.2	445	2,022	753	188	181	790	110
1998	20,139	2,799	13.9	462	2,336	817	217	161	1,001	140
1999	25,372	3,115	12.3	1,030	2,084	611	247	197	706	323
2000	28,890	4,389	15.2	1,992	2,396	942	251	222	819	162
2001	36,432	5,566	15.3	1,872	3,694	1,631	499	362	979	223
2002	45,325	6,732	14.9	2,830	3,902	1,153	549	400	1,448	352
2003	41,248	5,712	13.8	1,678	4,034	1,030	597	521	1,579	307
2004	35,825	4,708	13.1	1,029	3,679	805	482	410	1,707	275

#### 2) 은행계 카드사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6	3,495	468	13.4	226	242	69	38	13	85	38
1997	3,841	581	15.1	288	294	60	50	25	134	26
1998	3,579	453	12.7	200	253	21	59	18	132	23
1999	4,030	405	10.0	201	204	21	77	18	82	8
2000	4,926	875	17.8	548	327	23	86	44	164	9
2001	7,665	1,430	18.7	968	462	25	109	62	256	11
2002	13,922	2,743	19.7	1,857	886	100	185	116	391	92
2003	11,507	1,784	15.5	844	939	55	264	164	368	88
2004	4,944	466	9.4	135	331	3	45	18	155	110

3) 우체국금융 및 기금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6	7,066	652	9.2	95	557	174	63	88	133	98
1997	7,507	495	6.6	68	427	176	57	55	123	17
1998	10,345	695	6.7	29	665	266	73	52	241	32
1999	14,819	578	3.9	65	513	189	60	86	148	30
2000	16,618	666	4.0	69	596	525	2	13	37	20
2001	20,705	917	4.4	87	830	533	95	87	78	37
2002	21,597	735	3.4	116	618	333	140	27	78	40
2003	19,533	665	3.4	74	591	299	91	31	128	42
2004	19,583	794	4.1	111	683	340	106	33	182	22

4) 관련기관

(단위 : 억원, %)

연 도	총예산	전 산 예 산(A+B)								
		전산 예산 비율	전산 자본 예산 (A)	전 산 업 무 비						
				소계(B)	기기 사용료 등	보수 정비료	통신 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1996	6,815	1,661	24.4	128	1,533	584	82	114	360	394
1997	7,401	1,389	18.8	89	1,301	517	81	102	533	68
1998	6,215	1,652	26.6	233	1,418	529	85	90	628	86
1999	6,522	2,132	32.7	765	1,367	401	111	93	476	286
2000	7,346	2,849	38.8	1,375	1,473	395	163	165	617	133
2001	8,062	3,219	39.9	817	2,402	1,074	295	213	645	175
2002	9,805	3,255	33.2	857	2,398	720	224	256	978	221
2003	10,209	3,263	32.0	759	2,504	676	242	327	1,082	177
2004	11,298	3,448	30.5	783	2,665	462	331	359	1370	143

## 2. 금융정보화 연혁

1983. 5.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보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비서실장) 발족
1983. 8. 국무총리실은 국가기관 등의 연간 전산화추진계획에 대해 정보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지시
- 1983.10. 정보산업육성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구성운영 제안 발표  
○ 국가기간전산망을 5개망(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으로 구성  
○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자원 통합 운영 등
1984. 4. 재무부 기획관리실에서 금융전산망 문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인수  
○ 재무부장관은 금융전산망 업무추진을 한국은행이 담당하도록 요청
1984. 5. ~ 6. 금융전산망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1984. 9. 금융전산위원회 발족  
○ 의장 : 한국은행 총재, 위원 : 은행감독원장 및 전국규모 은행장급
- 1984.11. 금융전산위원회 사무국 발족
19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관리원 설립
1987. 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발족
1988. 2.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의결
1988. 3. 매매체결 시스템 가동(증권)
1988. 7. CD공동망 가동
1989. 4. ARS공동망 가동
- 1989.12. 타행환공동망, ARS 공동이용시스템 가동(증권)
1990. 6. SUCCESS시스템 가동(증권)
1992. 1. 금융전산망 제2단계 사업계획 의결, 콜거래정보시스템 가동(투금)
1992. 3. 금융공동망센터와 SWIFT(1992. 3), 경찰전산망(1993. 2), 무역자동화망(1994. 1)과 연결
- 1992.1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회사 조회시스템 가동(보험)
1993. 6.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3.10.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4.12. 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 1995. 5. 무역자동화망사업(적하보험 EDI),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물건 배정시스템,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조회시스템, 생명보험 거절체 자료 교환시스템 가동(보험)
- 1995.12. 장외시장 시스템 가동(증권), 자배책 미가입자 통보업무시스템 가동(보험)
- 1996. 1. 선물 트레이딩 시스템 가동(증권)
- 1996. 2. 직불카드공동망 가동
- 1996. 5. 주가지수 선물시스템 가동(증권)
- 1996. 6.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발족
- 1996. 8. CMS공동망 가동
- 1996.11.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체(한은 총재→부총재), 채권업무 시스템 가동(증권)
- 1996.1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및 운영세칙 제정
- 1997. 1. 신용정보 공동이용망 가동(은행), 적하보험 EDI 시스템 운영(보험)
- 1997. 2. 은행공동의 전자화폐 표준 제정, 자동차보험 보유자코드 전산망 가동(보험)
- 1997. 6.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가동
- 1997. 7. 주가지수 옵션시스템 가동(증권)
- 1997. 8. 근재보험 계약자별 할인할증 자료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7.10.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1997.12.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및 세부시행방안 확정
- 1998. 7. 자동차보험통합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8.11.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및 세부시행방안 변경 확정
- 1999. 1. '전자화폐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 1999. 4. 인보험통합조회시스템 및 사고보험금지급조회시스템(보험) 가동
- 1999. 5. 고액계약위험관리시스템 가동(보험)
- 1999. 6. 자동차보험 단체할인·할증조회시스템 가동(보험)
- 1999.10. 전자화폐 명칭 확정(K-Cash)
- 1999.12. 금융기관공동 2000문제 비상대책반 가동, 보험가입자주소검색시스템 가동(보험)
- 2000. 1. 선물·옵션 감리시스템 가동(증권)
- 2000. 3. 주택청약공동업무 시스템 가동

- 2000. 5. ~ 11. 자기앞수표 및 4대 징수기관 수납장표 정보화 완료
- 2000. 7. ~ 12. 전자화폐(K-Cash) 시범사업 실시
- 2000. 8. 교통법규위반 정보교환시스템 가동(보험)
- 2000.11. 코스닥 전자공시시스템 가동(증권)
- 2000.12.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Payment Gateway) 가동
- 2000.12. 코스닥 종합감리시스템 가동(증권)
- 2001. 2.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심의·의결
- 2001. 3. ~ 12. 전자화폐(K-Cash) 네트워크를 위한 추가개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참여(춘천, 수원, 대구)
- 2001. 4. 홈/핀뱅킹 시스템의 24시간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 2001. 8. ~ 12.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
- 2001. 9.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전국확대 실시계획 확정  
물품대금 무선결제시스템 가동
- 2001.11. 금융공동망 백업센터 전산시스템에 대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01.12. 표준OCR장표 인터넷조회시스템 가동,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 개정
- 2002. 1. ~ 7. 전자화폐(K-Cash) 이용보급확대 및 네트워크화 추진
  - 인터넷 쇼핑물 대금결제 시범서비스 실시
  - 교통카드 상용서비스 실시(김해, 춘천)
- 2002. 2. 은행공동망과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산망간 접속  
현물·선물계좌 통합시스템(BASE 21) 및 환매조건부채권시장 시스템 구축(증권)
- 2002. 9.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 가동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
- 2002.10. 상장지수펀드(ETF) 시스템 구축(증권)
- 2002.11. 보험사기 인지자동화시스템 구축(보험)
- 2002.12. 금융공동망(타행환, CD, 전자금융) 및 공인인증업무 백업시스템 가동  
CD/ATM을 이용한 지로·공과금 자동수납시스템 구축
- 2003. 4. 증권거래의 STP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STP-HUB FIX 서비스 구축 및 가동  
CD/ATM을 통한 지로 및 공과금 납부 실시
- 2003. 6.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의 인터넷지로 참가
- 2003.8~9. 내국신용장 어음의 결제방식 개선 및 온라인조회시스템 구축
- 2003.10. 대량매매네트워크 개발 및 가동(증권)
- 2003.12. 장개시전 시간외 시장 개설(증권)

- 2004. 4.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 구축(증권)
- 2004. 8.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
- 2004.10.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 2004.12.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 2004.12. 웹기반 보험통계제공시스템 구축(보험)

한국은행

### 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안 목록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988. - 1996. 6월 :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1996. 7월 - 현재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198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6	88 - 1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88 - 2호	타행환시스템 시행계획
		88 - 3호	1987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88년도 추진계획
		88 - 4호	외부전문가앞 특별자문용역비 결산
		88 - 5호	1987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1988년도 예산
		88 - 6호	1987년도 금융기관 전산화 추진실적
		88 - 7호	금융결제관리원의 금융전산망 구축현황 보고
제2차	2.11	88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3차	3.17	88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4차	5.19	88 -1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6.24	88 -11호	CD공동이용업무 실시
		88 -12호	외국의 금융전산망 관련기구 도입
제6차	9.16	88 -13호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대상기관 조정(은행계신용카드회사, 시설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성업공사, 한국감정원, 전국상호신용금고 등 제외하여 기존의 191개에서 136개 기관으로 조정)
		88 -14호	보고 안건 :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제7차	10.13	88 -15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수정
제8차	11.17	88 -16호	CD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보고
		88 -1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 198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4	89 - 1호	1988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89 - 2호	1988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1989년도 예산
		89 - 3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2차	3.17	89 - 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3차	5.17	89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4차	7.22	89 - 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89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89 - 8호	ARS 추진계획 수정
제5차	9.28	89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11.29	89 -1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 199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6	90 - 1호	1989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90 - 2호	1989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1990년도 예산
제2차	2.26	90 - 3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3차	3.28	90 - 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0 - 5호	ARS 시스템 추진계획 일부수정
제4차	5.21	90 - 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7.16	90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9.24	90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11.23	90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8차	12. 7	90 -10호	금융기관 대고객전산망 도입방안

199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3	91 - 1호	1990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91년도 추진계획
		91 - 2호	1990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결산 및 예산
제2차	3.27	91 - 3호	장기신용은행의 CD공동망 신규참여 승인
제3차	5.25	91 - 4호	금융기관의 전신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제4차	7. 3	91 - 6호	금융전산망과 종합무역자동화 시스템(KTNet)의 접속방안
		91 - 7호	투자금융전산망 구축계획
		91 - 8호	공동 ARS시스템을 이용한 24시간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 실시방안
제5차	7.19	91 - 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1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1 -11호	한국산업은행의 타행환시스템 신규참가 승인
제6차	9.24	91 -12호	금융기관의 잔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13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7차	10.30	91 -1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1 -1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1 -16호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구축방안
		91 -17호	보험전산망 기본계획
		91 -18호	주택은행의 특정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ARS시스템 구축계획

199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5	92 - 1호	금융전산망 제2단계 기본 사업계획
제2차	1.25	92 - 2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92 - 3호	1991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92년도 추진계획
		92 - 4호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관련 특별연구반의 설치 및 운영계획
		92 - 5호	1991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결산
		92 - 6호	1992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예산
제3차	4. 1	92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2 - 9호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요강 개정
제4차	5. 6	92 -10호	투자금융전산망 및 보험전산망의 전담사업자 선정승인
제5차	5.19	92 -1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1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6차	6. 9	92 -13호	BC카드(주)의 회원은행과의 전산연계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
제7차	6.29	92 -14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제8차	7.15	92 -1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1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9차	9.28	92 -17호	신용카드 취급 금융기관과 한국컴퓨터(주)간 현금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제10차	9.21	92 -1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19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11차	10.31	92 -20호	대고객전산망 추진계획 수정
		92 -21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검토 및 심의 조정기준
		92 -2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2 -23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2차	12.30	92 -24호	CD공동망을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수정
		92 -25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직무위임에 관한 기준
		92 -26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 199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9	93 - 1호	1992년도 금융전산망 추진실적 및 1993년도 추진계획
		93 - 2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93 - 3호	1992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결산
		93 - 4호	1993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예산
제2차	4. 2	93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 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93 - 7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제3차	4.29	93 - 8호	증권전산망 기본계획
		93 - 9호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요강 개정
		93 -10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제4차	5.27	93 -1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1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5차	6.11	93 -13호	ARS시스템 이용한 금융기관 공동코드 온라인전송처리 시스템 구축계획
		93 -14호	수표정보교환결제제도관련 데이터통신업무의 금융전산망 활용방안
		93 -15호	ARS시스템을 이용한 가계수표 조회업무 실시방안
		93 -16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6차	7.21	93 -17호	금융결제원과 KTnet과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93 -18호	한국산업은행의 CD공동이용시스템 신규참가 승인
		93 -19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93 -20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2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7차	9. 2	93 -22호	조흥은행 등 23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한국신용정보(주) 점외 CD망의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8차	9.24	93 -23호	금융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의 접속에 관한 심의조정
		93 -2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2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제9차	10.25	93 -2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10차	11.19	93 -2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3 -2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 199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6	94 - 1호	1993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실적
		94 - 2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계획
		94 - 3호	1993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결산
		94 - 4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예산
제2차	3.26	94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3차	3.30	94 - 6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추진계획 수정
		94 - 7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 추진방안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4차	5.16	94 - 8호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 추진계획
		94 - 9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0호	금융전산망 안전대책
		94 -11호	보험개발원과 (주)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94 -12호	보험개발원과 (주)데이콤과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제5차	5.23	94 -13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6.15	94 -1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7. 4	94 -16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8차	7.20	94 -18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4 -19호	ARS시스템의 개정방안
		94 -20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추진계획 수정
		94 -21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 추진방안 수정
제9차	9. 2	94 -2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0차	10. 1	94 -23호	선불카드 공용이용시스템구축을 위한 BC카드(주) 등 6개 기관과 에이스정보통신(주)의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11차	11. 5	94 -24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2차	11.17	94 -25호	금융전산업무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94 -26호	금융전산업무 표준제정 지침
제13차	12.15	94 -27호	금융전산망 기획계획 수정
제14차	12.28	94 -28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계획
		94 -29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예산

199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13	95 - 1호	무역자동화망관련 금융결제원과 (주)데이콤의 접속에 대한 사전검토
제2차	1.25	95 - 2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실적
		95 - 3호	1994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결산
제3차	3. 6	95 - 4호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5 - 5호	개별은행의 ARS 취급업무 자유화 방안
제4차	3. 8	95 - 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5. 4	95 - 7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6차	6. 7	95 - 8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관련 참여은행과 VAN사업자간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95 - 9호	판매대금자동결제망 구축관련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사간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6.28	95 -10호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정
제8차	7. 5	95 -11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9차	8.29	95 -12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0차	9.14	95 -13호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11차	10. 2	95 -14호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이용시스템 구축방안
제12차	10.12	95 -15호	금융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방안
제13차	11. 4	95 -16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제14차	12.29	95 -17호	1996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계획
		95 -18호	1996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예산

199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3	96 - 1호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제2차	1.26	96 - 2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사업 추진실적
		96 - 3호	1995년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사무국 결산
제3차	1.30	96 - 4호	금융전산망의 보안장비 도입방안
제4차	3. 5	96 - 5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
		96 - 6호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시 거래승인 중계를 위한 금융결제원과 (주)데이콤간의 외부전산망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제5차	3.30	96 - 7호	Firm-Banking 서비스 파일 포맷 표준
제6차	5. 3	96 - 8호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조정
		96 - 9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온라인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제7차	6.15	96 -10호	금융결제원, 국민·BC카드연합과 해외 직불 VAN사업자와의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
<b>&lt;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gt;</b>			
제1차	6.22	96 - 1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제2차	7.16	96 - 2호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제3차	9.20	96 - 3호	BC카드 현금서비스 통합 관리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제4차	11.23	96 - 4호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정
제5차	12.26	96 - 5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31	97 - 1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2.14	97 - 2호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강화방안 확정 수립
제3차	3. 3	97 - 3호	1996년도 금융정보화사업 평가 및 1998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시행계획
제4차	10.31	97 - 4호	'2000년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 대응지침 제정

###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30	98 - 1호	1997년도 금융정보화사업 평가
		98 - 2호	1999년도 금융정보화추진 시행계획

###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6.28	99 - 1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7.19	99 - 2호	2000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4.28	00 - 1호	1999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제2차	7.13	00 - 2호	2001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 200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 4	01 - 1호	2000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제2차	6.22	01 - 2호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제3차	12.22	01 - 3호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 개정
		01 - 4호	금융부문 중장기 정보화계획

## 200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25	02 - 1호	2001년중 금융정보화추진실적 평가
		02 - 2호	2003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20	03 - 1호	2002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03 - 2호	2004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제2차	12.31	03 - 3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200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5. 6	04 - 1호	2003년중 금융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04 - 2호	2005년도 금융정보화추진시행계획

## 【은행소위원회】

###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31	97 - 1호	1996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97 - 2호	1997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2.24	97 - 3호	금융IC카드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97 - 4호	전자지갑 및 IC통장 표준
제3차	4.21	97 - 5호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구축 사업계획
제4차	7. 4	97 - 6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제5차	12. 5	97 - 7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 세부시행방안

\* 1996.12.26 은행소위원회 신설

###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8	98 - 1호	1997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98 - 2호	1998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11.20	98 - 3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 세부시행방안의 변경

###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13	99 - 1호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99 - 2호	금융IC카드 표준의 개정 (전자지갑 및 IC통장 표준 명칭 및 내용 개정)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2차	2. 2	99 - 3호	1998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99 - 4호	1999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3차	7. 8	99 - 5호	금융IC카드 표준의 개정
제4차	9. 7	99 - 6호	금융결제원 ARS공동망과 한국통신전산시스템 접속
제5차	12. 3	99 - 7호	전자화폐 공동사업 시범지역 및 실시시기 결정
		99 - 8호	금융기관 수납장표 정보화사업 추진일정 조정

###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8	00 - 1호	1999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0 - 2호	2000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2.28	00 - 3호	평화은행의 지방은행공동망 접속
제3차	6. 2	00 - 4호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 구축계획
		00 - 5호	전자금융공동망(가칭) 구축계획

### 200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3	01 - 1호	2000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1 - 2호	2001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01 - 3호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제2차	9. 6	01 - 4호	물품대금 무선 결제시스템 구축계획

## 200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15	02 - 1호	금융공동망과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산망의 접속
제2차	2. 8	02 - 2호	2001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2 - 3호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02 - 4호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제3차	6.11	02 - 5호	개인구매카드제도 도입 추진
제4차	12.20	02 - 6호	금융업무 표준개정
		02 - 7호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변경

##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29	03 - 1호	2002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3 - 2호	2003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2차	4.25	03 - 3호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금융IC카드 표준 제정
		03 - 4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추진방안
제3차	5.20	03 - 5호	은행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계획
제4차	6. 5	03 - 6호	외환동시결제를 위한 CLS공동망 구축계획
제5차	10. 1	03 - 7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시 MYbi카드 수용
제6차	11.13	03 - 8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계획
		03 - 9호	개방형 금융IC카드표준 개정
		03 - 10호	폐쇄형 금융IC카드표준 개정
제7차	12.31	03 - 11호	개인구매카드제도 도입추진 유보

200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5	04 - 1호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온라인지급시스템 구축
제2차	2.11	04 - 2호	2003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결산
		04 - 3호	2004년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예산
제3차	4. 7	04 - 4호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결제시스템 구축
제4차	6. 15	04 - 5호	은행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기간 조정
		04 - 6호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제정
		04 - 7호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제정
제5차	10.25	04 - 8호	대학등록금 수납관련 File Layout 표준제정

한국은행

## 【증권소위원회】

### 199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6.22	93 - 1	유가증권 표준코드에 대한 검토

### 199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 1	94- 1~12	한국증권거래소의 11개사 기기도입에 대한 검토
		94-13~14	증권소위원회 199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1994년도 사업 추진 계획
		94-15~16	1993년도 결산 및 1994년도 예산
제2차	5.31	94-17~25	한국증권거래소의 8개사 기기도입에 대한 검토
제3차	6. 8	94-26~27	1994년도 제3차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제4차	6.13	94 - *	증권거래소 외 1개사의 전산기기 도입 검토 조정
제5차	9.13	94 -28	금융전산망 증권소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94 -29	기기도입 검토절차 개선
		94 -30	증권소위원회 사무국 기구 축소등
제6차	10. 8	94-31~36	1994년도 제5차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199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3	95 - 1	한국증권금융(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95 - 2	대우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 3	증권소위원회 199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1995년도 사업 추진계획
		95 - 4	증권소위원회 1994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예산(안)
제2차	4.13	95 - 5	한일투자신탁(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 6	동서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제3차	6.13	95 - 7	교보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 8	쌍용투자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제4차	8. 9	95 - 9	산업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10	엘지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제5차	10.12	95 -11	보람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5 -12	한국증권전산(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 199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31	96 - 1	증권소위원회 1995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
		96 - 2	증권소위원회 199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1996년도 사업 추진계획
제2차	2.14	96 - 3	장은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6 - 4	고려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96 - 5	한국증권전산(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제3차	4.12	96 - 6	한국증권거래소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조정 신청서
		96 - 7	제일증권(주)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조정 신청서
제4차	8.17	96 - 8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제5차	12.30	96 - 9	1997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5	97 - 1	1996년도 증권소위원회 결산
		97 - 2	1996년도 정보화추진실적 및 1997년도 사업계획
		97 - 3	금융정보화추진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7	98 - 1	1997년도 증권소위원회 결산
		98 - 2	1998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98 - 3	1997년도 정보화 추진실적 및 1998년도 정보화추진 계획

###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9.20	99 - 1	금융정보화 추진분과 증권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9 - 2	1999년도 증권소위원회 예산
제2차	12.28	99 - 3	2000년도 예산

###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17	00 - 1	1999년도 결산
		00 - 2	1999년도 정보화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정보화추진 계획
제2차	12.28	00 - 3	2001년도 예산

## 2001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15	01 - 1	2000년도 결산
		01 - 2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
제2차	12.28	01 - 3	2002년도 예산

## 2002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7	02 - 1	2001년도 결산
		02 - 2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
제2차	12.26	02 - 3	2003년도 예산

##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7	03 - 1	2002년도 결산
		03 - 2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
제2차	12.26	03 - 3	2004년도 예산

## 2004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29	04 - 1	2003년도 결산
		04 - 2	20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

## 【보험소위원회】

### 1995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2.16	95 - 1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한국보증보험)
제2차	4. 7	95 - 2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한국생명)
제3차	6. 9	95 - 3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국제생명)
제4차	8. 7	95 - 4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고려씨엠생명)
제5차	11.24	95 - 5호	자배책미가입자 업무처리 개선방안 전산망 적용 세부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 1996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 5	96 - 1호	보험전산망 1996년도 사업계획 심의
제2차	2. 8	96 - 2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국민생명)
제3차	4.12	96 - 3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한덕생명)
제4차	6. 7	96 - 4호	보험기관의 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심의(국제화재)
제5차	7.16	96 - 5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1997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3. 7	97 - 1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97 - 2호	보험소위원회 활성화 계획 심의
		97 - 3호	1998년도 보험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심의
제2차	10.23	97 - 4호	한국보증보험(주)의 외부전산망 접속승인 심의
제3차	12. 9	97 - 5호	보험정보화 장기발전계획 심의
		97 - 6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1998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4.28	98 - 1호	자동차보험 치료비 자동심사시스템 공동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보험정보화 공동사업으로부터 의료망 연계시스템 제외의 건에 대한 심의
제2차	12. 3	98 - 2호	조달 EDI 보증보험증권중계시스템 공동개발 사업 및 외부 전산망 접속 심의에 관한 심의

### 1999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0.29	99 - 1호	금융정보화추진 보험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제2차	12.27	99 - 2호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사업시행자 단일화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 심의

### 2000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10.29	00 - 1호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사업시행자 단일화 결정

### 2003년도

회의 차수	회의 일자	의안번호	심 의 · 의 결 내 용
제1차	09.04	03 - 1호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개정

##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개정	1996. 6. 22.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996. 12. 26. 제5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997. 1. 31.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999. 6. 28.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3. 12. 31. 제2차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금융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정보망”이라 함은 제3조의 참여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금융공동망”이라 함은 위원회가 금융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하 “공동추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금융정보망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참여기관의 공동추진사업 선정시 위원회로부터 동 사업의 추진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금융정보화의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 포함)
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회사
6.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9.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10. 제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
1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12. 기타 상기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금융정보화의 추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 제 2 장 조직 및 운영

### 제 1 절 위원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금융정보화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금융공동망과 관련되는 참여기관의 금융정보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에 관한 사항
6. 금융정보화 관련업무의 표준화 및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7. 금융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과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등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금융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은행 부총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참여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2. 금융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안전을 부의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부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안건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의사담당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2 절 소위원회

**제9조(구성)** ① 금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이 소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1. 은행소위원회(한국은행 부총재)
2. 증권소위원회(한국증권전산(주) 전무이사)
3. 보험소위원회(보험개발원 전무이사)

③ 소위원회 위원은 소속기관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소위원회 :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기관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2. 증권소위원회 : 한국증권전산(주), 제3조 제4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관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3. 보험소위원회 : 보험개발원,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기관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10조(기능)**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소관분야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운영)** ①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절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 등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하는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 위원이 속하는 참여기관의 정보화추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무국장이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2. 제15조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내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 의사담당자가 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부의 안건 작성
2. 위원회 결의사항의 집행
3. 기타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금융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절 경비분담 및 회계

**제15조(경비분담)**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소요경비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되 분담할 기관의 범위와 분담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경상운영비,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제16조(회계)** ① 제15조의 소요경비의 예산 및 결산은 분담기관이 소속된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요경비의 집행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직무권한규정 및 회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 제 3 장 심의업무

### 제 1 절 정보화추진계획

**제17조(연도별 정보화추진실적 및 계획 심의자료의 제출)** ① 참여기관은 금융정보화추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다음연도 정보화추진계획과 전년도 정보화추진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소속기관은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소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추진실적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 전산기기 보유현황 및 설치 계획
3. 외부전산망과의 접속현황 및 계획
4.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 실시현황 및 계획
5. 정보화업무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현황 및 계획
6. 정보화관련 규정 또는 제도개선실적 및 계획
7. 기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① 참여기관은 금융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위원회 소속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소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소위원회의 소관업무이외의 사항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 2 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

**제19조(접속에 대한 심의)**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접속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소속기관은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참여기관이외 외부기관의 전산망과 금융정보망과의 접속

2. 금융공동망으로 구축된 망과 금융정보망과의 접속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1. 참여기관이 그 기관 고유의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접속하는 경우
2. 위원회의 금융정보화사업계획 심의시 참여대상으로 정한 기관이 금융공동망에 참여하기 위하여 접속하는 경우
3. 접속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전산망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누구에게나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접속할 수 있는 외부전산망은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가기간전산망,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 특별법에 의거 구축한 망과 “대고객금융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민간기관이 주무당국으로부터 특정 금융업무대행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망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
3. 기타의 외부전산망중 위원회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정보망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심의 기준)** 외부전산망접속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결제시스템 저해 여부
2. 은행법 및 주무당국이 정하는 금융업무의 침해 여부
3. 금융정보망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대책의 적정 여부
4. 고객과 외부전산망사업자, 외부전산망사업자와 해당 금융기관간 권리 및 의무 사항의 적정성 여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3 절 표준화

**제21조(표준화위원회)** ① 금융정보화 관련업무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표준화위원회를 둔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 표준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참여기관 직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표준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제안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2. 표준화 작업항목 선정 및 표준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
3. 기타 표준화 활동에 관하여 사무국이 의뢰하는 업무

④ 표준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표준의 제정절차)** ① 참여기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금융정보화 관련업무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표준화 대상사업의 선정 및 표준안의 개발위탁은 실무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③ 표준안의 개발을 위탁받은 자는 표준안을 개발할 때 상위수준의 표준중 적합한 표준이 존재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상위표준이 없으면 자체 개발한다.

④ 소위원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며, 그 절차는 소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표준의 적용)** 참여기관은 위원회가 금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기관 상호간 및 참여기관과 고객간의 전산업무처리절차, 이용양식 및 매체 등에 관한 표준을 심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 4 절 안전대책

**제24조(안전대책위원회)** ①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 안전대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참여기관 직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안전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기준 수립에 관한 사전검토
2. 전산장애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대책 강구

3. 기타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사무국이 의뢰하는 업무

④ 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안전대책기준의 적용)** 참여기관은 위원회가 금융정보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대책기준을 심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 4 장 보 칙

**제26조(업무협조)** 위원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파견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금융정보화 사업별 참가절차 등)** 사업시행자는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화 사업별로 구체적인 참가절차, 참가금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위임규정)** 기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 부 칙 < 96. 6. 22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운영세칙(87. 6.16 제1차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제정)

2. 금융전산업무표준제정지침('94.11.17 제12차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제정)

③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96. 12. 2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97. 1. 31 >

① 이 세칙은 199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99. 6. 28 >

① 이 세칙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03. 12. 31 >

①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1996. 6. 26. 사무국장 제정  
1997. 7. 26. 사무국장 개정

### 1. 사업계획 심의신청

-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금융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칙」 제18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명으로 <별표 1>에 의거 정보화 사업계획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시 예정 2월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 참여기관이 「세칙」 제17조의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금융공동망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 사무국과 사전 협의

### 2.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

- 참여기관이 「세칙」 제19조에 의한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속예정 2월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 3. 표준의 제정 등의 요구

- 참여기관이 「세칙」 제22조 제1항에 의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의거 표준화제안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 4.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발생 보고

- 「세칙」 제25조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금융정보망 안전대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관에서 자체전산망, 공동전산망 및 대고객전산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 및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별표 4>의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보고서에 의거 즉시 사무국에 제출

- 해킹, 비밀번호 유출, 전산직원의 전산기기 도용(盜用) 등 금융정보망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및 위규행위가 개재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전산센터(본부, 지역센터 또는 모점)의 전산기기(H/W), 소프트웨어(S/W), 통신회선 등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국, 지역센터 또는 모점 관할 전체지역 금융정보망의 운영이 30분 이상 중단되거나 단일 점포의 전산시스템 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 다만, 증권·보험·종합금융소위원회 소속기관은 금융정보망과 관련한 사고 및 장애 발생시 이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 앞으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 소위원회는 월별로 이를 종합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

한국은행

<별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심의신청서

정보화 사업계획 심의신청서

( . . . )

1. 사 업 명 :
2. 사업실시 예정일 :
3. 기본계획 반영여부 :
4. 사업 목적
5. 사업 개요
6. 사업추진 효과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업무흐름도 1부. ③ 시스템 구성도(Configuration) 1부. ④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대책 1부. ⑤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기 관 장 (인)

<별표 2>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서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서

( . . . )

○ ○ 기관장 (인)

< 접속예정 외부전산망 사업자 >			
사업자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연월일	
주요사업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구분 : 기간, 부가 ○정보통신부 허가(또는 신고)의 주요내용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 : 정보산업관련매출액/총매출액 ○인력 : 망 개발·운영 전문인력/총인력			
대상업무 :			

- 첨부서류 ① 외부전산망사업자와의 접속에 관한 계약서(안) 사본 1부.  
 ② 외부전산망사업자의 정관 사본 1부.  
 ③ 대상업무별 업무처리절차도 1부.  
 ④ 시스템 구성도(Configuration) 1부.  
 ⑤ 해당 금융기관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대책 요약 1부.  
 ⑥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술표준의 이행여부 1부.  
 ⑦ 전산망 접속추진계획서 사본 1부(필요한 경우).

<별표 3> 표준화 제안서

표 준 화 제 안 서

제안기관 :

1. 제 목				
2. 제안사유 및 필요성				
3. 내 용 및 적용범위				
4. 활용계획	가. 적용대상업무  나. 기대효과			
5. 표준제정 시 급 성	가. 표준제정 시급성 평가 ( ) (1) 매우 시급함 (2) 보통임 (3) 시급하지 않음  나. 표준제정 시기			
6. 기 타 참고사항				
7.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별표 4>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

기관명 :

발생일시 및 지속기간	
사고내용	
사고원인	
파급영향	
처리결과	
대    책	

## 6.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 I. 설비기준

전산센터		【설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 고
대항목	중항목				
건물	환경	1)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회피	-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상가 등 목조건물 밀집지역 또는 다량의 가연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화재시 폭발성 있는 위험물이 있는 지역 등 -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가능 지역 ○유독가스 배출이 심한 공장단지 ○먼지가 많은 광산주변 등 - 진동에 의한 피해가능 지역 ○철도, 지하철 등에 근접한 지역 등	△	
		2) 환경변화에 대비한 방지대책 강구	- 환경변화의 예 ○전산센터 인근에 위험물 시설이나 구조물 건설 ○공장건설에 따른 공기오염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건설에 따른 진동장애	△	
		3) 소방 피난용 통로의 확보	- 화재시 원활한 소화활동 및 피난활동을 위해 비상계단 및 출구 등을 관련법의 기준에 따라 확보	○	
		4) 인접건물과의 간격확보 또는 방화벽 설치	-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인접건물과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간격확보가 곤란한 경우 화재 방화벽 또는 방화림(상록 광엽수) 설치 등	○	
		5) 침입방지설비 설치	- 불법침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적외선 감지장치 또는 Trap Sensor설치	△	
		6) 간판의 非설치	- 전산센터임을 나타내는 외부표시판 또는 안내판 등의 비설치.	○	
		7) 파괴설비 설치	- 파괴기, 이상전압흡수장치 등	○	
		8) 독립전산센터 운영	- 독립전산센터를 구축하고 독립전산센터 구축이 어려울 경우 건물내에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을 설정	○	
		9) 통신회선, 전력선의 절단 또는 연소방지대책 강구	- 가스·수도 등의 매설공사, 장래의 증축, 포장 등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설치	○	
	구조	1) 내화건축물로 구축	- 내화건축물로 구축	△	
		2) 구조의 안전성 확보	-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방수, 배수성능의 저하방지 등을 위한 대책강구 - 방화방법용 유리 설치 등 - 외부로부터의 전산관련 설비 파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공도로 등 외부에 접하는 외벽 등에 강도를 갖도록 조치 강구	○	

주: 1) ○ - 준수사항으로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 권장사항으로 각 기관의 자율 판단하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

전산센터		【설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건물	구조	3) 외벽 및 지붕에 대한 방수 조치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방수 및 배수성능의 저하 및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호우 등에 따른 누수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강구	○	
	출입구	1) 창문에 대한 방법조치	- 주요기기 소재지 창문의 개폐 또는 파손을 감지할 수 있는 진동감지기 설치 등	△	
		2) 출입관리설비 및 방법설비 설치	- 경비원에 의한 출입관리 기록 - 자기카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지문조회장치등과 같은 출입관리설비 설치 - 인터폰, 방범 TV카메라, 경보장치 등 방법설비 설치	○	
		3) 방수조치 강구	- 폭우 등에 의한 방수조치로 배수구, 방수문, 방수용 모래주머니 등 설치	○	
		4) 창문에 방화조치 강구	-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창문*에 방화조치 강구 *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의 상호 외벽간의 거리가 3m 이하(1층인 경우), 5m이하(2층 이상인 경우) 인 경우	○	
전산실 · 데이터 보관실	위치	1)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	- 보일러실, 연료보관실, 침수위험 및 누수위험이 있는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회피	△	
		2)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	-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한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식당근처 회피 - 건물 협소 등으로 위의 조건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수립	○	(수정)
		3) 室名の 非표시	- 기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室名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으며, 화재시 소방담당자를 위한 안내판 등은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	○	
	출입구	1) 상시출입구는 1개로 제한	- 효율적인 출입관리 및 입실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출입구는 1개소로 제한	△	
		2) 창문에 대한 방수, 손괴 방지조치 등 강구	- 창문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에 의한 누수, 직사광선에 의한 기기장애 방지조치를 강구하고 건물외부에서 실내의 기기 등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	△	
		3) 비상구, 유도등 등을 설치	- 재해시 대피 및 비상탈출의 원활화를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비상구, 대피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	○	
	구조, 내장	1) 독립된 방화구역	- 화재전파 방지를 위해 독립된 방화구역으로 설정 또는 내화금고 등의 사용	○	
		2) 정전기 방지조치	- 건조에 의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온·습도를 유지 - 정전기를 제거하는 바닥재료의 사용 또는 접지를 통한 정전기 제거 등	○	(수정)
		3) 불연재료 및 방염 재료 사용	- 벽, 천정 등의 내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커튼, 카페트 등은 방염재료를 사용	○	
		4) 누수방지대책 강구	- 건물, 설비 등의 손상에 따른 누수에 의한 전산기기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 천장, 벽 및 바닥의 누수방지대책 강구	○	(수정)

전산센터		【설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전산실 · 데이터 보관실	설비	1) 자동화재경보장치 및 비상연락장치 설치	- 화재발생장소의 조기발견 및 소화를 위해 화재감지기, 비상벨, 경보사이렌, 비상전화 등을 설치	○	
		2) 소방설비의 설치	-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설비의 설치	○	(수정)
		3) 비상용 조명설비 및 휴대용 조명기기 설치	- 비상시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손전등 등 휴대용 조명기기 설치	○	
		4) 출입관리설비 및 방법설비 설치	- 자기카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지문조회장치 등과 같은 출입관리설비 설치 - 인터폰, 방법TV카메라, 경보장치 등 방법설비 설치	○	
		5) 온·습도 자동기록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	- 공기배출구, 출입구 등 온·습도의 변화가 큰 장소를 피해 설치	△	
		6) 쥐 피해의 방지조치	- 하수관, 배수구, 환기구 등 쥐의 통로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 강구	○	
		7) 케이블의 연소방지 및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방지 조치	- 케이블은 과전류 및 주변화재 등으로부터 발화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또한 발화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소방지 및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 방지 대책 강구 - 또한 벽면 등의 케이블 관통부분에 대하여도 연소방지조치 강구	○	
		8) 배연설비 설치	- 컴퓨터기기, 데이터 등의 연기에 의한 오손(汚損)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매연을 옥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	○	(수정)
		9) 이중바닥 설치	- 전산실과 데이터보관실의 누전 및 침수방지 등을 위하여 이중바닥 설치	○	
	집기, 비품	1) 불연성 집기, 비품으로 구비	- 화재 발생시 유해한 연기나 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 사용	△	
2) 정전기 발생 방지조치		- 전산실의 습도를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40~60% 정도 유지 - 전산실의 바닥은 정전기 방지재료 사용 및 접지선 설치	○		
전 원 실, 공조실	1) 재해발생 가능 위치의 회피	- 재해발생 가능 위치 ○ 위험물저장소 또는 취급소 ○ 온도변화가 심한 곳 등	△		
	2) 자동화재경보장치 및 소화설비의 설치	- 평소 상주직원이 없는 점을 감안 화재의 조기발견 및 소화를 위해 자동화재경보장치와 소화기 등 설치	○		
	3)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확보	- 기기, 장치 등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적정공간 확보	○		
	4) 전용의 독립 실(室)로 운영	- 용이한 보수관리 및 장애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다른 실과는 독립된 전용의 독립실로 운영	○		

전산센터		【설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전원실, 공조실	5) 창문 설치금지 및 출입문에 자물쇠 부착	- 통상 전원실·공조실 안에는 사람이 없으며 정기적인 순찰에 의한 보수점검이 일반적이므로 창문 설치금지 및 출입문에 자물쇠를 부착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 화재 및 침수 등을 방지 (단, 환기 등을 위하여 출입이 불가능한 위치에 작은 크기의 창문설치 가능)	○	(수정)	
	6) 공조설비에 대한 누수방지 조치 강구	- 공조설비로부터의 냉각수의 누수, 결빙, 고무마개의 닳음 등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조설비의 주변 또는 바로 아래에 누수받침대 및 배수구 등을 설치 - 외벽에 설치된 외기흡입구, 배기구에 대해서도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조치 강구	○		
	7) 내화 조치 강구	- 화재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설계 - 전기배선 등의 전원실·공조실의 벽면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연소방지조치 강구	○		
전원 설비	1) 충분한 용량의 설비구축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물, 전산실의 규모, 기기 등의 사용량에 충분한 전원설비를 설치	○		
	2)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의 설치	- 전력공급 장애시 다른 정상회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수회선 설치 - 전압 및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전압 정주파수장치(CVCF) 설치 - 단시간 정전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 설비 설치 - 피뢰기, 이상전압흡수장치 등 피뢰설비 설치 - 방재 및 방범설비에 예비전원(비상전원) 설치 등	△		
	3) 부하변동이 큰 기기와의 공용회피	- 전산시스템을 엘리베이터나 공조설비 등 전원의 起動, 정지빈도가 높고 소비전력이 큰 기기와 동일한 전원계통에 접속하지 않음	△		
	4) 과전류, 누전에 의한 장애 방지	- 과전류 차단기(휴즈 등), 누전경보기 등의 설치	○	(수정)	
공조 설비	1) 안정적인 공기조절 조치 강구	- 오염된 공기, 먼지 등의 침입방지를 위한 필터, 집진기(集塵機) 등 설치 - 수질이 좋은 보급수 사용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		
	2) 예비기기 설치	- 냉동기, 보일러, 공기조화기, 펌프 등 공조설비의 주요기에 대한 예비설비 확보	△		
	3) 자동제어장치, 이상경보 장치의 설치	- 공조설비의 냉각수 온도 및 압력 등의 자동제어 및 가동상태확인을 위한 압력계, 온도계 등의 설치 - 화재 및 누수방지를 위한 이상경보장치의 설치	△		
	4) 침입, 파괴방지대책	- 옥상 등 건물외부에 설치된 공조설비는 외부인의 침입 및 파괴에 대비하여 자물쇠 부착, 울타리 설치 및 특정인이외의 출입을 제한	△		

전산센터		【설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공조 설비		5) 공조설비는 전산실 전용으로 운용	- 전산실의 온·습도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공조설비는 다른 실(室)과의 공동사용을 피하고 전산실 전용으로 운용	○	
		6) 공조설비에 대하여 불연재료 사용	- 화재시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공조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	△	
감시 제어 설비		1) 감시제어설비 및 중앙관리실 설치	- 운영관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설비에 대한 감시제어설비 및 중앙관리실(중앙감시실, 방재센터 등)을 설치 ○ 전원설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정전압정주파수장치 등 ○ 공조설비 : 공조기 등 ○ 방재설비 : 자동화재경보기, 가스누출화재경보기, 소화설비, 배연설비, 누수감지기 등 ○ 방법설비 : 출입감시설비, 방법센터 등	○	
회선 관련 설비		1) 자물쇠 부착	- 부정액세스 및 파괴 등 방지를 위해 관계자이외의 접촉이 우려되는 지역의 회선관련설비에 자물쇠 등 안전장치를 설치	○	
		2) 설치장소의 非표시	- 회선관련설비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표지판 등을 부착하지 않음	○	
		3) 배선의 이중화	- 전산센터내 주배선반에서 통신제어장치 등 주요기기까지의 배선의 이중화 또는 예비선 확보	○	

영 업 점		【설비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설비		1) 고정식 금고 설치	- 영업점 신설시 고정식 금고 설치	○	
		2) 방법설비의 설치	- 출장소를 포함한 전영업점, 무인점포, 점외단독 CD기에 대해 CCTV, 무인기계경비시스템 등을 설치 ○ 다만, 안전이 확보된 국가중요시설 등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기타 (무인 점포의 경우)		1) 통화장치 설치	- 장애시 고객이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 인터폰 등의 통화장치 설치	○	
		2) 안내판 설치	- 장애 및 비상시의 연락방법 및 기기의 조작순서 등을 나타내는 안내판 등의 설치	○	
		3) 기 타	- 외부로부터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설비 및 출입문 설치 - 자동화기기의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원격감시설비의 설치 - 카드인식장치 설치 등	○ △	

## II. 기술 기준

항 목		【기술기준】			
대항목	중항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H/W의 신뢰성 향상 대책	장애 예방	1) 예방보수의 실시	- 정기적 또는 수시로 예방보수를 실시하고, 예방보수주기를 장기간으로 하지 않음	○	
	백업	1) H/W에 대한 백업 확보	-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 Duplex, Multiprocessor, Load Share system 등 -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등 주요 주변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 복수의 주변장치 확보, 이중장치로의 대체 등 -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 통신회선의 이중화 및 우회화 - 단말장치 및 단말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등 ○ 지역별, 주요 영업점별 또는 전산센터에 예비장비 확보 ○ 타 영업점 또는 전산센터 등의 다른 단말(제어)장치로 대체	○	
S/W의 신뢰성 향상 대책	개발시 품질 향상 대책	1) 설계단계	- 시스템 사용자 요건의 명확화 ○ 입출력요건, 업무처리내용 등 - 에러 발생시 프로그램 장애 최소화 대책 강구 ○ 에러 발생시 그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설계 ○ 이상사태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책 강구 등 - 각 개발 단계별로 관련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에 의한 재검토 실시	○	△
		2) 작성단계	- 작성된 프로그램의 검증 실시 - 코딩(Coding)규약의 작성		△
		3) 테스트단계	- 테스트 계획서의 작성 ○ 실시방침, 실시방법, 실시자원 등의 명확화 - 테스트시 이용부서 및 운용부서 요원의 참가 등		△
		4) 패키지 구입시	- 자사시스템에 의해 철저한 테스트 실시 - 판매자와 구매자간 책임한계의 명확화 ○ 구입 패키지에 대한 하자 발견시의 책임 소재 ○ 보수·유지의 범위 및 기한 등	○	
	운용시 품질 향상 대책	1) 영업점 신설 등 변경 작업시	- 영업점 신설, 기기의 증설 등 변경 작업시 변경내용과 작업순서, 검증순서 등의 문서화	○	
2) 기능의 변경 등	- 변경, 추가에 따른 타부문의 영향 극소화 - 기능변경에 따른 장애대책으로 변경전의 시스템에 대한 백업실시 및 장애발생시 회복순서의 작성 등	○			
H/W 및 S/W 관리		1) H/W 및 S/W의 관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작성 유지 ○ 해당 시스템의 구성도, 네트워크 접속도 등을 정비	○	
		2) 시스템의 폐기	- 시스템의 폐기계획 및 순서 책정 - 시스템 폐기시 정보누설방지대책 강구	○	

**【기술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운용시 신뢰성 향상 대책	운용시 신뢰성 향상 대책	1) Operation의 자동화 및 간략화 도모	- 자동화 ○테이프 조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기 사용 ○현금처리기, OCR 등의 활용에 의한 수작업 감소 등 - 간략화(단순화) ○명령어 입력의 최소화 ○테이프 조작의 최소화 등	△	
		2) 체크기능의 충실	- Operator와 Teller의 실수방지 및 에러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크 기능의 설정 ○입력 명령어의 타당성 재확인 ○테이프 작업시 사용테이프의 정당성 확인 ○입력 데이터 항목별 상호 체크 등	○	
		3) 부하상태의 감시제어	- 각종 전산자원의 능력과 용량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설정 ○부하상태 표시 및 제어 ○자원의 사용현황 조회 ○사용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등	○	
		4) 원격제어기능	- 무인자동화점포내 CD/ATM 등의 운용상황의 감시 및 제어 기능 설정 ○현금부족, 기기장애, 회선단절 등의 감시기능 등 ○통신회선, 모뎀, 단말기 등의 가동·정지·에러상태 집중감시 등	△	
장애의 조기 발견 및 회복	장애의 조기 발견 및 회복	1) 시스템 운용상황의 감시기능	- S/W 및 오퍼레이터 등에 의한 감시기능 설정 ○중앙처리장치, 채널장치, 디스크장치 등의 감시 등	○	
		2) 장애의 검출기능	- 장애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기능 설정 ○이상상태의 검출기능 ○장애발생상태에 관한 각종메시지의 로깅 기능 등	○	
		3) 장애의 차단 및 거래제한 기능	- 전산시스템 일부 구성요소의 장애시 시스템전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 설정 ○장애발생부분에 대한 폐쇄·격리기능 ○파일단위, 과목단위 등에 의한 거래제한 기능 등	△	
		4) 복구기능	- 장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기능 설정 ○데이터 처리과정의 기록기능 ○전체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부분복구기능 ○백업파일과 저널 등을 근거로 회복시키는 파일복구 기능 등	△	

【기술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재해 대책	재해 복구 시스템	1)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관리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전산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책 강구 <재해복구시스템의 예> · 자영형 : 각각의 회사가 독자적으로 백업시스템을 설치 · 공동이용형 : 복수의 회사 공동으로 백업시스템을 설치 · 대행(BRS) : 제3자에게 위탁	○	(적용 지침 변경)
부정 사용 방지	예방책	1) 사고계좌의 거래금지기능	- 도난·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계좌의 해당매체 (카드, 통장 등)에 의한 거래 금지	○	
	감지책	1) 부정액세스 감지기능	- CD/ATM, Home/Firm Banking 등의 경우 이용자 번호(ID) 및 비밀번호의 오류입력 제한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접속)금지, 카드회수 등	○	
		2) 이상거래의 감지기능	- 사고신고의 해제, 통장·증서의 재발행 등 주요 거래의 경우 책임자 Key 등의 사용 및 사용내역의 기록	○	
부정 프로 그램 방지	예방 및 감지 대책	1) 부정프로그램의 방어 및 감지대책	- 방어대책 강구 ○ 단말기의 센터접속, 거래데이터의 입력시 비밀번호 등에 의한 확인, 비밀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전송데이터의 암호화 등 - 감지대책 강구 ○ 중요파일에 대한 액세스 여부, 비밀번호 에러의 내용·횟수 등의 체크 ○ 시스템자원(파일 및 메모리 용량, CPU 사용시간 등)의 사용현황 체크 ○ 백신 프로그램 사용 등	○	

### Ⅲ. 운영 기준

전산센터		【운영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관리 체제 확립	조직 및 규정 정비	1) 조직 및 규정의 정비	- 안전대책 관리조직의 정비 ○ 책임자, 역할분담, 대피경로, 방재·방법기관에 의 연락방법, 긴급연락망 등 - 각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규정의 정비	○	
출입 관리	출입 관리	1) 출입관리	- 전산센터 및 전산관련실의 출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상주자에 대해서 사진이 부착된 출입허가증 발행 ○ 방문자에 대한 인식표 배부 및 기록 ○ 출입카드의 발행 및 식별코드의 부여 ○ 경비원 배치 ○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출입기준을 정하여 운영	○	(수정)
		2) 출입허가장치 관리	- 출입구 키의 보관장소 및 관리인의 지정 - 키 수도자(受渡者)의 성명 및 수도시각 기록부 작성 - 출입카드 발행관리인의 지정 - 생체인식시스템 설치기관의 경우 별도 관리방법 마련	○	(수정)
운영 관리	액세스 권한 및 오퍼 레이션 관리	1) 액세스권한 및 실행체제의 명확화	-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750지정 - 자격상실 전산요원의 사용자번호 등 말소 - 액세스 실패의 기록 기능 설치 - 오조작 등에 의한 부정사용 방지대책 강구 ○ 전산기기별 조작방법, 명령어 사용법, 전산시스템 운용순서 등에 관한 매뉴얼 비치 ○ 보안이 요구되는 오퍼레이션의 경우 요원 한정 ○ 오퍼레이션 처리과정의 기록기능 설치 등	○	
	데이터, 파일 관리	1) 백업의 확보	- 파손, 장애 등에 대비 중요파일에 대한 백업확보 ○ 백업의 정상종료 확인(리턴코드, 건수 등) ○ 화재 및 광역재해에 대비한 분산·격지보관 ○ 외부위탁시 신뢰성, 안전성 및 백업자료의 신속 한 운반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	
	프로 그램 관리	1) 관리방법의 명확화	- 「프로그램 관리대장」 등의 정비 ○ 프로그램 고유번호 및 명칭 ○ 작업내용(신규, 변경, 폐기 등) ○ 작업년월일, 작업이유, 담당자명 등의 기록	○	
		2) 백업의 확보	- 파손, 장애 등에 대비 중요파일에 대한 백업확보 ○ 백업의 정상종료 확인(리턴코드, 건수 등) ○ 화재 및 광역재해에 대비한 분산·격지보관 ○ 외부위탁시 신뢰성, 안전성 및 백업자료의 신속한 운반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	

전산센터		【운영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운영 관리	장표 관리	1) 장표의 관리 및 취급방법 명확화	- 중요장표(고객정보 등 중요정보가 수록된 마이크로 필름 등)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대책 강구 ○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등에 보관 ○ 책임자 입회하의 입출고 또는 폐기 실시 ○ 수도부(수수전표, 수수관리부 등)에 의한 수수 ○ 잔존건수 확인 등	○	
	카드 관리	1) 카드관리방법의 명확화 (전산센터 또는 전산관련부서에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 현금카드 등의 발행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미사용카드, 송부·폐기대상 카드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등에 보관 - 카드제작후 재고 확인 및 기록 - 발급카드의 우편발송 금지 등	○	
	자원 관리	1) 용량 및 사용상황의 확인	-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저하 방지대책 강구 ○ H/W자원(본체, 주변장치, 통신기계장치 등), S/W(프로그램, 파일 등),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이용률, 사용용량, 능력한계 등의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평가 실시	○	
	외부 접속 관리	1) 접속계약내용의 명확화	- 외부와의 접속계약시 이용회선, 접속기기, 송수신 데이터의 포맷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접속조건 확인서 작성 등	○	
	2) 접속처의 확인	- 공중회선 이용에 의한 전화, 팩스 또는 PC등의 접속시 ○ 거액거래의 경우 Call-back, 1회용 비밀번호(OTP TOKEN) 등에 의한 확인	○		
기기 관리	1) 관리 및 보수방법의 명확화	- 관리방법의 명확화 ○ 기기관리 책임자 지정 ○ 전산실 등에 대한 출입자격 부여 ○ 단말기 등에 대한 조작자격 부여 ○ 각 설비의 조작안내서 마련 ○ 장애시 대처순서 결정 및 연락체계의 명확화 ○ 장애의 기록 유지 등 - 보수방법의 명확화 ○ 정기 또는 수시로 보수점검 실시 ○ 백업설비 등 상시 가동하지 않는 설비에 대한 정상 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수업체의 책임자, 전화번호 등의 사전파악 등	○		

전산센터		【운영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운영 관리	업무 지속 계획 수립	1) 위험 분석	- 위험요소 발생 가능성 분석 - 기존 비상대책 점검 - 금융기관, 고객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설)
		2) 업무영향평가 실시	- 업무별 중요도 산정 o 재해발생시 업무별 예상 손실액 및 대내외 파급영향 평가 - 업무별 상호연관성 분석	△	(신설)
		3) 업무우선순위 결정	- 업무별 복구우선순위 선정 - 업무별 목표복구시간 선정	△	(이관 및 수정)
		4) 인력대책 수립	- 과거 담당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계획 마련 - 비상시 대체근무장소 등으로의 이동수단 마련 - 시간대별 최단시간 대체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마련	△	(신설)
		5) 기술대책 수립	- 현재 이용중인 장비 및 기술 외에 비상시 가 동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	△	(신설)
		6) 대체근무장소 지정	- 비상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대체근무장소 마련	△	(신설)
		7) 통신수단 및 체계 마련	- 통신수단 확보 o 전화, 팩스, 휴대용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애 및 재해시 내·외부 연락체계 수립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	(이관 및 수정)
		8) 평상시 메뉴얼정비	- 전산시스템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평상시의 각종 업무절차를 정한 매뉴얼을 정비 o 접근권한 관리, 오퍼레이션 관리, 데이터 파일관리, 프로그램 관리, 서류관리, 장표관리, 출력관리, 카드관리, 자원관리, 외부접속관리, 기기관리, 운행감시 등	△	(이관)
		9) 장애 및 재해시 매뉴얼 정비	- 장애·재해시 전산시스템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와 조기복구를 위하여 복구순서 및 대응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정비 - 또한 장애·재해시 매뉴얼의 정비에 있어서는 비상대책을 참조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	△	(이관)
		10)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	- 기 발생한 각종 장애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후 기록유지 - 훈련 및 감사 등을 통한 업무지속계획의 타당 성 검토 -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무지속계획에 대한 검토 및 업데이트 실시	△	(이관 및 수정)

전산센터

【운영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교육 훈련	교육	1) 요원교육	- 전산요원에 대한 사내 또는 사외 교육 실시 ○ 전산시스템의 사회적 중요성 ○ 기밀유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중요성 등을 포함	○	
	교육	2) 오퍼레이션 숙달 훈련	- 책임자, 훈련범위, 훈련내용, 소요시간 등 훈련체제의 명확화 ○ 신규요원의 배속, 신기종 도입, S/W변경시 등	○	
	훈련	3) 운영훈련	- 장애·재해시 등 상황별 훈련 및 방재·방법훈련을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훈련범위, 훈련내용, 소요시간 등 훈련체제의 명확화 ○ 교육·훈련책임자 선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실시 등	○	
요원 관리	요원 관리	1) 요원관리	- 전산요원의 장기근무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의 비효율성을 감안한 적정한 인사정책의 수립	△	
외부 위탁 관리	외부 위탁 관리	1) 기대 서비스수준 정립	- 외부위탁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서비스수준 정립 ○ 계약서에 기재가능하고 측정가능한 평가항목 마련	○	(신설)
		2) 외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체결	- 계약서에 금융기관과 외부위탁업체간 책임 및 권리관계 명확화 -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s) 및 이에 대한 관리방법 명시 - 계약관계를 검토할 전문가 확보	○	(이관 및 수정)
		3) 위탁기관 관리방안마련	- 외부위탁기관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수준협약 이행여부 확인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계약내용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주기적인 외부위탁업체 재정상태 확인 - 감사보고서 및 여타 내부자료 검토를 통해 외부위탁업체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이관 및 수정)
		4) 외부위탁 관련 리스크 대책마련	- 외부업체에 위탁하는데 따른 리스크 측정 - 예상되는 리스크를 관리자에게 보고 - 외부위탁에 의한 리스크 발생시 금융기관 내부대처방안 마련	○	(신설)
시 스템 감사	시 스템 감사	1) 시스템 감사체제의 정비	-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 개발·변경, 안전대책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감사체제 확립 ○ 전산부서와 독립된 사내 감사인에 의한 감사 ○ 전산부서 자체 감사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	
			○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	△	

영 업 점		【운영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관리 체제 확립	조직 및 규정 정비	1) 조직 및 규정의 정비	- 안전대책 관리조직의 정비 ○ 책임자, 역할분담, 대피경로, 방재·방법기관에의 연락방법, 긴급연락망 등 - 각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규정의 정비	○	
	거래 관리	1) 거래의 조작권한 명확화	- 모든 단말기에 대해 거래의 중요도에 따른 단말기 조작자의 권한 범위 설정 등	○	
2) 조작자 키 관리		- 카드, 비밀번호 등 단말기 조작자의 키관리 담당자 지정 - 예외거래를 할 수 있는 키는 책임자가 보관하고 사용기록 유지 - 인사이동 등에 의해 조작자가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속히 키 회수	○		
3) 거래의 조작내용 기록		- 거래 단말기의 조작자, 단말번호, 처리시각 등을 기록하는 기능 설정 - 단말기 조작 기록 등의 보존기간 설정	○		
4) 사고계좌에 대한 관리		- 통장, 증서, 인감, 카드 등의 도난·분실 등의 사고 접수시 접수시각, 내용 등을 기록 - 사고코드의 해제시 책임자의 확인절차 등 강구	○		
운용 관리	CD, ATM 관리	1) 운용 관리방법의 명확화	- 현금 장전순서의 명확화 - CD/ATM을 통한 조작기록에 대한 보존기간 설정 - 방법TV카메라 등 방법설비 설치 - CD/ATM의 바깥문 잠금장치의 이중화 등	○	
	카드 관리	1) 카드관리방법의 명확화	- 현금카드 등의 발행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미사용카드, 송부·폐기대기 카드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등에 보관 - 카드제작후 재고 확인 및 기록 - 발급카드의 우편발송 금지 등	○	
무인 자동화 점포		1) 운용 관리방법의 명확화	- 현금부족사태 방지를 위한 적정금액의 현금 장전 - 현금부족, 기계고장 등에 대비한 자동화기기의 복수 설치 및 인근 무인화점포에 대한 안내판 게시 - 장전현금에 대한 보험 가입 등	○	
		2) 감시체제 확립	- 전산센터 또는 지점에서 기기장애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 경찰관, 경비전문회사 등에 의한 정기적인 순회 등	○	
		3) 장애시 대응방법 명확화	- 이용고객에 대한 상황연락방법 - 장애시 관계자(영업점, 경비전문회사 등)의 소집방법 및 역할	○	
		4) 관련 매뉴얼 정비	- 관리센터 등에서의 감시대응, 장애시 대응 방법, 경비회사와의 연락방법, 현금 등의 장전 방법 등을 정한 매뉴얼을 정비·유지	○	

영 업 점		【운영기준】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증항목				
운용 관리	장표 관리	1) 장표의 관리 및 취급방법 명확화	- 전산센터(또는 본점부서)에서 수수한 장표 및 단말기 출력장표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대책 강구 ○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내화금고 등에 보관 ○ 책임자 입회하에 입출고 또는 폐기 실시 ○ 수도부(수수전표, 수수관리부 등)에 의한 수수 등	○	
	기기 관리	1) 관리 및 보수방법의 명확화	- 관리방법의 명확화 ○ 기기관리 책임자 지정 ○ 단말기 등에 대한 조작자격 부여 ○ 각 기기의 조작안내서 마련 ○ 장애시 대처순서 결정 및 연락체계의 명확화 ○ 장애의 기록 유지 등 - 보수방법의 명확화 ○ 정기 또는 수시로 보수점검 실시 ○ 보수업체의 책임자, 전화번호 등의 사전파악 등	○	
	장애 및 재해 대응책	1) 관계자 연락체계의 명확화  2) 장애·재해시의 대응책	- 장애·재해시의 「연락처 관리대장」 등의 정비 ○ 영업점의 책임자 ○ 전산센터 또는 본부부서의 담당자 ○ 컴퓨터 업체, 경비전문회사 등 - 연락수단 확보 ○ 전화, 삐삐, 팩스, 휴대용전화 등 - 장애발생시 고객에게 즉시 설명할 수 있는 계시판 설치 등 적정한 설명체제 정비 - 업무시스템의 복구우선순위, 수작업에 의한 업무수행 등을 포함한 비상대책 작성 등	○  ○	
교육 훈련	교육 훈련	1) 조작숙련 교육	- 담당업무 변경, 신규직원의 배속, 신기종 도입 등에 따른 단말기 조작 습득을 위한 교육 실시	○	
		2) 운영훈련	- 장애·재해시 등 상황별 훈련 및 방재·방법훈련을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훈련범위, 훈련내용, 소요시간 등 훈련체제의 명확화 ○ 교육·훈련 책임자 선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등	○	
외부 위탁 관리	외부 위탁 관리	1) 작업계약 체결	- CD/ATM의 관리, 점내경비, 설비의 관리·보수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대책에 관한 항목을 포함한 계약 체결 ○ 비밀유지, 작업시간, 출입장소, 사고발생시 보고, 손해배상 등	○	
		2) 작업관리 및 검증	- 위탁처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업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접수 - 위탁업무 종료후 관련 자료나 문서 등을 회수	○	
감사	감사	1) 안전대책 준수 상황의 감사	- 안전대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감사체제 확립 ○ 영업점 자체 감사 ○ 감사부에 의한 감사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	

## IV. 네트워크 정보보안

### 【네트워크 정보보안】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종합 대책		1) 경영층이 후원하는 종합적인 보안정책 실시	- 보안규정, 절차, 조치 및 벌칙 등의 세부지침 마련·운용 - 내부통제 및 감시체제 확립	○	
		2) 네트워크 관리체제 정비	-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네트워크 관리대책 마련 시행	○	
		3) 보안등급에 의한 데이터 분류	- 취급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고도의 보안데이터, 보안데이터 및 공개 데이터 등	○	
데이터 보호	데이터 의 기밀성 유지	1) 데이터의 암호화	- 데이터의 저장 및 LAN/WAN을 통한 전송시 암호화 - 데이터의 공중망 전송시 암호화	△	
		2) 암호화키는 비밀로 보관	- 암호화키는 비인가자에 의한 침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로 취급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3) 외부기관과의 업무제휴 체결시 보안대책 강구	- 계약서 명문화 ○ 외부기관의 고객 금융정보 보관금지(계좌번호 등) ○ 보안운영관리 실태 정기 점검 및 보고 의무화 ○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은행 또는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시 이행의무 등	○	(신설)
		1) 고객 비밀번호의 일반적 관리	-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비밀번호의 정기 또는 수시 변경 ○ 분실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 ○ 비밀번호의 조회 금지 ○ 각종 신청서의 비밀번호 기재란을 삭제 · 고객이 창구 등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안 강구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234 등 유추가 용이한 비밀번호의 사용 금지 등	○	
	비밀 번호 관리	2) 대고객정보망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관리	- 인터넷뱅킹, Phone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누설 방지대책 강구 ○ 충분한 길이로 비밀번호를 선정하여 유추방지 ○ 사용자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의 자동중단 ○ PC뱅킹의 경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입력시 화면노출 방지 ○ 일정기간 경과한 비밀번호에 대해서 교체 권유 메시지의 자동전달 등 - 정당사용자 확인절차의 강화 ○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외에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특수한 방법(난수표, 비밀번호 발생기 등) 도입 등	○	(수정)
		3) 전산요원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관리	- 내부직원에 의한 불법행위 방지대책 강구 ○ 비밀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오류입력에 의한 액세스 가능횟수 제한 ○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선정시 영문과 숫자를 혼용 ○ 행번 등 유추가 용이한 번호의 사용금지 등	○	

【네트워크 정보보안】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데이터 보호	비밀 번호 관리	4) 비밀번호 전달·보관시 암호화	- 비밀번호의 전달 및 보관시 암호화하거나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	
		5) 일정회수 이상 로그온 실패시의 대책	- 일정회수 로그온 실패시 사용자 ID를 무효화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통지하는 메커니즘 확립	○	
		6) 기사용된 비밀번호 목록의 작성·유지	- 기사용된 비밀번호 목록을 작성·유지해주는 시스템 도입 ○ 일정 시간 또는 개수를 기준으로 목록 업데이트	○	
	접근 통제	1) 네트워크의 분할	- 비인가자 등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라우터, 방화벽이나 기타 접근통제장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분할 - 네트워크에 로그인된 장비의 경우 비밀번호나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하여 스크린 보호 - 원격지에서 서버를 통제할 경우에는 강력한 인증절차와 암호화기술 적용	○	(수정)
		2) 액세스 제어	- 중요파일에 대한 액세스 제어 ○ 프로그램, 단말기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액세스 가능파일의 범위 및 자격 체크 등	○	
		3) 상대단말 확인 기능	- 공중통신망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접속 단말기의 ID 및 발신자 확인 기능의 설정 등	△	
		4) 정당사용자 및 단말기 확인 기능	- 전산시스템의 정당사용자 확인기능 설정 ○ 카드, 비밀번호, 지문, 성문 등 - 업무내용에 따른 단말기 확인기능 설정 ○ 영업점 또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할 때 단말기에 부여된 ID와 기기번호의 조회 체크기능 등	○	
		5) 단말기권한 제한 기능	- 단말기의 종류(개발용, 창구용, 휴대용 등), 설치장소 (전산센터, 영업점, 기업 등) 및 용도(업무처리, 프로그램개발 등)에 따른 액세스 제한	○	
		6) 보안프로파일의 작성·유지	- 각 사용자의 업무상 책임수준에 따라 업무기능과 데이터에의 접근권한을 명시 - 접근권한의 승인 및 거부절차 확보	○	
		7) PC단말기 보안	- PC단말기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핵심영업자료나 중요 데이터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전산실내 서버에 저장 - PC단말기에 저장할 경우 접근통제, 암호화, 주기적 백업절차 등 보안대책 강구 - PC단말기에 의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으로의 접근은 ID나 비밀번호에 의해 통제 - PC단말기 교체시 하드디스크상의 중요 데이터 포맷	○	
8) 주기적인 재인증절차 도입	- 정당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업무처리 과정에 주기적인 재인증 절차 도입	○			
9) LAN 중계장치에 의한 접근 방지대책 강구	- LAN의 중계장치인 허브는 이와 연결된 PC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인텔리전트 허브 또는 네트워크 스위치 사용	○			
10) 시스템관리자 통제장치 마련	- 시스템관리자에게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에의 무제한적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			

【네트워크 정보보안】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데이터 보호	접근 통제	11) 운용관리방법의 명확화	- 설비용 단말기(휴대용 PC 등)에 대한 운용관리체계 확립 ○ 단말기 식별ID부여, 취급자 및 관리자의 지정 ○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의 백업 확보 ○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한 비밀번호 부여 등 - 휴대용PC에 보관중인 중요 데이터의 암호화	○	
		12) 권한변경관리	- 접근권한 유효기일 설정 - 퇴직 및 인사이동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변경절차 수립 및 운영	○	(신설)
	개발언어통제	1) 개발언어에 대한 보안가이드 제시	-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업무적용시 사전 점검 절차 운영	○	(신설)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책	해킹 등 방지 장비	1) 방화벽의 설치	- 인터넷은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공격위험이 크므로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의 기본요소인 방화벽(firewall)을 설치	○	
		2) 침입탐지장비 설치	- 해킹, 사이버테러의 용이한 추적 및 탐지를 위하여 침입탐지장비 설치	△	
		3) 서버관리 및 해킹프로그램 검색	- 자체IP가 외부 해킹의 경유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서버관리 및 해킹프로그램 검색을 주기적으로 실행	○	
		4) 시스템 가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각으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가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5) 네트워크 보안테스트	- 가상 침투테스트를 통해 네트워크 공격탐지 능력 테스트 실시	△	
		6)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 보안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적절한 해결책을 조언해주는 외부기관과의 연계수단 마련	△	
	7) 침입차단 정책에 대한 이력관리	- 침입차단 정책에 대한 유효기일 관리 및 정책 변경, 삭제, 등록에 대한 이력관리	○	(신설)	
해킹 등의 사고시 대책	1)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통제	- 방화벽을 통과한 공격자들이 중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수단 마련	○		
	2) 방화벽 로그 보관 및 분석	- 사고발생 가능성 및 사전탐지를 위한 정기적인 로그분석 - 사고발생시 추적 및 증거확보를 위한 로그기록 보관(최소 1년)	○	(신설)	
	3) 해킹사고 대책반 구성	- 인터넷 해킹 및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운영 - 실시간으로 유해 트래픽을 차단,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안관리 중앙감시체계 구현 방안 마련 -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한 취약점 진단 및 분석 후 보완대책 수립·운영	○	(수정)	

【네트워크 정보보안】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책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	1)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	- 네트워크의 주요 진입지점 및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에 바이러스 탐지 소프트웨어 설치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순서의 명확화 - 윈도우즈 보안패치의 관리 및 통제	○	(수정)
		2) 백업 확보	-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중요한 데이터의 백업 확보 절차 마련	○	
시스템 통제	구성	1) 통제절차의 간소화	- 네트워크 서버를 컴퓨터실에 집중	○	
		2) 주기적인 서버 구성에 대한 테스트	- 네트워크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여 보안상 허점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안평가 S/W실행 ○서버의 수정시에도 보안평가 S/W 실행	○	
	기록 관리	1) 네트워크 통제활동 기록체제 확립	- 네트워크 통제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관리·유지	○	
	네트워크 설정 정보 관리	1) 설정정보의 관리	- 네트워크 기기의 설정정보가 부정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특히 공중회선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2) 설정정보의 백업 확보	- 네트워크 설정정보의 부정확한 변경 및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백업을 확보	○	
	기기 관리	1) 네트워크 관련기기의 보호조치 강구	- 네트워크 기기는 부정사용, 파괴, 도난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 강구 ○특히 LAN/WAN의 핵심장비들은 안전한 전산실에 집중시켜 물리적으로 보호	○	
접근 통제	1) 네트워크 장비 또는 서버 등의 시스템에 대해 로그인을 허용하기 전에 보안권고문 공지	- 로그인 입력화면에 보안권고문 삽입 (예) ‘부당한 방법으로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삭제, 변경, 유출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설)	
	2) 장비 상호간 인증절차 운영	- 클라이언트와 서버 상호인증 방법 및 시스템 구현방안 마련	○	(신설)	

【네트워크 정보보안】

항 목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1) 적용 지침	비고
대항목	중항목				
인원 보안	1) 책임 및 역할 부여	- 네트워크 보안업무를 위한 책임 및 역할 부여 -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 확립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한 이력 점검 및 경력 확인 - 담당직원으로부터 기밀준수 서약서 징구 - 전출자 및 퇴직자가 사용하였던 네트워크 관련자료의 반납여부 확인절차 마련	○	
	2) 직원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 발생가능한 사고 유형, 복구 소요비용 등을 예상 - 예상된 사고를 직원에게 교육 - 예상된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업무할당 및 예상사고에 근거한 네트워크 보안교육 계획 수립 - 보안교육 대상 설정 및 실시	○	
	3) 보안사고 예상			○	
	4) 보안교육			○	

한국은행

## 2004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

2005년 8월 11일 인쇄·발행

발행인 / 이 성 태(한국은행 부총재)

편집인 / 박 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발행소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인쇄소 / 서원기업(주)

---

본 자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02-750-6655, 66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